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

고 준 성

2003. 12

머리말

지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는 종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와 비교할 때 규범 및 조직의 양 측면에서 매우 발전된 잘 짜여진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지역적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 RTAs)의 체결이 GATT 시기에 비하여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증가하여, 현재 WTO 회원의 거의 대다수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그간 단 하나의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그러한 지역무역협정의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감시 장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그 한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직면하게 될 반사적 불이익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무역협정 특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체결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공세적인 지역주의(aggressive regionalism)로의 일대 방향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2002년 10월 25일 한·칠레간 FTA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교역이익의 확대가 기대되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지속적으

로 교섭,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역무역 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및 활용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FTA의 법적 체제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법에 관한 이해와 연구의 축적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체결되었거나 타결된 FTA중 NAFTA, 한-칠레 FTA, EC-멕시코 상품무역분야 FTA, EFTA국가-싱가포르 FTA, 칠레-멕시코 FTA, 일본-싱가포르 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 7건의 협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들 FTA에 있어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중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항목-즉, 내국민대우와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기술규정 및 위생·검역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 및 상계조치, 특정품목의 규율 등-별로 이들 FTA의 조문의 유형을 모색하고, 이들 조문별 유형의 법적 의미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핵심 항목별로 향후 우리의 FTA 협상 대상국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조문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FTA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간 FTA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정부의 FTA 정책수립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온 본 연구원의 고준성 연구위원이 집필한 것으로서 필자는 연구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원내외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의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부족한 내용을 지적해 준 심

의위원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FTA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FTA 협상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0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한석수**

Abstract	1
제 I 장 서	3
1. 연구의 배경 :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및 확산	3
2. 연구의 목적 및 활용	4
3.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대상	6
(2) 연구 범위	9
(3) 연구 방법	12
4. 분석대상 FTA의 상품무역규정 개관	13
제 II 장 내국민대우 및 관세철폐	17
1. 내국민대우 및 예외	17
(1) 내국민대우의 의의	17
(2) 주요 FTA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예외 규정	18
(3) 주요 FTA상 내국민대우 규정의 평가 및 비교	21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23
(5) 관련 사안 : FTA상 최혜국대우 규정 문제	25
2. 관세철폐	26
(1) GATT 1994 제24조상 관세철폐의 의의	26
(2) 주요 FTA상 관세철폐 규정의 비교 및 평가	28
(3) 주요 FTA당사국의 관세철폐 양허 실행의 비교 및 평가	32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37

제III장 원산지규정	42
(1) 원산지규정의 의의	42
(2) 주요 FTA의 원산지결정 관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44
1) FTA에서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방법]의 의의	44
2) 일반기준 1 : 완전생산기준	45
3) 일반기준 2 : 실질적 변형기준	47
① 세번변경기준	48
② 부가가치기준	50
③ 특정가공·공정기준	52
4) 보충기준	54
① 최소허용수준	54
② 원산지의 누적규정	56
③ 중간재에 적용되는 흡수원칙	60
④ 추적심사	61
⑤ 불인정 공정	62
5) 특정부문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특칙	63
(3) 주요 FTA 원산지결정규정의 유형별 특징 및 평가	67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73
제IV장 비관세조치 : 표준관련조치와 위생·검역조치	79
1. 비관세조치의 의의	79
2. 기술규정 및 표준	80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의의	80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	80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81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극복을 위한 방안	82
① GATT/WTO 기술관련 규정	82
② 상호인정협정의 도입	83
③ 국제표준 및 규칙의 도입	83
(2) 주요 FTA의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	84
1) WTO TBT협정 준용형	85
2) WTO TBT협정 플러스형	87
(3) 상호인정규정 도입 FTA	94
(4) 주요 FTA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간 비교 평가	96
(5) 정책적 시사점	98
3. 위생 및 검역조치	100
(1)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100
(2) 주요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유형	101
1) WTO SPS협정 준용형	101
2) NAFTA형	104
(3) 주요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유형간 비교 평가	108
(4) 정책적 시사점	111

제 V 장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 : 세이프가드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국제규범의 성립 및 발전	113
1)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로서 GATT 제19조의 성립 및 의의	113
2)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114
(2) 주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규정의 유형 분석	116
1) FTA 당사국들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면제 유형	116
2)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의 준용 유형	118
3)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 유형	118

①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포함 유형	119
i) 다자간 조치 규정 불포함 FTA의 관련 규정	120
ii) 다자간 조치 규정 명시 FTA의 관련 규정	123
②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 포함 유형	129
4) 다자간 조치에 대한 옵션조항	131
① FTA 당사국들간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 규정 별도 명시	132
② 다른 FTA 당사국에 대한 다자간 조치를 행사하지 말도록 해석되는 규정	136
(3) 주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규정 유형의 비교 및 평가	137
(4) 정책적 시사점	146

제VI장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1. 불공정무역규범의 성립 및 발전	151
(1) 불공정무역관행 규제의 의의	151
(2) 국제 불공정무역규범의 발전 및 과제	152
2. 반덤핑조치	154
(1) 주요 FTA에서의 반덤핑규정 유형 모색	154
1) FTA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 규정	154
2)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157
3) WTO 반덤핑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유형	158
4) WTO 반덤핑조치 관련 규정의 준용 규정	160
5)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규정 유형	161

(2) 주요 FTA상 반덤핑규정 유형의 평가 및 비교	163
(3) 정책적 시사점	168
3. 상계조치 및 보조금	170
(1) 주요 FTA에서의 상계조치규정 유형 모색	170
1) FTA 당사국들간 상계조치의 적용 배제 규정	170
2) WTO 보조금 관련 규정의 강화 적용	171
3) WTO 상계조치 관련 규정의 준용 규정	172
4) 당사국의 상계조치법의 적용 규정	175
(2) 주요 FTA상 상계조치규정 유형의 평가 및 비교	177
(3) 정책적 시사점	180

제Ⅶ장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

(1) 특정품목에 대한 특별 규정 도입의 의의	182
(2) 주요 FTA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 분석	183
1) 농산품	183
① NAFTA의 농업무역규정	183
i) 농업무역규정의 특징	183
ii)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184
iii) 농산물 등급 및 마케팅 기준	185
iv)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186
v) 국내지원 및 수출보조금	186
②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농수산물무역규정	188
③ 칠레-멕시코 FTA의 농축산물 및 기초식료품 무역 규정	188
2) 섬유 및 의류	190
① NAFTA의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도입 배경	190

② NAFTA의 섬유 및 의류무역관련 규정	191
3) 자동차	192
① NAFTA의 자동차무역 규정	192
② 칠레-멕시코 FTA의 자동차무역 규정	194
4) 에너지·기초유화제품	195
① NAFTA의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규정 도입 배경 및 특징	195
② NAFTA의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무역 규정 ..	196
i) 관련 제품의 수출입제한 및 수출세 등	196
ii) 에너지규제조치	197
iii) 국가안보	198
5) 증류주·방송기기·추잉검	198
(3) 주요 FTA와 WTO협정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간 비교	199
(4) 정책적 시사점	201

제Ⅷ 장 결론 : FTA 상품무역규정 이슈별 한국의

협상가이드라인	203
1. 내국민대우 등과 관련하여	203
2.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204
3.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205
4.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하여	208
5.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209
6. 세이프가드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210
7. 반덤핑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212

8. 상계조치 및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214
9.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과 관련하여	215
〈참고문헌〉	217
〈참고자료〉 분석대상 FTA 조문 목차	
I. NAFTA	221
II. 한-칠레 FTA	235
III-1. EC-멕시코 상품무역분야 FTA	246
III-2. EC-멕시코 서비스무역분야 FTA	249
IV. EFTA국가-싱가포르 FTA	252
V. 칠레-멕시코 FTA	255
VI. 일본-싱가포르 FTA	267
VII. 미국-싱가포르 FTA	274

〈 표 차례 〉

<표 I-1> 주요 FTA의 상품무역규정 조문 비교표	16
<표 II-1> 주요 FTA에 있어 내국민대우규정의 유형	24
<표 II-2> 주요 FTA에 있어 관세철폐규정의 유형	31
<표 II-3> NAFTA에서의 미국·멕시코의 관세 철폐 단계별 대상 품목 비율	34
<표 II-4> EC-멕시코 FTA에서의 관세 철폐 단계별 대상 품목의 수 및 비율	34
<표 II-5> 한-칠레 FTA 한국측 양허안 개요	35
<표 II-6> 한-칠레 FTA 칠레측 양허안 개요	37
<표 III-1> 주요 FTA에서의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규정의 유형	69
<표 III-2> 주요 FTA 원산지규정상 부가가치기준 규정의 유형	70
<표 III-3> 주요 FTA 원산지규정상 누적규정의 유형	72
<표 IV-1> 주요 FTA에 있어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의 유형	95
<표 IV-2> 주요 FTA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별 FTA 당사국의 관련조치 도입에 있어 재량 여지 비교	97
<표 IV-3> 주요 FTA에 있어 SPS조치규정의 유형	109
<표 IV-4> 주요 FTA SPS조치규정 유형별 FTA 당사국의 당해 조치 도입에 있어 재량 여지 비교	111
<표 V-1> 주요 FTA에 있어 세이프가드규정의 유형	139
<표 V-2> 주요 FTA 세이프가드규정 유형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146
<표 VI-1> 주요 FTA에 있어 반덤핑규정의 유형	165
<표 VI-2> 주요 FTA 반덤핑규정 유형별 반덤핑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167
<표 VI-3> 주요 FTA에 있어 상계조치규정의 유형	178
<표 VI-4> 주요 FTA 보조금규정 유형별 상계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180
<표 VII-1> 주요 FTA와 WTO협정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 비교	200

Abstract

It is imperative for Korea,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trade, to continuously expand trade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s i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fter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rounded in a strong institutional and legal foundation, however, the conclu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mong WTO member countries has rapidly increased and expands worldwide.

In this situation, Korea has not yet concluded an RTA. As a result, Korea's export goods have been faced with the relative disadvantages in foreign competition with those from the countries having participated in any regional trading bloc.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drastically changed its existing position against regionalism in the late 1990's, and has pursu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its trading partners ever since. In 2002, Seoul completed negotiations on an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hich waits for the ratification from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is scheduled to formally start FTA negotiations with Japan within this year, and is also preparing or considering FTA negotiation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SEAN, Mexico and China respectively.

The number of FTAs in force, as of now, exceeds 120. The scope of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in these FTAs are very different. The present report has been prepared primaril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Korean

2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government's practitioners who have little experiences in the negotiation and operation of FTAs with the comprehensive and exact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types of provisions of FTAs. Furthermore, the report explores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meanings and effect among these various types of provisions in FTA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FTA negotiations.

To attain this purpose, the report selected seven among the FTAs in force or signed as of now. The selected FTAs are as follows : NAFTA, Korea-Chile FTA, EC-Mexico FTA, EFTA states-Singapore FTA,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SEPA), US-Singapore FTA, Chile-Mexico FTA. The report surveyed the full texts of the above-mentioned FTAs as well as the other FTAs having peculiar provisions, compared and grouped the provisions in the FTAs by sectors, and then classified the articles of the FTAs in each sector by types. The scope of the study, however, is restricted to the provisions relating to trade in goods of the FTAs.

The report consists of eight chapters. The six chapters of this report deal with national treatment and phased tariff removals(chapter 2), rules of origin(chapter 3), non-tariff barriers including technical regulations & standards and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chapter 4), safeguards (chapter 5), regulations of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chapter 6), and regulations of trade in specific good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textiles & clothing(chapter 7). As a conclusion, chapter 8 suggests the guidelines for Korean government practitioners participating in future FTA negotiations.


 제 I 장

서

1. 연구의 배경 :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및 확산

발전된 다자간무역질서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을 포함한 특혜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 : RTAs)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늘날 세계무역에서 이들 특혜 지역무역협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005년에는 그 비중이 55%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¹⁾ 또한 GATT 시기에 지역무역협정에 소극적 태도를 가졌던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WTO 시기에 들어서서는 FTA의 능동적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이 WTO체제하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 결과가 기대 이하로 이뤄질 경우 이는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보다 더 RTA 주로는 FTA를 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1) OECD,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3, p.12.

4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네트워크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FTA의 추진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간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여,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마친 것 이외에는 달리 FTA를 체결한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현재 진행중인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물론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 추진에 있어 기초가 되는 FTA의 협정문 자체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FTA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은 물론 투자와 그 밖의 환경이나 전자상거래 문제까지 그 규율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이어서 FTA 협상은 사실상 범부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GATT 및 WTO에 통고된 FTA 규율 분야별로 그간 체결된 110여건이 넘는 FTA의 규율범위 및 그 조문 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각 협상대상국별로 다양한 유형의 조문이 갖는 법적 의미와 향후 양국 교역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FTA 협상 및 추진에 있어 선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활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FTA 협상 대상국별로 그 산업구조나 우리와의 산업별 경쟁구조, 무역구조 및 투자 흐름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당해 협상대상국과의 무역자유화 내지 가능한 협력 분야의 범위와 그 자유화의 수준에 관해 FTA 조

문화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조문이 갖는 법적 의미와 영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협상 대상 그룹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FTA 조문 유형[모델]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FTA에서 (i) 그 규율대상의 범위, 환언하면 무역자유화의 대상 - 가령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무역과 투자 등 - 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나아가 그 밖의 무역 관련 사항 - 가령 환경기준이나 전자상거래 등 - 중 무엇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ii) 규율대상에 있어 적용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환언하면 우리나라가 특정 FTA 협상국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이유 - 가령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나 농업의 기반 보호 등 - 로 특정 산업이나 품목 [업종]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방안의 모색에 있어 준거가 될 수 있으며, (iii) FTA의 각 부문 - 비차별대우, 원산지규정, 기술규정, 위생조치, 산업피해규범, 투자의 대우 등 - 별 조문화작업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조문중 어떠한 형태의 조문이 당해 교섭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협상 대상국별로 우리에게 적합한[유리한] FTA 협정안의 틀을 모색하는 데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자 한다.

3.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TRA)중 자유무역협정(FTA)만을 대상으로 한다. FTA는 그 당사국 수를 기준으로 당사국의 수가 2개국뿐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bilateral FTA), 당사국의 수가 3개국 내지 5개국 이하인 복수국가간 자유무역협정(plurilateral FTA) 그리고 당사국이 6개국 이상인 準다자간 자유무역협정(quasi-multilateral FTA)으로 나눌 수 있는바, 기체결된 FTA의 다수는 양자간 FTA이었지만, WTO 출범 이후 準다자간 FTA의 체결이 활발한 것이 주목된다.

참고로 FTA의 명칭을 보면, 다수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호주-뉴질랜드간 긴밀한 경제관계무역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이나 최근의 일본-싱가포르간 신세대경제파트너십협정(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n New Age Economic Partnership : 'JSEPA' 또는 '일본-싱가포르 FTA') 또는 뉴질랜드-싱가포르간 긴밀한 경제파트너십협정(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 이하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체결되는 FTA중 “경제파트너십협정”이란 명칭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사국들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포

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법적 관점에서 FTA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간에 GATT 제24조상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GATT가 활동을 시작한 1947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체결·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총 126건이다.²⁾ 이 가운데 GATT 시기에 발효된 것이 27건인 반면 WTO 시기에 발효된 것은 99건에 달한다. 참고로 2001년 9월 기준 발효된 110건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먼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54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56건으로 비슷하고, 다음으로 지역별 체결 상황을 보면 유럽지역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이 13건이며 이 밖에 미주지역이 3건, 아시아지역 1건, 오세아니아지역 1건 및 기타 37건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지역에는 EC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이 유럽지역 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서는 2003년 10월 기준 발효 중인 126건의 FTA 가운데 다음의 7건의 FTA를 기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i)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³⁾은 그 규율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조문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체결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FTA중 하나라는 점에서 선정하였고, (ii) 한국-칠레 FTA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2)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참조.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한 지역무역협정으로서 1992년 12월 서명되어,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8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으며, (iii) EC-멕시코 상품 무역 FTA⁵⁾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FTA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고, (iv) EFTA국가-싱가포르 FT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Singapore)⁶⁾는 별도의 FTA 당사국인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4개 국가⁷⁾와 최근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간에 체결된 FTA라는 점에서 선정하였으며, (v) 일본-싱가포르 FTA[JSEPA]⁸⁾는 최근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현재 우리의 FTA 협상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고, (vi) 미국-싱가포르 FTA⁹⁾ 역시 가장 최근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가장 중요한 FTA 협상 상대가 될 미국의 FTA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선정하였으며, (vii) 칠레-멕시코 FTA¹⁰⁾는 양국 모두 개도국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4) 한국과 칠레는 1999년 12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시하여, 2002년 10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동년 10월 25일 3년에 걸친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03년 2월 15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각기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1일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5) 참고로 EC-멕시코 FTA는 상품분야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분야에 관한 FTA가 각기 별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이 독특하다. 여기서 전자의 EC-멕시코 상품무역 FTA는 Decision No.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covering trade in goods, government procurement, etc.)를 가리키며, 동 협정은 200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후자의 EC-멕시코 서비스무역 FTA는 Decision No.2/2001 of the EU-Mexico Joint Council of 27 February 2001(covering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etc.)를 가리킨다.

6) EFTA국가-싱가포르 FTA는 200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7) 참고로 "EFTA국가"(EFTA States)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4개국을 가리킨다.

8) 일본-싱가포르 FTA는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02년 11월 30일 발효되었다.

9) 미국-싱가포르 FTA는 2003년 5월 6일 서명되었다.

10) 칠레-멕시코 FTA는 1999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FTA 추진국일 뿐만 아니라 칠레는 우리와 FTA 협상을 마쳤고, 멕시코 역시 우리의 유망한 FTA 협상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기본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현재 협상이 미주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FTAA)협정안¹¹⁾은 협상참가국 수가 34개로서 최다일 뿐만 아니라 협상 대상 규율분야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조문별로 수개의 복수안이 제시되어 있는 관계로 분석 대상 조문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상술한 7건의 분석 대상 FTA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규율 분야에 있어 독특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당해 협정을 비교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다.

(2) 연구 범위

먼저 자유무역협정은 대개의 경우 협정의 목적과 범위 및 당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제반 항목들로 구성된 협정 본문과 상품무역과 관련한 관세 철폐 및 감축 일정을 규정한 각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로 구성되며, 당해 FTA가 서비스무역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가 추가되고, 이 밖에 각 구성 항목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규정한 의정서 그리고 드물게 NAFT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 및 노동에 관한 보

11) FTAA 협정안은 2005년 발효를 목표로 현재 제3차 협정초안이 공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총협정 등을 포함한 본 협정의 부속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지난 GATT 및 현재의 WTO하에서 체결된 지역 무역협정의 대다수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FTA는 GATT 제24조를 근거로 단순히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만을 규율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GATS 제5조에 근거하여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투자의 규율이나 당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할 수 있고, 이 밖에도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환경, 노동, 경쟁정책 및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FTA의 규율대상은 상품무역을 공통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FTA에 따라 규율대상의 범위가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규율대상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그 핵심임은 물론이다. 다만, 모든 FTA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상품무역의 자유화 규정만 하더라도 관세철폐의 일정이나 그 적용예외 및 제한 품목의 범위, 원산지규정 등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나 투자 분야 또는 그 밖의 특정 사안에 관한 개별 FTA의 관련 규정은 그 자유화[개방] 수준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는 보다 큰 차이가 있어 FTA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렵다.

특히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대상은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기준·인증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경쟁정책상의 협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대상에 대해서는 법리상 달리 제한이 없는 관계로 FTA 교섭국들간에 합의하기만 하면 당사국들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경영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하한 국내제도의 相違나 애로사항의 개선 및 이를 위한 조화[통일] 그리고 당사국의 하나가 개발도상국인 경우 당해 FTA가 효과를 갖도록 다른 당사국이 인력의 육성이나 행정 절차 및 수송인프라 등 제반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규정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며, 실제로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¹²⁾ 주목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FTA의 다양한 규율 분야중 상품무역 분야에 속한 규정만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GATT 및 WTO하에서 GATT 제24조에 근거하여 통고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오로지 상품무역분야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교역 증가에 대한 기대 역시 상품무역분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WTO에 통고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품무역에 관한 조문만을 GATT 제24조에 근거한 FTA로서 통고하고, 당해 협정의 서비스무역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GATS 제5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서비스(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WTO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처음부터

12) 가령 2002년에 체결된 일본-싱가포르간 경제파트너십협정(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그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이외에 투자와 사람의 이동 또는 정보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요소와 국제비즈니스 활동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관련 국내제도의 상위와 부조화에서부터 정보 인프라의 정비 및 전자상거래 등 관련 제도의 조화, 무역절차의 전자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행정절차의 개선,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이의 집행에 있어 협력까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품무역에 관한 FTA와 서비스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정을 각기 별도의 문서로서 체결, WTO에 통고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EC-멕시코간에는 상품무역에 관한 FTA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각기 별도로 체결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FTA는 동 부속서에 체결국의 무역자유화의 구체적 사항 및 일정을 담은 다수의 방대한 부속서를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들 부속서는 당해 협정 조문 이상으로 중요하다. 특히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의 점진적 철폐나 품목별 원산지결정 규칙 등 핵심 규정은 부속서에 수록되는바, 이들 부속서는 당해 FTA 체결국들간에 경제, 무역, 고용 등 제반 요인들을 반영한 협상 결과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밝혀 둔다.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상기한 주요 FTA의 각 분야 및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표준 조문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연구대상 FTA의 관련 조문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모색하여 가능한 경우 이를 유형별로 나누고자 시도하였다. 환언하면 분석 대상 FTA에 있어 주요 부문별 조문 규정간에 있어 차이점을 모색하고, 이들 FTA 유형별 조문의 법적 의미와 비당사국(non-parties)에 대한 교역에 있어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들 FTA상 조문별 유형을 WTO협정의 관련 규

정과 비교하여 양자간에 있어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들 FTA 각 유형별 조문 규정이 무역에 대한 규제 또는 자유화 등의 관점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로부터 국내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보호[시장 미개방]까지의 스펙트럼에 있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FTA와 WTO 관련 규정간의 비교를 통해 양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현행 WTO구범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FTA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분석대상 FTA의 상품무역규정 개관

FTA는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전문과 본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FTA의 전문(preamble)에서는 당해 협정의 목적 및 동기 등을 표명한다. 목적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상품무역과 나아가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의 교역확대와 협력증진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협정의 기초로서 다자간무역질서인 WTO설립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기할 것을 밝힌다. 조약법상 전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조약해석상의 요소가 될 뿐이다. 따라서 FTA 전문 역시 본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며, 당해 협정의 해석에 있어 참고가 될 뿐이다.

이와 관련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FTA 전문을 통해

WTO협정과의 합치성(consistency)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FTA의 본문은 종결조항을 포함한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된다. 조문(articles)은 당해 FTA의 주된 부분으로서 협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결조항(final clause)은 구조상 조약문의 마지막에 두며, 조약 자체에 관한 문제 즉, 개정, 발효, 조약의 기간과 종료, 정본 등에 대해 규정한다. 조문에는 명료화를 위하여 각주(footnote)가 첨부되기도 한다.¹³⁾ 부속서(annex)는 본문에 부속된 문서로서 다수의 FTA에서는 시장 접근 및 이에 대한 유보, 예외 등에 관한 각 당사국별 양허표(Schedule) 또는 보충규정을 부속서¹⁴⁾ 또는 부록(Appendix)¹⁵⁾ 형태로 첨부한다. FTA의 경우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예외없이 관세의 점진적 철폐 대상 및 일정을 규정한 각 체약국의 관세 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어 부속서의 비중이 다른 어느 조약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들 부속서와 부록 등도 당해 협정의 일체적 부분을 이루고, 따라서 협정 조문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FTA는 GATT 제24조를 근거로 단순히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만을 규율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GATS 제5조에 근거하여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투자의 규율이나 이 밖에도 체약당사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환경, 노동, 경쟁정책 및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규율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FTA의 규율대

13) EFTA국가-싱가포르 FTA 등이 그러하다.

14) NAFTA Annexes I-VII 등.

15) 한-칠레 FTA Appendix 1, 2 등.

상은 공통적으로 상품무역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FTA에 따라 그 규율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반면에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FTA 규율 대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건의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서는 예외 없이 내국민대우, 관세(의 철폐), 원산지규칙, 표준관련조치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평가,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하여 일부 FTA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부 FTA에서는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에너지·기초유화제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기도 한다(〈표 I-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7건의 FTA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관세(의 철폐), 원산지규칙, 표준관련조치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비록 일부 FTA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FTA상 관련 조문의 비교 필요성이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를 포함시켰으며, 특정 품목에 관한 규율 역시 향후 우리나라 FTA 협상에서의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주요 FTA의 상품무역규정 조문 비교표

규율대상	자유무역협정	NAFTA	한-칠레	EC-멕시코	EFTA국가-싱가포르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내국인대우		301조	3.3조	13조	11조	13조	21조	3-03조
관세철폐		302조	3.4조	3~6조	81조	14조	22조	3-04조
관세평가		별도 규정 없음	3.8조	18조	규정 없음	15조	23조	3-05조
통관절차		501~514조	5.1~5.14조	(17조)*	규정 없음	35~39조	4.1~4.11조	5-01~5-14조
원산지규칙		401~415조	4.1~4.15조	5조	7조	22~34조	3.1~3.20	4-01~4-18조
표준조치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901~915조	9.1~9.11조	19조	13조	45~57조	6.1~6.4조	8-01~8-12조
위생 및 검역조치(SPS)		709~724조	8.1~8.12조	20조	12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7-01~7-13
세이프가드조치		801~805	6.1조	15조	17조	18조	7.1~7.6조	6-01~6-05조
반덤핑 및 상계조치		1902조	7.1조	14조	15,16,30조	14조	2.1~2.13조	2-01조
특정 품목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에너지·기초유화제품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에너지·기초유화제품		농산물 기초식품			중류주·방송 기기·추잉검	농산물 속산물 기초식품 자동차

주 : * EC-멕시코 FTA 제17조는 관세협력(customs cooperation)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임.


 제II장

내국민대우 및 관세철폐

1. 내국민대우 및 예외

(1) 내국민대우의 의의

먼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NT)란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과 동종의 수입 상품간에 차별을 해서는 아니됨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상이한 수출국들로부터 수입된 동종상품간에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 MFN)와 구별된다. 여기서 MFN이 다른 국가들간에 있어 차별(discrimination between other countries)의 방지, 환언하면 수출국들간에 있어 경쟁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국민대우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other countries)의 방지, 환언하면 수입국내에서 국내상품과 동종의 수입상품간에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GATT상 무차별원칙을 구성한다.¹⁶⁾

16) J.H. Jackson, W.J. Davey & A.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이하 'Jackson etc.'). West Publishing Co., 1995, p.501.

여기서 이러한 내국민대우 의무는 조세, 수수료, 판매나 유통 요건 또는 사용 규칙 등 광범위한 제반 법규에 적용되며,¹⁷⁾ 관세(customs duties) 및 기타 국경조치(border measures)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¹⁸⁾

(2) 주요 FTA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예외 규정

먼저 한-칠레 FTA에서도 GATT 제3조 및 동조 주석(interpretative notes)과 합치하게 타방 당사국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GATT 제3조 및 그 주석 규정 또는 승계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은 한-칠레 FTA에 수용,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¹⁹⁾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한다.²⁰⁾ 또한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도 당사국은 GATT 1994 제3조 및 동조 주석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²¹⁾

다음으로 NA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GATT 제3조 및 동조 주석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17) 이와 관련하여 GATT 1994 제3조 제1항에서는 회원국은 내국세와 기타 내국부과금 및 물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규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이나 비율에 의한 제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칙이 국내생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품 또는 국내물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는 수입국의 행정 및 입법조치에 기한 제반 보호주의에 대해 방어를 제공하여 준다.

18) O.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p.9.

19) 한-칠레 FTA 제3.3조 내국민대우.

20) 미국-싱가포르 FTA ARTICLE 2.1 : (NATIONAL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ative notes.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Annex 2A.

21)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1조.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3조 및 주석규정 또는 승계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은 NAFTA에 수용되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²²⁾ 따라서 당사국 연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역내 국산상품을 자국산 상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덧붙여 NAFTA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상기 규정은, 각 당사국의 州(states or provinces)로 하여금 (협정)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당해 州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the most favorable treatment)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²³⁾고 규정함으로써²⁴⁾ 각 당사국의 州 및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할지역을 포함한 여하한 곳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만큼 유리하게 다른 당사국산 상품을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칠레-멕시코 FTA에서도 당사국은 GATT 1994 제3조에 의거,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함²⁵⁾ 아울러 이러한 내국민대우의 州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NAFTA에서와 같이 당해 州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²⁶⁾

22) NAFTA 제301조(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an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including its interpreta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the GATT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or any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all Parties are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23) 이를 가리켜 '最惠州/地方待遇'(most-favored State or Provincial treatment)로 부르기도 한다. R. Folsom & W. Davis Folsom, Understanding NAFTA and Its International Business Implications, Lexis Publishing(1999), p.132.

24) NAFTA 제301조 제2항.

25) 칠레-멕시코 FTA 제3-3조 제1항.

이에 비해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단지 GATT 1994 제 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²⁷⁾ 다른 FTA에서와 같이 GATT 제3조 및 주석규정은 당해 협정에 수용, 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된다.

한편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NAFTA에 첨부된 동 부속서 301.3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은 각기 부속서 301.3 Section A, B 및 C에 자국의 구체적인 내국민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모든 종류의 통나무(logs) 수출에 대한 통제,²⁸⁾ 멕시코의 경우 General Ways of Communication Act 제192-194조 기존 규정에 따라 외국선박에는 허가하지 않고 멕시코 선박에만 유보된 서비스 및 운영 관련 조치 등²⁹⁾ 그리고 미국의 경우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에 따라 캐나다에 부과되는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러한 예외조치를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부속서 2A에서 미국은 내국민대우의 적용 예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³⁰⁾ 칠레-멕시코 FTA 부

26) 칠레-멕시코 FTA 제3-3조 제2항.

27) 일본-싱가포르 FTA 제13조 (National Treatment under Chapter 2)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28) Annex 301.3 Section A 1.(a).

29) Annex 301.3 Section B 2.(a), (b).

30) ANNEX 2A: APPLICATION OF CHAPTER 2(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Articles 2.1, 2.2, and 2.7 shall not apply to : (a) controls by the United States on the export of logs of all species; (b) (i) measures under existing provisions of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46 App. U.S.C. § 883; the Passenger Vessel Act, 46 App. U.S.C. §§ 289, 292 and 316; and 46 U.S.C. § 12108, to

속서 3-03에서도 내국민대우의 예외로서 멕시코는 2004년 1월 1일까지 내국민대우와 불합치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개발 및 현대화 명령” 및 동 개정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 주요 FTA상 내국민대우 규정의 평가 및 비교

먼저 WTO 상품무역협정에서도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목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상품무역 전반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내지 기본의무로서 1994년 GATT 제3조와 제1조 및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MTAs)의 여러 부속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든 FTA에서도 내국민대우를 상품무역에 있어 기본 의무로서 규정한다. 다만,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의 적용 의무가 당사국의 구성 州나 지방조직과 같은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s)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 비하여 NAFTA에서는 州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한다.³¹⁾

일본-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한-칠레 FTA, 멕시코-EC

the extent that such measures were mandatory legislation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accession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and have not been amended so as to decrease their conformity with Part II of GATT 1947; (ii)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statute referred to in clause (i); and (iii) the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statut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i)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provision with Articles 2.1 and 2.7; (c) actions authoriz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31) R. Folsom & W.D. Folsom(이하 'Folsom etc. '), Understanding NAFTA and Its International Business Implications, Lexis Publishing, 1999, p.132.

FTA, 미국-싱가포르 FTA 및 NAFTA와 칠레-멕시코 FTA 등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GATT 제3조 및 주석규정이 당해 협정안에 수용(incorporate),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내국민대우의 적용에 있어 WTO협정과 당해 FTA간에 있어 조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GATT 제3조 8항[정부조달 및 보조금]과 10항[영화필름 상영]상 내국민대우 예외규정까지도 당해 FTA에 수용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 GATT 1994 제3조를 이와 같이 당해 FTA의 일부로서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이 동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 FTA나 WTO 양자의 분쟁해결절차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양 분쟁기관의 판정이 양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³²⁾

한편 NAFTA, 칠레-멕시코 FTA 및 미국-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당사국별 예외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³³⁾ 가령 NAFTA 부속서상 캐나다

32) Folsom etc., pp.132~133.

33) NAFTA ANNEX 301.3 Exceptions to Articles 301(내국민대우) and 309

Section A - Canadian Measures

1. Articles 301 and 309 shall not apply to:

- (a) controls by Canada on the export of logs of all species;
- (b) controls by Canada on the export of unprocessed fish pursuant to the following existing statutes: (i) New Brunswick Fish Processing Act, R.S.N.B. c. F- 18.01 (1982), as amended, and Fisheries Development Act, S.N.B. c. F-15.1 (1977), as amended; (ii) (중략) ……
- (c)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the importation of certain items on the Prohibited Goods List in Schedule VII of the Customs Tariff, R.S.C. 1985, c. 41 (3rd supp.), as amended, as of July 1, 1991;
- (d) except as provided in Chapter Seven (Agriculture),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the importation of grains taken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Canadian Wheat Board Act, R.S.C. 1985, c. C-24, as amended);
- (e)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the exportation of liquor for delivery into

및 멕시코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조치 목록이 그러하다.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먼저 향후 FTA 협상에 있어 내국민대우 규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서와 같이 GATT 1994 제3조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제3조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GATT 제3조 및 주석 규정이 당해 FTA에 수용, 협정의

any country into which the importation of liquor is prohibited by law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Export Act, R.S.C. 1985, c. E-18, as amended;

- (f)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the im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imported liquor by designated government agencies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Im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Act, R.S.C. 1985, c. I-3, as amended, to the extent that it creates an import monopoly consistent with Articles II:4 and XVII of the GATT and Article 31 of the Havana Charter;
- (g) except as provided in Chapter Seven (Agriculture),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preferential freight rates for grain originating in certain Canadian provinces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Western Grain Transportation Act, R.S.C. 1985, c. W-8, as amended;
- (h) measures by Canada respecting preferential rates for goods originating in certain Canadian provinces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Maritime Freight Rate Act, R.S.C. 1985, c. M-1, as amended;
- (i) Canadian excise taxes on absolute alcohol used in manufacturing und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Excise Tax Act, R.S.C. 1985, c. E-15, as amended;
- (j) except as provided for in Chapter Seven (Agriculture), import restrictions imposed under Section 5(1)(b) and (d) of the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R.S.C. 1985, c. E-19, as amended, as of January 1, 1994,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I:2(c)(i) of the GATT; and
- (k)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on goods that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operations performed in, or materials obtained from, Mexico as if they were performed in, or obtained from, a non-Party, and that are indicated by asterisks in Chapter 89 in Annex 401.2 (Tariff Schedule of Canada) of the Canad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for as long as the measures taken under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46 U.S.C. App. 883) and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36, (46 U.S.C. App. 1171, 1176, 1241 and 1241o) apply with quantitative effect to comparable Canadian origin goods sold or offered for sale into the United States market.

24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표 II-1〉 주요 FTA에 있어 내국민대우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GATT 1994 제3조 및 동 주석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과 이를 위해 GATT 제3조 및 동 주석은 FTA에 수용,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	한-칠레(3.3조); 미국-싱가포르(2.1조); EFTA국가-싱가포르(11조); NAFTA(301조); 칠레-멕시코(3-3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 및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州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부여를 추가로 규정함. · NAFTA와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내국민대우 예외에 해당되는 당사국별 조치를 부속서에 첨부함. ·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MFN대우와 관련 다른 당사국이 체결한 특혜협정상 추가 혜택의 수여를 위한 협상 기회 제공 규정함.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GATT 1994 제3조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만 규정	일본-싱가포르(13조)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일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정부는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그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GATT 제3조 8항상 정부조달 및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조치나 동조 10항상 영화필름 상영에 대한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해 FTA에서 별도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조치에 포함됨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는 GATT 제3조가 FTA에 수용,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조문을 도입할 경우 FTA에서 추가로 이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관련 사안 : FTA상 최혜국대우 규정 문제

WTO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목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더불어 최혜국대우를 상품무역 전반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내지 기본의무로서 1994년 GATT 제3조와 제1조 및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여러 부속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든 FTA에서 내국민대우를 상품무역에 있어 기본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혜국(most-favored-nation: MFN)대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GATT 1994 제24조에 의거 WTO협정상 최혜국대우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FTA에서는 WTO/GATT에서와 달리 무차별원칙의 핵심인 MFN대우를 달리 규정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어느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GATT 1994 제24조에 기한 특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특혜협정에서 부여하는 추가적 혜택에 대해 교섭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⁴⁾ 이는 비록 MFN대우의 자동 부여는 아니지만, 다른 FTA에 따른 추가적 특혜대우의 부여를 위해 당사국간에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4) EFTA국가-싱가포르 FTA Article 10(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f a Party concludes a preferential agreement with a non-Party under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it shall, upon request from another Party, afford adequate opportunity to negotiate any additional benefits granted therein.

2. 관세철폐

(1) GATT 1994 제24조상 관세철폐의 의의

關稅(tariffs)라 함은 수입상품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바, 이는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대표적인 수입규제방식이다. 이와 관련 GATT 및 WTO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관세를 허용하되,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의 기초위에서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s)를 통해 점진적인 관세의 인하를 추구함과 아울러 관세양허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다자간관세협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오고 있다.³⁵⁾ 실제로 지난 GATT시기에 있어 개최된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관세협상이 핵심의제로서 다루어져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에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GATT 및 WTO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와 그 밖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여 주는 지역조항(regional clauses)³⁶⁾인 GATT 1994 제24조 제8항 (a) 및 (b)에서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양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³⁷⁾ 다만, GATT 제24조 제5항 (c)에서는 관세

35) 1994년 GATT 제28조의 2(Art.XXVIII bis).

36) 참고로 GATT/WTO협정상 지역조항으로는 GATT 1994 제24조, GATS 제5조 및 1979년 국제무역의 수행에 관한 기본협정(Agreements relating to the Framework of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제1항-4항(Enabling Clause)이 있다.

37) 참고로 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8.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A customs union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substitution of a single customs territory for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so that

(i)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where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창설 또는 설정을 위한 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의 형태를 취할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그간 추진된 지역무역협정들의 대다수는 잠정협정의 형태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경과[과도]기간 없이 곧바로 당사국들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무역규제를 철폐하는 자유무역지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GATT 및 WTO에 통고된 자유무역협정의 절대 다수는 역내 회원국들간의 관세를 포함한 내부 무역장벽의 점진적인 철폐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한다.

다만 이전의 GATT에서는 “합리적 기간”이 불확정한 개념이어서 가령 오스트리아-EEC FTA에서는 이를 5년으로 규정한 반면 그리스-EEC 연합협정에서는 경과기간을 22년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³⁹⁾ 그러나 금번 GATT 1994 제24조에 관한 諒解 제5항에서는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and,

- (ii)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9, 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 (b) 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38) Jackson, p.584.

39) Jackson etc., p.472 ; Fischer, p.252.

이와 관련 이를 10년으로 한정하였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잠정협정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의 필요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2) 주요 FTA상 관세철폐 규정의 비교 및 평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체결되는 거의 모든 FTA는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하는 관계로 이들 FTA의 관세철폐 규정에서는 관세의 동결과 단계적 철폐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

먼저 NAFTA 제302조에서는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역내 국산 상품에 대해 현행 관세를 올리거나 신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세동결에 관해 규정하고,⁴⁰⁾ 이어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간의 상품무역과 관련 역내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인 폐지를 규정한다.⁴¹⁾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각 당사국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부속서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말도록 규정한다.⁴²⁾ 한-칠레 FTA에서도 동일하게 관세동결

40) NAFTA 제302조(Tariff Elimination)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o Party may increase any existing customs duty, or adopt any customs duty, on an originating good.

41) NAFTA 제302조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to Annex 302.2.

42) US-싱가포르 FTA ARTICLE 2.2(ELIMINATION OF DUTIE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progressively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nnexes 2B (U.S. Schedule) and 2C (Singapore Schedule).

2. A Party shall not increase an existing customs duty or introduce a new cus-

및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규정한다.⁴³⁾ 이 밖에 칠레-멕시코 FTA에서도 먼저 관세의 동결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느 당사국도 현행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⁴⁴⁾ 다음으로 관세의 철폐와 관련하여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하고,⁴⁵⁾ 각국은 점진적으로 관세인하프로그램에 의거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⁴⁶⁾

이에 대해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관세의 철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⁴⁷⁾ 달리 관세동결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뉴질랜드-싱가포르 FTA(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와 싱가포르-호주 FTA에서는 협정 발효 즉시 당사국들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⁴⁸⁾ 또한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도 협정 발효 즉시 예외

toms duty on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other than as permitted by this Agreement, subject to Annex 2A.

43) 한-칠레 FTA 제3.4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관세를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44) 칠레-멕시코 FTA 제3-4조제2항.

45) 칠레-멕시코 FTA 제3-4조제1항.

46) 칠레-멕시코 FTA 제3-4조제3항.

47) 일본-싱가포르 FTA Article 14(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1. Each Party shall eliminate its customs duties on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Schedule in Annex I.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ccorded only to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whose importation meets the consignment criteria provided for in Article 27.

48)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4조.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국산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과 새로운 관세를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⁴⁹⁾

한편 NAFTA,⁵⁰⁾ 일본-싱가포르 FTA,⁵¹⁾ 한-칠레 FTA⁵²⁾ 등 FTA에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자국 양허표상 관세철폐의 가속화 또는 단계적 철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양허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철폐에 관한 당사국의 최초 양허 약속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상에서 보면 첫째 유형으로 NAFTA, 미국-싱가포르 FTA, 한-칠레 FTA, 칠레-멕시코 FTA 등 다수의 FTA에서는 기존 관세의 인상이나 새로운 관세의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관세동결과 각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관세의 동결은 FTA 당사국들간에 협정 발효 이전의 실행 관세율 수준을 넘는 관세인상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진다.⁵³⁾ 따라서 핵심은 관

49)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8조 (Customs Duties)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bolish all customs duties on imports and expor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an EFTA State or in Singapore, excluding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No new customs duties shall be introduced.

50) NAFTA 제302조 제3항.

51) 일본-싱가포르 FTA Article 14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2.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he Parties shall consult to consider:

(a)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goods as set out in the Schedules in Annex I; or

(b) scheduling the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goods that are not yet set out in the Schedules in Annex I.

52) 한-칠레 FTA 제3.4조 4항.

53) 가령 NAFTA와 관련 멕시코는 협정 체결 이전에 과감한 관세인하 정책에 착수하여, 1994년 멕시코의 관세중 20%를 넘는 것이 없었고, 평균 관세 역시 10%의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수준은 멕시코가 GATT에 약속한 양허관세보다 매우 낮은 것이었다. 따라서 멕시코는 수입품에 대해 언 제라도 관세를 푼 이상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NAFTA의 체결로 미국 및 캐나다 제품은 그러한 관세 인상 조치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다. Folsom etc., p.129.

세의 단계적 철폐인데 이들 협정에서는 그러한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품목과 단계적 철폐의 대상 품목 및 일정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그 부속서를 통해 양허하고 있다. 둘째 유형으로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관세동결 약속없이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독특하다. 셋째로,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하여 완전한 관세철폐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관세장벽의 철폐라는 GATT 제24조상 자유무역지역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세 번째 유형은 이를 충족하고, 두 번째 유형과 첫 번째 유형은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1-2〉 주요 FTA에 있어 관세철폐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관세의 동결 및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점진적 철폐 규정	NAFTA(302조); 미국-싱가포르(2.2조); 한-칠레(3.4조); 칠레-멕시코(3-4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92%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나머지에 대해 10년내 철폐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철폐만을 규정	일본-싱가포르(14조)	싱가פור는 전 품목, 일본은 거의 대다수의 공산품과 극소수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음(전품목수 기준 77%).
협정 발효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규정	EFTA국가-싱가포르(8조); 뉴질랜드-싱가포르(4조)	

(3) 주요 FTA당사국의 관세철폐 양허 실행의 비교 및 평가

관세철폐는 FTA 발효 이후 당사국간 무역 및 국내산업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율 사항이다. 그런데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와 EFTA국가-싱가포르 FTA와 같이 협정 발효 직후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예외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FTA 관세철폐 협상에서는 상술한 관세철폐규정 유형중 관세의 동결 및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점진적 철폐를 규정하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관세철폐 협상에서는 각 협상국별로 적용 예외 품목을 얼마만큼 포함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점진적 관세철폐의 대상 품목의 범위 및 철폐 일정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등에 관한 협상이 관건이 된다. 실제로 체결된 주요 FTA의 관세철폐 양허를 살펴보면 그 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부 FTA에 있어 관세철폐 양허약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뉴질랜드-싱가포르 FTA나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양허가 불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반면에 일본은 공산품의 경우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양국간 교역품목의 98%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농림수산물외의 경우 목재, 담배 및 양주 등 극히 일부 품목만을 무세화하였을 뿐 그 밖의 대다수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⁴⁾ 일본의 싱가포르로부터의 총수

54)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The Agreement between

입액 대비 무세화대상 품목의 비중은 94%에 달하지만⁵⁵⁾ 농업 분야는 사실상 개방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GATT 제 24조상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요건과의 합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 대다수 FTA의 경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점진적 관세철폐를 포함하고 있다. NAFTA의 경우 협정 발효일인 199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 15년간 4단계에 걸쳐 모든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⁵⁶⁾ NAFTA에서 멕시코와 미국간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철폐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품목 수 기준 발효 즉시 48.9%, 5년 후 17.4%, 10년 후 31.8% 그리고 15년 후 1.4%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표 II-3〉 참조). 여기서 15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된 제품들은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미국산 옥수수와 콩, 미국으로 수출되는 멕시코산 오렌지주스와 설탕 등이 이에 해당된다.⁵⁷⁾

다음으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였는데, 그 철폐 시한이 EC의 경우 3년, 멕시코의 경우 7년으로 매우 짧은 것이 주목되며, 멕시코가 EC에 비해 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The JSEPA)(이하 'Japanese METI'), Japan, Nov. 2002, p.7.

55) Japanese MEIT, p.7.

56) 참고로 NAFTA에서 캐나다-미국간의 상품무역에 대해서는 NAFTA의 관세 철폐 일정과 관계없이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 CUFTA)에 따라 양국의 모든 관세는 3단계에 걸쳐 지난 1998년 1월부터 철폐되었고, 이는 NAFTA에 통합되었다. NAFTA 부속서 302.2(4), (12). Raj Bhala & Kevin Kennedy, World Trade Law : The GATT-WTO System, Regional Arrangements, and U.S. Law(이하 'Bhala & Kennedy'), Lexis Law Publishing(1998), pp.174~175.

57) 그런데 오렌지주스와 같은 일부 품목은 관세를 균등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인하, 철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Folsom, p.130, n. 5.

34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표 II-3〉 NAFTA에서의 미국·멕시코의 관세 철폐 단계별 대상 품목 비율

관세철폐 단계	미국	멕시코
A단계 : 협정 발효(1994.1.1.) 즉시 무관세 적용 품목	53.8%	31.0%
B단계 : 5년에 걸쳐 매년 20%씩 관세 인하 폐지 품목	8.5%	17.4%
C단계 :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관세 인하 폐지 품목	23.1%	31.8%
C+단계 : 15년에 걸쳐 매년 6.66%씩 관세인하 폐지 품목	0.7%	1.4%
D단계 : 기존 무관세 유지 품목	13.9%	17.9%

자료 : USITC Report, Potential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Selected Industrie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Report to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U.S. Senate, Jan. 1993, p. IX ; 김현종, 「경제블록화와 NAFTA」, 21세기북스(1995), p.165 ; Folsom, p.130 참조.

(〈표 II-4〉 참조). 다만, 농산물의 경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유보하였는데, 여기에서는 EC가 멕시코 보다 많은 수의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 자유화를 유보받았다.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92%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 EFTA는 각 기 공산품의 100%, 농산품의 95%의 품목, 도합 99.8%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표 II-4〉 EC-멕시코 FTA에서의 관세 철폐 단계별 대상 품목의 수 및 비율

관세철폐 단계	멕시코	EC
A단계 : 협정 발효(2000.7.1) 즉시 철폐	4,380(46.9%)	5,444(67.3%)
B단계 : 3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1,054(11.1%)	2,626(32.7%)
C단계 : 7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4,079(42.9%)	0(0%)
합 계	9,513(100%)	8,090(100%)

자료 : 외교통상부, EU-멕시코 FTA 양허안의 기초 작성.

한-칠레 FTA에 있어 한국측의 관세양허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국내 비생산 기간에 한해 10년 철폐), 10년 철폐, 16년 철폐,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s: TRQ) 물량에 대한 무관세 적용 및 DDA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자유화 제외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

〈표 II-5〉 한-칠레 FTA 한국측 양허안 개요¹⁾

단위 : 한국 HS 10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 철폐	9,740 (87.2)	9,101 (99.9)	224 (15.6)	138 (58.2)	277 (69.5)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
5년내 철폐	701(6.3)	-	545 (38.1)	70(29.5)	86(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 도주, 아몬드
7년내 철폐	41(0.4)	1(0.01)	40(2.8)	-	-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내 철폐	1(0.01)	-	1(0.07)	-	-	기타과일주스
10년내 철폐	262(2.3)	-	197 (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계절관세 ²⁾	1(0.01)	-	1(0.07)	-	-	포도
16년내 철폐 ³⁾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 논의 ⁴⁾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논의	373(3.3)	-	373 (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 제품
제 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432	237	399	

자료 : 외교통상부.

주 : 1) 품목분류, HS 코드 변경 등으로 품목 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3) 5년 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4) 일정한 관세율 할당(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하되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DDA 타결 후 논의.

다. 우리나라의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10단위 품목수 기준 총 1만 1,170개 품목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이행과 동시에 철폐하도록 하였고, 이들 즉시 철폐 품목의 대부분인 9,101개 품목은 공산품이며, 나머지는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품목 등이다. 또한 10년 이내 자유화율은 96.2%로 공산품, 임산물 및 수산물의 전 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 해당된다. 자유화 제외 품목은 농산물 21개 품목으로 농산품중 0.5%, 전체 품목수 대비 0.2%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허안이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표 II-5〉 참조).

반면에 칠레측의 양허 카테고리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5년 거치 8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우리보다 다소 간단히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칠레는 HS 8단위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로, 총 품목수 5,854개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기로 하였다. 또한 칠레는 10년 내에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자유화하였다. 자유화 제외 품목은 공산품 12개, 농산품 42개 등 54개로 전체 품목수 대비 1%이다(〈표 II-6〉 참조).

〈표 II-6〉 한-칠레 FTA 칠레측 양허안 개요¹⁾

단위 : 칠레 HS 8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농산물)
즉시 철폐	2,450(41.8)	1,478(30.6)	677(92.9)	96(100)	199(99)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5년 철폐	1,994(34.1)	1,992(41.3)	-	-	2(1.0)	폴리에틸렌, 수송용 차량
7년 철폐	14(0.2)	14(0.3)	-	-	-	유류여과기
10년 철폐	1,190(20.3)	1,180(24.4)	10(1.4)	-	-	축전지, 청소기
5년거치 8년 철폐 ²⁾	152(2.6)	152(3.1)	-	-	-	철강, 섬유 및 의류
예 외	54(1.0)	12(0.2)	42(5.8)	-	-	세탁기, 냉장고
합 계	5,854	4,828	729	96	201	

자료 : 외교통상부

주 : 1) 품목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 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됨.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먼저, FTA에 있어 관세철폐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당사국들간 교역의 증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 파트너와의 협상에 있어 우리의 관세철폐 대상 제외 또는 유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협상의 기본목표로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술한 관점에서 보면 EFTA국가-싱가포르 FTA와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이 협정 발효 직후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농산품분야를 비롯하여 교역 파트너에 따라 민감한 품목이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모든 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철폐 규정의 도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철폐 협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관세동결을 포함한 점진적 관세철폐 규정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FTA 협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의 격차 등으로 관세철폐의 영향이 큰 산업 및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취약산업 및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따른 10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잠정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잠정기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별 및 품목별로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간-가령 5년후 철폐, 7년후 철폐, 10년후 철폐 등-을 설정, 해당 품목을 양허하여야 할 것이며, 양허에 있어서는 당해 품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칠레 FTA에 있어 우리측의 양허안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예방법을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어느 상품을 어떤 단계[얼마의 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체약국의 수입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당해 국내 상품의 경쟁력과 수입 민감도(import sensitivity)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GATT 1994 제 24조 해석 양해에서는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 따라서 극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는 잠정기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GATT 1994 제24조에서는 모든 무역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이는 어느 정도 제한된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의 유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난 GATT에서 논쟁이 있었다.⁵⁸⁾ 이에 대해 GATT 1994 제 24조에 관한 양해의 前文에서는 경제통합의 구성국들간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의 철폐가 모든 무역(all trade)에 적용될 경우 그러한 경제통합의 세계무역 확대에의 기여가 증대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무역부문(any major sector of trade)이 제외될 경우 그러한 기여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WTO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다자간무역협상인 DDA의 지역무역협정 규범 협상 과제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로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관한 WTO 사무국 Background Note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RTA 당사국들간 무역의 일정 비율-가령 95% 이상 등-과 같은 통계적 수치를 이용한 양적 접근방법을 도입하거나 또는/동시에 특정 부분 또는 주요 부분(specific sector or major sector)을 지역무역협정(RTA) 당사국들간의 역내 무역자유화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질적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⁵⁹⁾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적용대상

58) 참고로 GATT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대한 검토 중에 EFTA설립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한 작업반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란 표현에는 양적인 측면(quantitative aspect)은 물론 경제활동 중 중요한 부문의 배제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질적인 측면(qualitative aspect)도 내포된다고 지적하였다. GATT, 9th Supp. BISD 83 (1961).

59) TN/RL/W/8, p.25. 참고로 양적 기준중 하나인 세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 분야 및 품목

의 범위를 무역량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의 세번(a certain percentage of tariff lines) 관점에서도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경우 가령 HS 6단위 기준 세번 품목의 95%를 무세화 적용 대상 하한선의 기준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개념의 명료화를 위하여 서비스무역에서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한 GATS 제5조 1항 각주의 규정을 GATT 1994 제24조에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⁶⁰⁾

생각건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란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양적 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는 WTO 사무국이 제안한 HS 6단위 기준 일정 비율과 RTA 당사자들간의 무역액중 일정 비율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란 요건에 합치하는 무역자유화 비율의 최저 기준으로서는 WTO 사무국이 예시적으로 제안한 95% 기준 정도를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무국이 제시하고 있는 질적 기준이란 것은 특정 분야 또는 주요 분야를 배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사건으로는 앞에서 제시된 양적 기준중 HS 단위 기준 세번 품목(tariff lines)의 일정 비율과 RTA 당사국간의 일정 비율의 무역량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사국들이 주요 분야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양적 기준의 동시 적용이 현실적인 대안 내지

의 교역 비중이 큰 당사국들간의 RTA에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60) Id., pp.25~26.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란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FTA 협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HS 일정 단위 품목수 기준 95% 이상 그리고 당해 협상국가로부터의 기준연도 수입금액의 95% 이상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끝으로 FTA 관세철폐 협상에서는 그러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국내의 특정 산업 부문을 사전에 조사, 선정 후, 협상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을 관철시키거나⁶¹⁾ 적어도 전체 협상에서의 레버지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1) 가령 캐나다-미국 FTA 및 NAFTA에서의 문화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 예외 등이 그러하다.


 제III장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라 하면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판정하는데 적용하는 법률, 규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하며,⁶²⁾ 이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은 다시 GATT 1994에 따른 최혜국대우 또는 그 밖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등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조치의 적용에 있어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GATT 1994 제1조 제1항상 최혜국대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 또는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의 관련 법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등과 같은 자발적인 특혜무역 제도의 운용에 있어 이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별된다.⁶³⁾

여기서 前者의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WTO 원산지

62) WTO 원산지규정협정 제1조 제1항.

63) WTO 원산지규정협정 제1조 제1-2항 참조.

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있으나 이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일 뿐 품목별로 적용되는 통일된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WTO 차원에서의 통일 국제원산지규정의 제정 작업이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와 WTO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입장 차이가 커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특혜 원산지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관련 규칙의 입법 및 시행은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각국은 관련 법규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자유롭게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어, 국가별로 동일한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상품의 원산지가 수입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래 원산지규정은 그 성질상 기술적, 중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자국산업의 보호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⁶⁴⁾

한편 後者의 특혜원산지규정은 완전한 이행단계에 들어선 관세동맹의 경우⁶⁵⁾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모든 지역무역협정의 필수적인 규율사항의 하나로서 간주된다.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은, 어느 수입제품이 동 협정상 무관세대우를 비롯한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

64)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pp.108~109.

65) 가령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그러한 바, 관세동맹인 EU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공동체)적 차원에서 비차별적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였다. OECD, p.169, n.1.

해 제품의 원산지 결정이 필요하기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 당해 협정 당사국들은 독자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당사국들간의 특혜대우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⁶⁶⁾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그러한 원산지규정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⁷⁾

(2) 주요 FTA의 원산지결정 관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 FTA에서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방법)의 의의

모든 FTA에서는 동 협정에 따른 특혜대우의 부여 및 이러한 특혜의 역외유출 내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핵심 요소는 원산지 결정 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간 체결된 FTA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 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이 있다. 다음으로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 적용된다. 그러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 세번 변경기준, (ii) 특정가공공정기준[기술테스트방법] 및 (iii) 부가

66) 이를 가리켜 “trade defle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67) WT/REG/W/45, pp.2~3.

가치기준[일정비율기준방법] 등 3가지 주요 기준[방법]이 이용된다. 그런데 이들 원산지결정 기준[방법]은 각기 특성 내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 적용상 한계를 가진다. 환언하면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고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완전한 원산지결정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간 체결된 FTA에서는 이들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각기 거의 독특한 원산지규정을 수립한다.⁶⁸⁾

한편 FTA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제품 특화적인(product-specific) 원산지결정의 일반기준 이외에 이들 일반기준을 보충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가령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s), 누적기준(cumulation rules), 흡수기준(absorption/takeover principle)과 같은 보충적인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 밖에 일부 FTA에서는 특정품목에만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특칙을 두고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이들 주요 원산지결정 일반 기준 및 보충적 기준별로 주요 FTA에서 어떠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일반기준 1 : 완전생산기준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차적인 일반기준으로서 확립된 것이다. 완전생산기준의 적용 여부는 당해 상품이 “한 국가

68) Id., p.5.

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상품”인지 아니면 “그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인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생산기준은 일부 농업과 광업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판정기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생산활동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의 세계화 상황하에서는 다른 대다수 교역 상품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FTA 원산지규정에서는冒頭에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NAFTA는 당사국 내에서 전부 취득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은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다.⁶⁹⁾ 한-칠레 FTA,⁷⁰⁾ EC-멕시코 상품무역 FTA,⁷¹⁾ 일본-싱가포르 FTA,⁷²⁾ 미국-싱가포르 FTA⁷³⁾ 등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EFTA, AFTA, CEFTA(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등에서는 완전생산기준 제품을 일정한 제품목록(a list of products)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동 목록에는 당해 국가에서 채굴 또는 수확되거나, 추출된 제품, 당해 국가에서 사육 또는 사냥되거나 어획된 동물, 현지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이상의 하나 이상을 전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등이 포함된다.⁷⁴⁾

69) NAFTA 제401조(a). 여기서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영토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상품이라 하면 당해 영토에서 채굴된 광물, 수확된 채소류, 사육된 동물 및 당사국에 등록된 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 등을 의미한다. NAFTA 제415조.

70) 한-칠레 FTA 제4.2조 1항 가.

71)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Annex III 제2조 1항 a.

72) 일본-싱가포르 FTA 제23조 1항.

73) 미국-싱가포르 FTA 제3.1조 a.

74) OECD, p.165.

한편 NAFTA의 경우 오로지 역내산 원자재(originating materials)만을 사용하여 당사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⁷⁵⁾고 추가로 규정한다. 한-칠레 FTA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⁷⁶⁾ 또한 호주-뉴질랜드간 긴밀한 경제관계무역협정(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 또는 '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이 “그 영토의 비제조 원부품”과 “그 영토에서 비제조 원부품(이나) 전적으로 제조된 원료를 가지고 당해 영토에서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영토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협정이 적용되는 영토의 원산지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⁷⁷⁾ 이는 완전생산기준의 논리적 연장으로 이해된다.⁷⁸⁾

3) 일반기준 2 : 실질적 변형기준

어느 상품의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된 경우 이들 상품의 최종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최종 실질적 변형은 일련의 매우 복잡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개의 주요 기준[방

75) NAFTA 제401조(c).

76) 한-칠레 FTA 제4.2조 1항 다.

77) 호주-뉴질랜드 FTA 제3조 1. (a), (b).

78) Bhala & Kennedy, p.369. 가령 펜을 예로 들면, 플라스틱은 캐나다산이고 메탈은 미국산이며, 잉크는 멕시코산이라면 원자재 모두가 NAFTA산인 관계로 펜은 역내산 제품이 된다. Id.

법]들은 (i) 그러한 변형이 HS 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 (ii) 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ii)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등이다. 각 기준은 그 기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며 모든 제품과 모든 목적에 완벽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들은 보통 이 세 기준 모두를 다양한 정도로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⁷⁹⁾

① 세번변경기준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세번변경기준(the criterion of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the 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이하 'CTH')으로 이는 사용된 원재료의 稅番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가령 NAFTA의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사국의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경우 각각의 그러한 비역내산 원자재가 HS에 기한 세번(tariff classification)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상품에도 NAFTA 원산지가 부여된다는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한다.⁸⁰⁾ 이에 따르면 특정 세번의 변경이 적용되는 상세한 제품 또는 제품군에 관한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운용되는데,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는 관세분류상의 변경, 즉 각 제품과 제품군에 대응하는 특정 HS 관세분류상

79) OECD, p.165. 참고로 이들 3가지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WTO Secretariat,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Job No(01)/131 of 17 September 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80) NAFTA 제401조(b).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변경을 거쳐야만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부 경우 관세율표상 4번째 단위 숫자(heading)에서의 변경을 의미하고 나머지 경우 6번째 단위의 숫자(subheading)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첫번째 규칙을 상품에 적용해도 관세분류상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 보다 낮은 단위에서의 관세 변동이 충족되고 추가적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 가령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60% 미만이나 아니거나 상품의 순비용이 50% 미만인 경우⁸¹⁾ 등 - 원산지가 부여될 수 있다.⁸²⁾ 이 밖에도 한국-칠레 FTA,⁸³⁾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EFTA국가-싱가포르 FTA, 칠레-멕시코 FTA, 일본-싱가포르 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 그간 체결된 대다수의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세번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호주-뉴질랜드 FTA, AFTA, 미국-이스라엘 FTA 등 극소수 FTA에서는 세번변경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된다.⁸⁴⁾

세번변경방법을 규정한 FTA에서는 대개 HS 4단위 기준 세번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FTA에서는 모두 특정 경우에 있어 관세품목의 동일 번호로 분류된 재료의 이용을 허용하는 소위 “연성” 세번변경방법(‘soft’ CTH method)을 규정하고 있음도 공통된 특징이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FTA에서는 이러한 예외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데, EC-Cyprus Association이나 EC-Malta Association 등 EC가 참여한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료가

81) NAFTA 제401조 (d) (ii).

82) OECD, p.165.

83) 한-칠레 FTA 제4.2조 1항.

84) WT/REG/W/45, p.23.

액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반면에 NAFTA 등에서는 HS 특정 단위 기준의 변경을 요구한다.⁸⁵⁾

② 부가가치기준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일정비율기준 방법(percentage criteria method) 또는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으로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부가되었어야만 하는 가치의 최소비율(a minimum percentage of value)을 규정하거나 수입품에 귀속되는 가치의 최대비율(a maximum percentage of value)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비율 기준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변형과는 거리가 있으나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요 가공공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된다.⁸⁶⁾ 그러한 일정비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이 이용되고 있는바, (i) 당해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데 허용되는 수입 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수입산함량(import content : MC), (ii)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added) 또는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 비율(regional value-added)의 최소비율을 의미하는 국내산함량(domestic content : DC) 또는 역내 가치포함 비율(regional value content : RVC), (iii) 제품이 원

85) WT/REG/W/45, p.8.

86) 류원택,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관세와 무역」, 2001년 4월호, pp.32~34; Bhala & Kennedy, pp.353~361.

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체 부품중 원산지산 부품의 최소 비율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부품가액(value of parts: VP) 등이 있다.⁸⁷⁾

이와 관련 다수의 FTA에서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FTA에서 사용하는 일정비율의 기준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50여건에 달하는 소위 PANEURO형 FTA⁸⁸⁾와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수입산함량과 부품가액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며, 이 경우 수입산함량 요구 기준은 50%, 40%, 30% 등 다양한데 가액의 산정은 공장도(ex-works)가격에 기초한다. 다만, AFTA의 경우 60%의 수입산함량 단일 기준만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NAFTA의 경우 상품이 당사국 영토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당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역외국산 원자재가 비조립형태로 수입되었으나 HS 일반해석규칙 2(a)항에 따라 조립제품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또는 이 상품에 대한 세번이 당해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동일한 세번을 규정하고 동시에 더 이상 하위 세번(subheadings)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지역가치함량[역내부가가치](RVC)이 f.o.b.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시 60% 이상이거나 순비용방법⁸⁹⁾의 사용시 50% 이상이고,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⁹⁰⁾ 매우 높은 국내산함량 단일 기준을 이용한다. 이

87) WT/REG/W/45, p.5.

88) 범유럽형(pan-European) FTA라 함은 EC, EFTA 및 중동부유럽 국가들간에 체결되는 FTA를 가리키며, 가령 EC-Bulgaria FTA, EC-Norway FTA, EFTA States-Bulgaria FTA, Czech-Turkey FTA 등 그 수는 50건에 달한다. WT/REG/W/45, p.3, n.3, p16.

89) 순비용방법은 공장도가격과 비슷하지만 직접적인 노무 및 제조비용은 제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d., p.23,n.13.

에 비해 멕시코-칠레 FTA에서는 f.o.b. 거래가격방법 사용시 50%, 순비용방법 사용시 40% 이상의 RVC가 요구되고, 캐나다-칠레 FTA에서는 거래가격방법 사용시 35%, 순비용방법 사용시 25% 이상의 매우 낮은 수준의 RVC를 요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35%의 내국산함량(domestic content) 단일 기준을 요구한다.⁹¹⁾ 한-칠레 FTA에서는 공제법(build-down method)이 사용된 경우 45%, 직접법(build-up method)이 사용된 경우 30% 이상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요구한다.⁹²⁾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역외국산 부품을 투입, 생산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EFTA 또는 싱가포르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데 제품에 따라 공장도가격 기준 역내산 함량 비율이 40%에서 80%까지 상당히 다양하다.⁹³⁾

여기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높을 경우 생산자가 FTA상 특혜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에 생산자로서는 보다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특정가공·공정기준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세 번째 방법은 특정 가공공정기준

90) NAFTA 제401조(d).

91) WT/REG/W/45, p.24.

92) 한-칠레 FTA 제4.2조 1항.

93) EFTA국가-싱가포르 FTA Annex I.

(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또는 기술테스트방법(technical test method : TT)으로 이는 각 품목별로 기술적으로 주요한 제조·가공 공정을 열거하여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규정은 다시 일정한 제조·공정이 있어야만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positive test방식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⁹⁴⁾ positive test방식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최소가공(minimal operations)의 예외와 함께 규정된다. 실제에 있어 PANEURO형 FTA 등 유럽 지역에서 체결되는 FTA의 다수에서 이러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체결된 FTA에서도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그 내용상 섬유 및 화학제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와 관련하여 보다 많이 적용된다.⁹⁵⁾

이에 비해 NAFTA, 멕시코-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 등에서는 특정가공기준을 일반기준 대신에 보충기준이나 예외 적용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두 가지 일반기준에 비해 적용대상 세번 품목의 수도 매우 적다.⁹⁶⁾ 그리고 AFTA의 경우 특정가공기준에서 최종제조공정이 수출한 ASEAN 회원국에서 수행되었을 것을 요구한다.⁹⁷⁾

94) WT/REG/W/45, pp.4~5.

95) WT/REG/W/45, pp.7~8.

96) WT/REG/W/45, p.45.

97) WT/REG/W/45, p.45, n.11.

4) 보충기준

① 최소허용수준

대다수의 FTA에서는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되는 비원산지[비역내산] 원료(non-originating materials)의 일정한 최대비율을 허용하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가공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재료에 관한 것이다. 즉,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는 당해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액을 산정, 규정된 최대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된다.

가령 NAFTA에서는 모든 비원산지[비역내산] 원자재(non-originating material)는 세번변경이 있거나 지역부여가치(RVC) 요건을 충족해야만 NAFTA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NAFTA산 원자재의 가액이, f.o.b. 가격으로 산정된 상품의 거래가액 대비 7% 미만으로 사용된 상품은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최소허용수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⁹⁸⁾ 이와 관련 섬유의 경우 최대가액 대신에 최대 무게를 적용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⁹⁹⁾ 따라서 그러한 최소허용수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북미산으로 간주되어 무관세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최소허용수준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FTA에 있어 최대 비율을 보면,

98) NAFTA 제405조.

99) NAFTA 제405조 제3항.

한-칠레 FTA에서는 조정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¹⁰⁰⁾ 멕시코-칠레 FTA에서는 상품의 거래가액 기준 8%, 캐나다-칠레 FTA에서도 상품의 거래가액 대비 9%,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공장도가격 기준 10%, 섬유류에 대해서는 8%를 적용하며, EFTA-이스라엘 FTA에서는 섬유 원자재에 대해서만 최대 무게 기준 10%의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조정가격의 10%기준을 채택하고 있다.¹⁰¹⁾ 이에 비해 호주-뉴질랜드 FTA의 경우 2%의 매우 낮은 기준을 적용할 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여 매우 엄격한 최소허용수준을 도입하고 있다. AFTA의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 자체에 관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¹⁰²⁾

이에 비해 일본-싱가포르 FTA의 경우 일률적인 최소허용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부속서 IIA의 각 장에서 품목별로 최소허용수준 비율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⁰³⁾

최소허용수준 규정은, 원산지결정 규정이 다소 제약적인 성

100) 한-칠레 FTA 제4.6조 1항. 참고로 섬유나 방사의 경우 구성요소의 총무게 기준 8% 이하일 경우 원산지로 간주한다. 동 제3항.

101) 미국-싱가포르 FTA 제3.3조(DE MINIMI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that does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ursuant to Annex 3A is nonetheless an originating good if:
 - (a)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that do not undergo the required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10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and
 - (b) the good meets all other applicable criteria set forth in this Chapter for qualifying as an originating good. The value of such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however, be included in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for the good. Such consultations may include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20.1 (Joint Committee).

102) WT/REG/W/45, pp.22~23.

103) 일본-싱가포르 FTA 제25조.

격을 갖고 있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가공기준을 완화하여 비원산지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보다 쉽게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⁰⁴⁾ 또한 이러한 예외조항은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을 사용한 상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도입된 것으로도 보인다.¹⁰⁵⁾

요컨대 최소허용수준의 도입은 FTA 체결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역내 무역을 확대하여 줄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런데 최소허용수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FTA의 2%와 같이 가급적 낮은 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교역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1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기도 하다.

② 원산지의 누적 규정

지역무역협정상 원산지의 누적(cumulation[accumulation] of origin)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의 누적규정이 도입되면, 생산자들이 최종 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특정 원산지로부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누적규정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누적은 특혜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를 갖고 있지 않으

104) OECD, p.166.

105) Folsom etc., p.136.

나 당해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중 하나에 원산지를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양자간 FTA의 당사국들간에는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이 적용되고, 단일의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간 FTA에서는 완전 누적(full cumulation)이 적용된다.¹⁰⁶⁾ 즉, 양자간 누적 규정에 따르면 FTA 당사국중 하나에 의해 공급된 재료는 “역내산”(domestic)으로 간주된다. 완전누적규정에 따르면 FTA에 의해 창설된 전체특혜지역은 하나의 단일 영토로 간주되고, 따라서 당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여하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은 원산지결정을 부여받게 된다.¹⁰⁷⁾

이 밖에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유사누적규정은 누적규정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들간의 별도 협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사례로는 EU와 EU에 가입하지 않은 EFTA 회원국들간에 체결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협정을 들 수 있다. 특히 1997년 이후로 EU, EFTA 국가들, 중동부 유럽국가들, 발틱국가들, 슬로베니아 및 터키간에는 유사누적규정을 통해 일종의 유럽형누적제도(European cumulation system)가 확립되어, 특혜 원산지규정을 통일시켜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럽형누적제도는 소속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최종 제품의 특혜적 지위를 상실함 없이 이들 30개 참가국중 하나로부터 원산지를 부여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

106) OECD, p.167.

107) WT/REG/W/45, pp.5~6.

을 허용한다.¹⁰⁸⁾ 그런데 이러한 유사누적규정에 대해 일부 WTO회원국들은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별개의 독자적인 지역무역협정들간의 유사누적은 WTO체제하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¹⁰⁹⁾

한편 주요 FTA에서의 원산지 누적 규정을 보면, 먼저 PANEURO형 FTA와 EEA협정 등에서는 누적요건의 3가지 형태 즉, 양자간누적, 완전누적 및 유사누적 모두를 수용하여 규정하고, 특히 EEA협정에서는 완전누적 이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최소가공 이상(more than minimal operations)을 요구하고, 관련하여 흡수원칙 및 추적심사를 규정한다.

다음으로 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양자간 및 완전 누적 규정의 2가지 형태를 규정하는데 최소가공을 제외한 최종 제조공정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행되지 않는 경우 흡수원칙 및 추적심사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투입재는 100% 수입산으로 간주하게 된다.¹¹⁰⁾

이에 대해 NAFTA,¹¹¹⁾ 한-칠레 FTA,¹¹²⁾ 일본-싱가포르

108) OECD, p.168.

109)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Job No. (01)/131, para.34 참조.

110) WT/REG/W/45, pp.25~26.

111) NAFTA 제404조:(Accumul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4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FTA¹¹³⁾, 멕시코-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등에서는 오직 양자간 누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여기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경우 최소가공 이상을 요구하는 단서가 있는 반면에 캐나다-칠레 FTA, 멕시코-칠레 FTA 및 NAFTA에서는 최소가공 이상을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없는 대신에 중간재에 대한 흡수원칙을 규정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누적규정은 역내 생산자들로 하여금 완제품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중 역내에서 부가된 가치 부분만큼은 완제품의 역내가치포함(RVC)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점에서 그만큼 특혜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수준 역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양자간 누적 규정의 도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For purposes of Article 4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

112) 한-칠레 FTA Article 4.5(Accumulation)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 one's production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113) 일본-싱가포르 FTA 제24조(Accumulation)

1.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either Party shall consider the production in its territory as tha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of one or both Parties.
2. The production of a Party includes the production at different stages undertaken by one or more producers located in its territory.

③ 중간재에 적용되는 흡수원칙

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 or roll-up principle)은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과 관련이 있다. 흡수원칙에 따르면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¹¹⁴⁾ 즉 FTA에서 생산자가 사용한 원자재가 역내산인지의 여부를 “all or nothing”이라는 roll up 개념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다.¹¹⁵⁾ 따라서 비원산지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의 투입은 다소간 융통성있게 원산지 지위가 부여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흡수 또는 roll-up원칙은 재료가, 후속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를 유지하도록, 특정 공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¹¹⁶⁾

실제로 이러한 흡수원칙은 EEA협정, EFTA-이스라엘 FTA 등 유럽의 누적규정 적용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동 원칙이 없었더라면 복잡하게 되었을 원산지결정제도의 적용을 단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NAFTA,¹¹⁷⁾ 한-칠레 FTA¹¹⁸⁾에서도 역내가치

114) WT/REG/W/45, p.6.

115) Folsom etc., p.135.

116) OECD, p.166.

117) NAFTA 제402조.

10.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403(1), any self-produced material, other than a component identified in Annex 403.2,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may be designated by the producer of the good as an intermediate material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the good under paragraph 2 or 3, provided that where the intermediate material is subject to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no other self-produced material subject to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intermediate material may itself

산정과 관련하여 중간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품의 생산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재료(self-produced material)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중간재로 지정되면, 중간재 가치는 역내가치포함 산정에 있어 반영될 수 있다. NAFTA에서는 중간재 가치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까지도 규정하고¹¹⁹⁾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중간재 지정 규정의 도입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재료로 완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와 이들 재료를 다른 독립된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완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혼용된 중간재를 직접 생산하여 완제품에 사용하는 역내생산자에게 있어 유용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④ 추적심사

추적심사(tracing test) 개념에 따르면, 어느 비원산지 재료가 가공된 이후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그 투입이 100% 비원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재료의 가액 및 가공이 여전히 최종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게

be designated by the producer as an intermediate material.

118) 한-칠레 FTA 제4.4조.

119) NAFTA 제402조.

11.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shall be:

- (a)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e producer of the good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at intermediate material; or
- (b) the aggregate of each cost that forms part of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at intermediate material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at intermediate material.

하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추적심사는 통상적으로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제기되며, 상술한 흡수원칙과 정반대로 보일 수 있다. 추적심사개념의 적용을 통해 누적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공은 원산지 부여에 있어 고려가 된다.¹²⁰⁾

추적심사를 도입하고 있는 FTA들로는 EEA협정, 호주-뉴질랜드 FTA, AFTA 등이 있다. 호주-뉴질랜드 FTA에서 추적심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각기 달리 산정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¹²¹⁾

⑤ 불인정 공정

주로 실질적 변형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한다.¹²²⁾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 (insufficient operations)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¹²³⁾

실례로서 한-칠레 FTA에서는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¹²⁴⁾ 미국-요르단 FTA에서도 단순

120) WT/REG/W/45, p.6.

121) WT/REG/W/45, p.26, n.26.

122) OECD, p.166.

123) OECD, p.166.

조립과 포장작업, 물건이나 물질의 특성을 중대하게 변형시키지 않는 물이나 다른 물질에 의한 단순 희석 등이 간략하게 열거되어 있다.¹²⁵⁾ NAFTA¹²⁶⁾ 및 캐나다-칠레 FTA¹²⁷⁾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칠레 FTA와 같이 동 리스트는 원산지규정을 우회할 목적으로 하는 가공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입안된 우회방지 규정(anti-circumvention provision)에 의해 보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¹²⁸⁾ 이에 비해 EFTA나 CEFTA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세한 불인정 공정 또는 공정 작업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¹²⁹⁾ 그러한 불인정 공정에는 수송이나 저장중의 보존 조치, 단순 청결 작업, 분류, 도색, 포장, 표지 붙이기, 조립 또는 동물 도살 등이 포함되어 있다.¹³⁰⁾

5) 특정부문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특칙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이외에 일부 FTA에서는 민감한 특정부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의 특별규칙(sector-specific special rules)을 두고 있다.

124) 한-칠레 FTA 제4.13조.

125) 미국-요르단 FTA 부속서 2.2 제2조.

126) NAFTA 제412조.

127) 캐나다-칠레 FTA 제D-9조-제D-12조.

128) 캐나다-칠레 FTA 제D-12조(Non-Qualifying Operations)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merely by reason of:
.....

(b) any production or pricing practice in respect of which it may be demonstrated, on the basis of a preponderance of evidence, that the object was to circumvent this Chapter.

129) OECD, p.166.

130) OECD, p.166.

이러한 특정부문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특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에 비해 보다 엄격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투입을 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FTA상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당해 FTA의 일반 원산지규정 대신에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부문이 바로 섬유·의류와 자동차 부문이다.¹³¹⁾

먼저 NAFTA의 자동차에 관한 원산지규정 특칙을 살펴보면, 자동차에 대해 최소함량요건(minimum content requirements)의 충족을 요구한다. 지역가치함량(RVC) 기준은 roll-up 원칙을 제외한 부가가치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생산된 자동차 이외의 상품은 세번변경을 이유로 원산지를 획득하게 되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령 자동차 엔진 조립에 있어 당해 엔진의 전체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공제하게 된다. 다른 상품들에 있어 순비용방법에 따른 RVC를 산정하는 경우 NAFTA 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RVC가 요구됨에 비하여 승용차 및 경트럭과 같은 자동차와 엔진 및 트랜스미션과 같은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순비용을 기초로 62.5%의 RVC가 궁극적으로 2002년까지 요구되고, 그 밖의 다른 자동차 상품은 2002년까지 순비용을 기초로 재산정하여 60%가 될 것을 요구한다.¹³²⁾ 참고로 캐나다-미국 FTA에서는 50%의 RVC를 요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NAFTA의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보다 보호주의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131) OECD, p.167.

132) NAFTA 제403조 제5항.

야 할 것이다.¹³³⁾

다음으로 NAFTA는 섬유 및 의류의 자유무역을 위한 원산지 결정에 있어 당해 제품을 동 협정상 역내가치포함 비율(RVC) 요건에 의한 무관세대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¹³⁴⁾ 오히려 이에 대해 가공공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생산요건을 부가한다. 즉, “yarn forward” 요건이라 하여 섬유 및 의류가 NAFTA 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i) 북미산 생사(North American spun yarns)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ii) 북미지역에서 직물을 짜고, (iii) 의류를 재단 및 봉재할 것을 요구한다.¹³⁵⁾ 이는 일종의 3중의 변형(triple transformation)을 요구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다. 또한 면-인조섬유용 생사가 역내산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북미에서 이와 같이 “fiber forward”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NAFTA국가에서 NAFTA산 직물로 제조된 의복이 NAFTA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섬유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저비용의 역외산 수입품이 NAFTA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¹³⁶⁾ 더구나 일련의 연속적인 세번변경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경우 이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여하한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회피하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 역외국가들에 손실을 가져오는 무역전환을 초래하게 된다.¹³⁷⁾ 이 밖에

133) Bhala & Kennedy, p.370.

134) NAFTA 제401조(d).

135) NAFTA 부속서401.1 Section XI, ch.61 n. 2; NAFTA-A Guide to Customs Procedures, US Customs Service(1994), p.16; 김현중, p.104.

136) 참고로 이러한 제한은 NAFTA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직물에 관한 NAFTA 원산지규정은, 캐나다-미국 FTA에서 사용되었던 단지 직전 재료사용만 포함하고 전체 생산 공정은 배제하는 “2중 변형” 테스트 대신에 “3중 변형”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FTA 및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등에서도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유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¹³⁸⁾ 이와 같이 섬유 및 의류에 대해 다른 제품보다 상당히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역내산 재료의 이용을 강력히 억제시킴으로써 역내의 의류 및 섬유제품 생산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⁹⁾ 그러나 이러한 매우 엄격한 특별규정은 최소허용수준원칙에 따라 일정 비율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인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한다.¹⁴⁰⁾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허용수준원칙에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사용함에 비하여 섬유부문에서는 통상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무게를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차이가 있다.

이 밖에 특정부문에 대한 특별규칙을 도입한 FTA를 살펴보면, 멕시코-칠레 FTA에서의 자동차부문, 캐나다-이스라엘 FTA에서의 섬유 및 기계류, AFTA에서의 섬유류 등에 대해 원산지규정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¹⁴¹⁾

한편 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규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는데¹⁴²⁾ 이들 규정간에 공통점은 찾아 보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공산품 부문만큼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다. 가령 특정가공기준을 사용하는 EFTA 및 EC가 제3국과 체결한 FTA와 같이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갖고 있는

137) OECD, pp.166~7.

138) OECD, pp.166~7.

139) Folsom etc., pp.136-137; OECD, p.167.

140) OECD, p.167.

141) WT/REG/W/45, pp.27~28.

142) 예컨대 NAFTA 제701조~제708조, EC-멕시코 FTA 제7조~제10조.

FTA에서는 일부 농산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¹⁴³⁾ 이에 따르면 농산품에 수행되는 어떤 가공이나 공정에 대해서 원산지 지위가 부여될 수 없는 관계로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¹⁴⁴⁾

(3) 주요 FTA 원산지결정규정의 유형별 특징 및 평가

본 항에서는 개별 FTA에서 상술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다양한 기준들이 어떻게 조합, 규정되어 있는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간략히 평가하고자 한다(〈표 III-2〉 참조). 먼저 FTA상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에 관한 규정의 유형은 NAFTA 관련 규정을 따른 NAFTA형과 EC, EFTA 및 중동부유럽 국가들 간에 체결된 FTA상의 관련규정을 가리키는 소위 PANEURO 형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NAFTA에서의 원산지결정 일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 NAFTA 역내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제품 나아가 전적으로 역내산 원자재로 NAFTA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한다. 실질적 변형의 판정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이용하면서 보충적으로 부가가치기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산함량기준(domestic content)[지역가치함량(regional value content : RVC)을 적용하고, 특정가공기준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이와 같이 NAFTA 원산지결정제도에서는 세번변경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이는 원산지결정제도에 있어 상당한

143) OECD, p.167.

144) OECD, p.167.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다.¹⁴⁵⁾ 반면에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가격방법사용시 지역가치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상품의 순비용방법 사용시 50% 이상이어야만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FTA에서의 비율보다 매우 높다. 다만, NAFTA에서는 상술한 일반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의 하나로서 비NAFTA산 원자재를 상품거래가액 대비 7% 미만 사용한 상품은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최소허용수준 예외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소위 PANEURO형 FTA에서는 이들 지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의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제품에 원산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러한 특정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 수행되는 가공 및 제조 리스트에 기초하여 이를 판정하는 특정가공공정기준의 이용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이 특정가공기준의 광범위한 이용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방식의 선택을 매우 제약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제품이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요건들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서 그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다.¹⁴⁶⁾ 또한 일반기준에 대한 보충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소허용수준과 관련 공장도가격 대비 10% 기준을 적용하고, 섬유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의 최대무게를 10%까지 허용하고,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공장도가격 8% 기준을 적용한다.

145) OECD, p.165.

146) OECD, p.165.

〈표 III-1〉 주요 FTA에서의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규정의 유형

해당 FTA	일반기준 1: 완전생산 기준		일반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일반기준에 대한 보충: 최소허용수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예외	특정가공·공정기준	예외	허용기준(가액의 %)	예외
NAFTA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자동차: 보다 높은 RVC 요건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f.o.b.기준 조정된 거래가격의 7%	섬유, 농산물 등
멕시코-칠레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일정 경우 ¹⁾ : 순비용방법의 사용만 허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f.o.b.기준 조정된 거래가격의 8%	섬유제외 등
한-칠레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조정된 거래가격의 8%	
캐나다-칠레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자동차: 보다 높은 RVC 요건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f.o.b.기준 조정된 거래가격의 9%	섬유, 농산물 등
미국-싱가포르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조정된 거래가격의 10%	
일본-싱가포르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부속서 각항에서 품목별로 규정	
EFTA-싱가포르	주된 방법으로 적용	적용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BC-멕시코	적용	보충적 적용		이용 빈도가 높음		공정도가격의 10%	섬유: 8%
PANAMA형	적용	보충적 적용		이용 빈도가 높음		공정도가격의 10%	섬유 (10~8%)
호주-뉴질랜드	적용	비적용		적용		거래가격의 2%(승인 요함)	
AFTA	적용 ²⁾	비적용		적용	섬유에 있어 있어 대제기준	없음	

주: 1) AFTA에서는 일정한 제품목록에 기초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함.

2) 일정 경우라 함은 누적규정의 이용, 관계자어의 판매, 중간재인 상품 등에 있어 RVC를 계산하는 경우를 가리킴.

다음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중 하나인 부가가치[백분율(percentage)]기준에 관한 FTA상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하나는 NAFTA, 멕시코-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 한-칠레 FTA, 미국-칠레 FTA, 호주-뉴질랜드 FTA 등에서는 내국산함량(domestic content : DC)[역내가치함량(RVC)]이 사용되고, 계산방법으로 순비용방법의 사용시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50%까지를 규정하고, f.o.b. 거래가격방법 사용시 낮게는 35%에서 높게는 60%까지를 규정한다. 이에 비해 PANEURO형 FTA 및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수입산함량(import content)과 부품가치(value of parts)를 적용하고, 계산방법으로는 공장도가격을 적용하는데 수입산함량의 비율은 30~50%를 적용한다.

〈표 III-2〉 주요 FTA 원산지규정상 부가가치기준 규정의 유형

해당 FTA	부가가치기준 및 제한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법		
	수입산함량 (import content)	내국산함량(domestic content):역내가치함량(RVC)	부품가치	거래가격방법	순비용방법	공장도가격
NAFTA	적용없음	60% 또는 50%	적용없음	60%	50%	
멕시코-칠레	적용없음	50% 또는 40%	적용없음	50%	40%	
한-칠레	적용없음	45% 또는 30%	적용없음	45% ¹⁾	30% ²⁾	
	적용없음	35% 또는 25%	적용없음	35%	25%	
호주-뉴질랜드	적용없음	50%	적용없음		생산비 + 일부 인건·제조비	
EC-멕시코	50%, 40%, 30% 등	적용없음	적용			적용
PANEURO형	50%, 40%, 30% 등	적용없음	적용			적용
AFTA	60%	적용없음	적용없음	60%		

주 : 1) 이는 엄밀히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조정가격을 의미하며, 공제법(build-down method)이라고도 함.

2) 이는 직접법(build-up method)이라고도 함.

이 밖에 원산지결정의 중요한 보충기준의 하나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누적규정과 관련하여 NAFTA에서는 양자간 누적규정을 두고, 중간재에 적용되는 roll up원칙[흡수원칙]을 규정하며, 불인정 공정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 밖에 NAFTA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순비용방법 사용 자동차부품의 경우 62.5% 이상, 자동차의 경우 60% 이상을 요구하여 다른 상품에 비해 10% 이상 높은 지역가치함량을 요구하고 있어 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도 3중 변형 등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요구하여, 비역내산 재료의 사용을 억제시킴으로써 역외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PANEURO형 FTA 등에서는 원산지의 누적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양자간, 완전누적은 물론 유사누적까지를 규정하여 범유럽형원산지누적제도(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 of origin)를 확립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유럽형 원산지누적제도는 일단 어느 제품이 “유럽원산지”(European origin)를 부여받게 되면 다시는 원산지를 검증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입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설비를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많은 재량을 갖게 되어 생산자 및 무역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¹⁴⁷⁾

한편 NAFTA와 EC의 원산지규정은 각기 주변의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지역무역협정들의 원산지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147) WT/REG/W/45, p.18.

〈표 III-3〉 주요 FTA 원산지규정상 누적규정의 유형

해당 FTA	누적규정의 형태			누적 적용을 위한 공정요건	중간재에 대한 흡수원칙	추적 심사
	양자간 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NAFTA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제한없음	자동차를 제외하고 적용	
멕시코-칠레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제한없음	적용	
한-칠레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제한없음	적용	
캐나다-칠레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제한없음	적용	
일본-싱가포르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제한없음		
EC-멕시코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명목적 공정 이상을 요구	적용	
AFTA	적용	적용없음	적용없음	규정없음	적용없음	적용 ²⁾
호주-뉴질랜드	적용	적용	적용없음	제한없음	적용 ¹⁾	적용 ¹⁾
PANEURO형중 EEA	적용	적용	적용	명목적 공정 이상을 요구; 완전누적의 경우 제한없음	적용	적용
기타 PANEURO형	적용	적용없음	적용	명목적 공정 이상을 요구	적용	

주 : 1) 명목적 공정을 제외한 최종제조공정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행해지지 않은 경우 흡수원칙 및 추적심사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투입 물은 100% 수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WT/REG/W/45, pp. 25~26.
 2) 완전누적없이 적용되는 추적심사는 흡수원칙의 결여를 보상해 줄 수 있다. Id., p.27.

가령 NAFTA의 경우 캐나다-칠레 FTA 등의 관련 규정의 모델이 되었고, EC 역시 EFTA, CEFTA 및 EC가 제3국들과 체결한 FTA의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 공공정기준을 사용하되 후자의 경우 최종제조공정이 호주나 뉴질랜드중 하나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AFTA에서

도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사용하되, 후자의 경우 최종제조공정이 ASEAN 회원 수출국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미국-요르단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한다.¹⁴⁸⁾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먼저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면, 첫째, 무엇보다 FTA 체결에 따른 역외 제품의 우회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원산지규정 자체 및 그 운용이 수출입업자들에게 부담스런 절차로 작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투명하고, 단순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할 것, 셋째, 국내취약산업 및 품목에 있어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가능한 FTA 체결에 따른 역내 교역 및 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다음으로 상술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의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에 따른 특혜무역대우를 받을 자격의 유무는 당해 협정상 원산지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관계로 FTA에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이 포함된 원산지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FTA 당사국들은 당해 FTA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그러한 무역특혜대우가 유출되는 것¹⁴⁹⁾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언하면 역외국가들로

148) WT/REG/W/45, p.23; OECD, p.165.

149) 이를 가리켜 trade deflection이라고도 한다.

부터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이 포함된 원산지규정을 두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기준상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높이거나 불인정공정 리스트나 캐나다-칠레 FTA의 우회방지규정의 도입 등이 유용할 수 있다.

둘째, WTO 지역조항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해 달리 규제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통일적인 특혜원산지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FTA 협상국들은 원산지규정의 입안에 있어 사실상 전적인 재량을 누린다. 이 점에서 향후 우리가 추진하는 FTA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 이유는 원산지규정의 요체인 원산지결정에 관한 규정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FTA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의 원산지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체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보면, 세번변경기준을 기초로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이용하는 NAFTA형과 세번변경기준과 원산지의 누적규정을 주로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특수가공공정기준도 많이 이용하는 PANEURO형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원산지규정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우리에게 적합한 단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주요한 원산지결정기준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은 제품별로 적용되는데 가령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면 얼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한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한

다면 어떤 공정을 특정할 것인지는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협상에서는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품목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색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넷째,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과 비교할 때 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특정가공공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방식 및 공정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해서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번변경기준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을 도입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만큼 역내무역의 창출이 기대된다. 따라서 최소허용수준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소허용수준의 기준은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해서는 낮은 것이 유리하겠지만 원자재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해외부품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있어서는 이를 10% 수준까지 높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NAFTA형을 따를 경우 역내가치함량(RVC) 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협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높게 규정할 경우 역내 생산자가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 역내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생산자로서는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내가치포함 비율은 우리나라 완제품에 있어 부품의 전반적인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되, 상술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한-칠레 FTA에서와 같은 중간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방법에는 거래가격방법과 순비용방법이 있는데 前者는 계산이 편리한 반면에 관계자간의 거래시 왜곡 가능성이 있고, 後者는 그러한 단점이 없는 대신에 계산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에서 계산방법은 양자의 방법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FTA 규정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일곱째,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 특별규칙은 일반 원산지규정에 비해 원산지 부여가 보다 까다롭고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 특별규칙은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입에 민감한 분야 및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서 수입에의 민감도는 당해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협상국과의 관계에서 원산지규정 특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품목의 존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FTA의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수입에 매우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 관세철폐 협상시

양허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점진적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FTA 협상국과의 관계에서 특별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품목의 존재를 조사,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FTA 원산지규정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¹⁵⁰⁾ 투자와 관련하여 원산지규정의 활용 가치는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점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북미 및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특히 PANEURO형에서 많이 이용되는 누적규정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우리 기업 및 무역업자들은 투입재료의 사용이나 생산설비의 투자국의 판단에 있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원산지규정 협상에 있어 우리 산업, 무역 및 투자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 규정을 입안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규정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기 쉽다.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서 행정 및 운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기업들 역시 규정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¹⁵¹⁾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역종사자들에게 있어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서 무역에 불가피한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¹⁵²⁾ FTA 원산지규정 입안 협상에 있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150) WT/REG/W/45, p.3, n.7.

151) WT/REG/W/45, p.3.

152) WT/REG/W/45, p.3.

점에서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및 무역 등への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 및 품목들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기준 중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장점을 가진 세번변경기준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제IV장

비관세조치 : 표준관련조치와 위생·검역조치

1. 비관세조치의 의의

전후 GATT의 교섭 당시만 하여도 국제무역의 가장 큰 장애로 고율의 관세와 수량제한이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이들 두 가지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점진적이기는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조치 즉, 非關稅措置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점차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장애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비관세조치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¹⁵³⁾

여기서 이와 같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비관세조치들을 가리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라고 하는바, 여기에는 기술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였고 정부조달절차 등에서도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153) Long, p.25.

러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되는바, 보호목적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곧 수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무역규범 역시 보호주의적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역내회원국들간의 상품무역에 있어 제한적인 통상규제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규제하기 마련인바, 본 항에서는 기술규정 및 표준과 농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중심으로 주요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기술규정 및 표준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의미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이라 하면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물품의 특성 또는 그 관련 공정 및 제조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가리킨다.¹⁵⁴⁾ 다음으로 표준(standard)이라 하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물품에 관한 규칙, 지침이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제조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준수가 강제적은 아니지만

154)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부속서 1 제1항.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문서를 의미한다.¹⁵⁵⁾ 여기서 양자간의 중요한 차이는 기술규정이 강제적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표준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이다.¹⁵⁶⁾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현대사회에 있어 기술규정은 필수적인 것인바, 이는 기술규정이 인간 및 동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품질, 純度,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안보상의 이유 그리고 詐僞的 慣行의 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가가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自律性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표준제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¹⁵⁷⁾ 이는 수많은 공산품의 수출에 있어 이들 제품이 수입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국마다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정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들간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다르거나 한 국가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 다른

155)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부속서 1 제2항.

156) 이는 기술규정의 權原(authority)이 통상 정부에서 비롯되는 것인 반면 표준의 權原은 "공인된 기관"(a recognized body)의 승인(approval)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E.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이하 'McGovern'), Globefield Press, 1995, p.7.21-1.

157) McGovern, pp.7.21-3~7.21-4.

경우, 복잡하고 상세한 관련 요건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특히 외국생산자들에 대해 제조공정 등을 적용시킬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규정의 빈번한 변경이나 심지어 수입품을 차별하기 위하여 규정, 검사나 檢定制를 조작하는 경우 등은 국제무역을 왜곡시키거나 무역 자체를 중단시킬 우려가 있다.¹⁵⁸⁾ 이 점에서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소위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이라 하여 수입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극복을 위한 방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완화 내지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다.

① GATT/WTO 기술관련 규정

먼저 지난 GATT에서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서 비롯된 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하여 Tokyo Round 결과 “1979년 GAT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GATT 표준규약’(GATT Standards Code)]을 채택하였으나 동 규약 가입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Uruguay Round에서 WTO협정의 부속서중 하나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158) Jackson etc., pp.538~539.

WTO TBT협정에서는 (i) 기술규정과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ii)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성 평가 절차(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들 기술규정과 표준 및 이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TBT협정은 농산물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WTO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조달기관이 정한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역시 TBT협정이 아닌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도입

다음으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의 체결을 통해 당사국들이 다른 당사국의 상이한 표준 및 인증 제도를 상호간에 인정해 줌으로써 그러한 기술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당사국들간에 기술표준 및 인정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술 및 인증기관의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간에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체결되었다.

③ 국제표준 및 규칙의 도입

국제표준화기구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써 각국의 상이한 표준 및 규칙을 일치 내지 통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기술격차 등으로 인해 보편적 적용이 매우 어렵고, 그러한 국제통일 역시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성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주요 FTA의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

앞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의 무역장벽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다수의 FTA에서는 WTO TBT협정과 같이 각 당사국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과 적합판정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체결된 FTA에서는 당사국의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과 이의 적합성판정 절차가 당사국들간의 무역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체로 WTO TBT협정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FTA의 표준조치 관련 규정들간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바, 사실상 TBT협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WTO TBT 준용형’과 TBT협정을 기초로 하되 당사국의 관련된 권리 및 의무에 있어 변경을 가져 오는 규정을 포함하는 ‘WTO TBT 플러스형’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싱가포르 FTA나 호주-뉴질랜드 FTA 등에서는 당사국들 상호간에 기술 및 표준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당사국간 상이한 기술 및 표준과 적합성 판

정절차에 따른 무역장벽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들 FTA상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은 당해 당사국들간에 있어 일종의 부대 MRA 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이 점에서 이들 FTA의 관련 규정을 가리켜 ‘상호인정규정 도입형’이라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前者의 WTO TBT 준용형이나 WTO TBT 플러스형은 당해 FTA에서의 기술 및 표준조치 자체에 관한 규정인 반면에 後者の 상호인정규정 도입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기술 및 표준조치에 관한 규율을 대신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점에서 본 항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들 규정 모두 당사국들간 기술 및 표준조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FTA에 있어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의 유형간 비교에서는 이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1) WTO TBT협정 준용형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WTO TBT협정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¹⁵⁹⁾ 단지 당사국들이 이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¹⁶⁰⁾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확대하

159)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3조 (Technical Regulations)

1.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60)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3조

2.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with a view to increasing

도록 하며,¹⁶¹⁾ 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갖도록 하는¹⁶²⁾ 등의 일반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 밖에 달리 실체적인 추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EFTA국가-싱가포르 FTA는 사실상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WTO TBT협정을 적용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서 WTO TBT협정 준용형이라 할 수 있다.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WTO TBT협정을 적용하고,¹⁶³⁾ TBT 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고 규정하면서,¹⁶⁴⁾ 다만 이 분야에 있어 당사국들간의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부수 규정¹⁶⁵⁾을 두고 있다.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and facilitating access to their respective markets. To this end, they shall in particular co-operate in:

- (a) reinforc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technical regulations including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b) promoting the accredit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n the basis of relevant ISO/IEC Standards and Guides; and
- (c) promoting the mutual accep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results of the above bodies which have been recognised under an appropriate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ir respective accreditation systems or bodies.

161)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3조 3항.

162)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3조 4항.

163)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9조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1. This Article applies to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s defined in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ereinafter "the TBT Agreement")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rade in products. It does not apply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are covered by Article 20 of this Decision.

164)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9조.

2. The Parties con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under the TBT Agreement.

165)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9조 3항-7항.

2) WTO TBT협정 플러스형

한-칠레 FTA에서는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항들에 더하여 제9장(표준관련조치)에 규정된 조항들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¹⁶⁶⁾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WTO TBT협정과 별도로 당사국들간에는 당해 FTA 제8장[표준관련 조치]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¹⁶⁷⁾ 관련 규정은 TBT협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동 협정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WTO TBT협정에 정의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한다.¹⁶⁸⁾ 이 밖에 NAFTA의 경우 WTO 출범 이전에 채택되었지만, 그 체제 및 내용에 있어 TBT협정과 매우 유사하다.¹⁶⁹⁾ 즉, NAFTA 제9장[표준관련 조치]에서는 당사국이 1979년 GATT 표준규약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가 모두 가입한 국제협정 특히 환경보존협정에 의거한 표준관련 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상호 인정한다고 규정한다.¹⁷⁰⁾ 요컨대 이들 FTA에서는 당사국들간의 상이한 표준을 통일하고자 강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사국들의 표준을 일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단지 NAFTA 등에서는 당사국간의 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166) 한-칠레 FTA 제9.2조.

167) 칠레-멕시코 FTA Article 8-02

A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e TBT Agreement, the Parti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168) 미국-싱가포르 FTA 제6.1조.

169) 이는 NAFTA와 Uruguay Round TBT협정이 동일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협상 대표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Michael J. Trebilcock and Robert Howse,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Routledge, 1999, p.147, n. 72.

170) NAFTA 제903조.

국의 표준관련 조치를 가능한 한 일치하게 하고,¹⁷¹⁾ 나아가 자국의 특정 표준이나 적합성절차와 다른 당사국의 그것과의 양립성(compatibility)을 증진시켜야 한다고¹⁷²⁾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간 표준이 양립되도록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NAFTA에서는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이 당사국들간의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조치에 대해서 확대, 적용됨을 명시하고¹⁷³⁾ 있음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표준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조치의 시행 및 준수를 확보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⁷⁴⁾ NAFTA에서도 각 당사국이 표준관련 조치 및 이의 집행이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고,¹⁷⁵⁾ 또한 각 당사국은 안전이나 인간·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환경 또는 소비자의 보호 등과 같은 자국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호의 수준을 확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¹⁷⁶⁾ 칠레-멕시코 FTA에서도 거의 동일한

171) NAFTA 제906조 제2항.

172) NAFTA 제906조 제3항.

173) NAFTA 제901조 1항.

174) 한-칠레 FTA 제9.4조.

175) NAFTA 제904조 제1항 1문.

Right to Take Standards-Related Measures

1. Each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dopt, maintain or apply any standards-related measure, including any such measure relating to safety,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environment or consumers, and any measure to ensure its enforcement or implementation.

176) NAFTA 제904조 제2항. Right to Establish Level of Protecti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each Party may, in pursuing its legitimate objectives of safety or the protection of human,

규정을 두고 있다.¹⁷⁷⁾ 이와 관련 NAFTA에서는 당사국이 표준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당해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다른 당사국 상품의 수입 이외에 다른 당사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¹⁷⁸⁾ 조치의 적용대상을 서비스의 공급까지 확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FTA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권리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관계로 이들 FTA에서는 당사국에 대해 다양한 의무 및 제한을 부과한다. 첫째, 한-칠레 FTA의 경우 표준관련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는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⁷⁹⁾ 또한 NAFTA¹⁸⁰⁾ 및 칠레-멕시코 FTA¹⁸¹⁾에서는 표준조치 관련 의무의 적용범위를 다른 당사국의 상품 이외에 서비스공급자까지 확대하여 규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he environment or consumers, establish the levels of protec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07(2).

177) 칠레-멕시코 FTA 제8-04조, 1항.

1. Each Party may, in pursuing its legitimate objectives, establish the levels of protection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and may develop, adopt, apply or maintain any standards-related measure to ensure fulfilment of its legitimate objectives, and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and compliance with standards-related measures, including approval procedures.

178) NAFTA 제904조제1항 2문.

1. Such measures include those to prohibit the importation of a good of another Party or the provision of a service by a service provider of another Party that fails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ose measures or to complete the Party's approval procedures.

179) 한-칠레 FTA 제9.4조 3항.

180) NAFTA 제904조 3항.

181) 칠레-멕시코 FTA 제8-04조.

3. With respect to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accord the goods and service providers of the other Party national treatment an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similar goods and service providers of a non-Party country.

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이와 관련 NAFTA 및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州나 지방 정부 또는 비정부 간 표준기관에 대해서도 상기한 원칙 및 그 밖의 협정상 표준 관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¹⁸²⁾

둘째, NAFTA, 칠레-멕시코 FTA 및 한-칠레 FTA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의도된 어떠한 표준관련 조치도 준비, 채택, 유지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¹⁸³⁾ 그런데 이와 관련 한-칠레 FTA 및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표준관련 조치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i) 당해 표준관련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ii) 당해 조치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iii) 당해 조치가 정당한 목적에 합당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을 배제하기 위해 운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¹⁸⁴⁾ 이에 비해 NAFTA에서는 불필요한 장애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상술한 3가지 사유중 두 번째 사유인 국제표준의 준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182) NAFTA 제902조 제2항 ; 칠레-멕시코 제8-04조 2항.

183) NAFTA 제904조 제4항 ; 칠레-멕시코 제8-04조 4항; 한국-칠레 FTA 제9.4조 4항.

184) 한-칠레 FTA 제9.4조 4항.

칠레-멕시코 FTA 제8-04조 4항.

4. No Party may prepare, adopt, maintain or apply any standards-related measure with a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To that end, standards-related measures shall not restrict trade more than is necessary to fulfil a legitimate obj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risks that not fulfilling it would create.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shall not be deemed to be created where:

- (a) the demonstrable purpose of the measure is to achieve a legitimate objective;
- (b) it conforms to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 (c) the measure does not operate to exclude goods of the other Party that meet that legitimate objective.

않음¹⁸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TBT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이 동 협정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고, 관련 국제표준을 따를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¹⁸⁶⁾ 여기서 정당한 목적에 의한 합치 추정의 범위에 있어 TBT협정은 반박가능성(rebuttably)을 열어 두고 있음에 비하여 NAFTA, 한-칠레 FTA 및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반박가능성에 대해 달리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들 FTA가 TBT협정에 비해 다양한 표준조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¹⁸⁷⁾

그런데 불필요한 장애 규정과 관련하여 TBT협정의 경우 기술규정의 채택에 있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in a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처리할 것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¹⁸⁸⁾에 비하여 NAFTA 및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에 한-칠레 FTA에서

185) NAFTA 제904조 4항(Unnecessary Obstacles)

4. No Party may prepare, adopt, maintain or apply any standards-related measure with a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between the Parties. An unnecessary obstacle to trade shall not be deemed to be created where:

(a) the demonstrable purpose of the measure is to achieve a legitimate objective; and
(b) the measure does not operate to exclude goods of another Party that meet that legitimate objective.

186) TBT협정 제2.5조.

2.5. …… Whenever a technical regulation is prepared, adopted or applied for one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explicitly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i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t shall be rebuttably presumed not to create an unnecessary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

187) Trebilcock & Howse, p.148.

188) TBT협정 제2.3조.

는 표준관련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¹⁸⁹⁾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TBT협정 및 한-칠레 FTA에서 표준관련 조치의 도입에 있어 그만큼 당사국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들 FTA에서의 표준관련 조치규정은 그러한 조치가 당사국들간에 있어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치는 당해 표준관련 조치가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s)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NAFTA의 경우 그러한 정당한 목적으로 안전,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환경 또는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적절한 경우) 기본적인 기후나 그 밖의 지리적 요소들, 기술적이거나 기간시설상의 요소들 또는 과학적 근거 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¹⁹⁰⁾ 나아가 당사국은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위해성평가”(assessment of risk)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나 기술정보, 의도된 최종 용도, 공정이나 생산방법 또는 환경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⁹¹⁾ 그러한 위해성평가는 당사국이 적절한 국내표준 보호 수준을 수립한 경우 더욱 촉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보호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회원국의

189) 한-칠레 FTA 제9.4조 4항 2문.

190) NAFTA 제915조.

191) NAFTA 제907.1조.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초래하거나, NAFTA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고 또는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부과하고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간에 차별을 하는 그러한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구별(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을 해서도 아니된다.¹⁹²⁾ 요컨대 NAFTA의 표준조치규정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제품 또는 서비스 표준을 수립함에 있어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가 상술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만, 동시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요구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구별의 제한을 통해 당사국의 국내 표준이 역내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칠레 FTA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목적을 국가 안보 요건, 사기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다.¹⁹³⁾ 이는 TBT협정의 관련 조문의 문구¹⁹⁴⁾를 수용하면서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그만큼 당사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이 다르다. 다만, NAFTA, 칠레-멕시코 FTA 및 TBT협정과 달리 한-칠레 FTA에서는 표준관련 조치는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¹⁹⁵⁾ 위해성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특이하다.

192) NAFTA 제907.2조.

193) 한-칠레 FTA 제9.1조.

194) TBT협정 제2.2조.

195) 한-칠레 FTA 제9.4조 4항 2문.

(3) 상호인정규정 도입 FTA

한편 일본-싱가포르 FTA 제6장에서는 표준조치 관련 규정 대신에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행한 인증 및 적합성마크를 포함하여 관련 부문별 부속서에서 특정된 당해 당사국의 적용법령상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⁹⁶⁾ 이로써 각 당사국의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인증 결과에 대해 다른 당사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약속함으로써 추가의 적합성 평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FTA상 상호인정 규정을 통해 당사국들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상호인정의 시행을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취소 내지 정지시킬 권한을 지정기관(Designating Authorities)에 부여하며,¹⁹⁷⁾ 각 당사국은 감시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이 법령상 규정된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¹⁹⁸⁾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한 관련 부문별 부속서에 특정된 법령에 규정된 지정 기준의 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¹⁹⁹⁾ 또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다.²⁰⁰⁾ 이 밖

196) 일본-싱가포르 FTA Article 46 (General Obligations)

Each Party shall accep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required by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at Party specified in the relevant Sectoral Annex, including certificates and marks of conformity, that are conducted by the registered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f the other Party.

197) 일본-싱가포르 FTA 제47조-제48조(지정기관).

198) 일본-싱가포르 FTA 제49조(Verification and Monitoring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199) 일본-싱가포르 FTA 제51조(Contestation).

〈표 IV-1〉 주요 FTA에 있어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WTO TBT협정 준용형	EFTA국가-싱가포르(제13조)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제19조)	
WTO TBT협정 플러스형	한-칠레(제9장) NAFTA(제9장) 칠레-멕시코(제8장) 미국-싱가포르(제6조)	NAFTA,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표준관련 의무의 적용범위를 다른 당사국의 상품 이외에 서비스공급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방정부 및 비정부간표준기구에 대해서도 준수하도록 함
상호인정 규정 도입형	일본-싱가포르 FTA(제6장) 호주-뉴질랜드 FTA 보충문서 : “호주-뉴질랜드간 TBT 양해각서”에서 상호인정 및 통일에 관해 규정	호주-뉴질랜드 FTA에는 표준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 없음

에 당사국들간의 상호인정의 운영을 둘러싼 제반 사안을 다루도록 상호인정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Mutual Recognition)를 구성한다.²⁰¹⁾

다음으로 호주-뉴질랜드 FTA의 경우 협정문에서 표준관련 조치에 달리 언급이 없고, 대신에 별도의 “호주-뉴질랜드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양해각서”(MOU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라는 별도의 보충문서를 통해 당사국들간 표준의 상호인정 및 통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통일과 인증의 상호인정은 물론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의 감시와 인증에 대한 당사국들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²⁰²⁾

200) 일본-싱가포르 FTA 제53조(Registr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201) 일본-싱가포르 FTA 제52조.

202) The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An Australia-USA Free Trade Agreement:

(4) 주요 FTA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간 비교 평가

FTA에서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FTA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에 대한 권리가 FTA에 따른 자유무역의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FTA의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의 유형을 보면, WTO TBT협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FTA와 TBT협정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되 추가로 독자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FTA로 대별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부 FTA에서는 기술 및 표준조치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당사국간에 상호인정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먼저 기술 및 표준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들 두 가지 유형의 FTA 관련 규정을 보면 대체로 전자의 WTO TBT협정 준용형에서는 당사국이 채택한 기술규정에 대한 반박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 표준관련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지어서는 아니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WTO TBT협정 플러스형 중 다수의 FTA에서는 상응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후자의 WTO TBT협정 플러스형에 비하여 당사국에 의한 표준관련 조치의 운영에 있어 재량을 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WTO TBT협정 플러스형에 속한 FTA라 할지라도 일부 규정은 WTO TBT협정 준용형에 상응하는 남용 견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한-칠

〈표 IV-2〉 주요 FTA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유형별 FTA 당사국의
관련조치 도입에 있어 재량 여지 비교

	← 당사국의 재량 여지 적음	당사국의 재량 여지 많음 →
상호인정규정 도입형 (일본-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FTA 보 충문서)	WTO TBT협정 준용형 (EFTA국가- 싱가포르;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또는 WTO TBT협정 플러스 형에 속한 FTA중 일부 규정	WTO TBT협정 플러스형 에 속한 FTA 관련 규정 중 다수
	·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채택되고, 국제표준에 따른 경우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간주하지 않으나 반박가능하다고 규정 (TBT협정 제2.5조)	NAFTA, 한-칠레, 칠레-멕시코 등에서는 반박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음
	· 표준관련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될 것(한-칠레 제9.4조 4항 2문)	NAFTA, 칠레-멕시코 FTA 등에서는 좌측의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 기술규정의 채택에 있어 보다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TBT협정 제2.3조)	
		· 정당한 목적의 사유중 TBT협정상 사유 이외에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한-칠레)

레 FTA에서는 표준관련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반면에 한-칠레 FTA에서는 정당한 목적의 사유중 TBT협정에는 규정된 사유 이외에 표준관련조치위원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조치의 운용에 있어 그만큼 당사국들에 의한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WTO TBT협정 플러스형에 속한 FTA의 경우 기술관련 규정안에 당사국의 재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완화하는 규정이 혼재하여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드물지만 FTA에서 기술 및 표준조치규정 대신에 상호인정규정을 도입할 경우 당사국에 의한 기술관련 규정의 운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게 되어, 당사국들간에 있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사실상 제거되는 결과가 된다.

(5) 정책적 시사점

먼저 세계 각국은 안전·건강·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공산품에 대해 각기 독자적인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요구한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용 상품에 소요되는 국내 기초 부품들이 해외규격인증을 받지 못해 부득이 수입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수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은 수출기업이 수입국에 있어 규제 승인의 획득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제반 경비 및 시간상의 지체 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한 제품가격의 인하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추가의 적합성평가절차 없이 당해 외국시장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어 그만큼 무역거래에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주고, 나아가 국산제품의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 줌으로써 수입국 시장에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을 상대로 MR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기준과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FTA 기술규정 협상을 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 협상 의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흥정(bargaining)이 오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일본-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상호인정규정을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 여기에서는 FTA 협상 당사국이 발급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 등 일체를 협상 당사국들간에 상호 인정해 주도록 하는 상호인정협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위해 FTA 협상국과의 기술규정 협상에 앞서 상호인정의 도입 실익이 큰 공산품목의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선진국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상호인정 규정도 도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의 도입 및 운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가급적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는 WTO TBT협정 준용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WTO TBT협정의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 도입도 유익하리라고 본다.

이 밖에 개도국들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WTO TBT 플러스형의 채택이 무난하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협상 상대국의 기술기준 및 인증절차의 운영과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의 구성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WTO TBT 준용형이나 상호인정규정 도입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위생 및 검역조치

(1)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UR 협상 당시 참가국들은 농산물에 관한 기술규정이 무역장벽화함으로써 농업협정에 의해 달성된 자유화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WTO 농업협정과는 별도로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이하 ‘SPS협정’)을 채택하였는바, 동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검역조치에 적용된다.²⁰³⁾ 동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위생 및 검역조치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특히 위생 및 검역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로 작용하지 않게

203) WTO SPS협정 제1조 제1항.

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²⁰⁴⁾ 또한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검역조치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할 것을 요구받지만,²⁰⁵⁾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관련 국제기준이나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해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SPS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⁰⁶⁾

(2) 주요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유형

1) WTO SPS협정 준용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이하 ‘SPS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협력할 것과 WTO SPS협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²⁰⁷⁾ SPS조치의 적용에 있어 SPS협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도 당사국은 SPS조치를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것과 부당하게 무역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 어떠한 신규 조치도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204) WTO SPS협정 제2조.

205) WTO SPS협정 제3조 제1항.

206) WTO SPS협정 제3조 제3항.

207)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20조(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area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ating trade. The Parties reaf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set out in the WTO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하면서 WTO SPS협정은 당해 FTA에 수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²⁰⁸⁾ SPS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칠레 FTA 제8장에서는 동 장의 규정이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각 당사국은 WTO SPS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상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도 채택, 유지 또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⁰⁹⁾ 그리고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²¹⁰⁾ 또한 한-칠레 FTA에서는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또는 SPS협정 제5조에 따라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을 제공한 결과로서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과는 다른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²¹¹⁾ 이는 WTO SPS협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칠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이 취한 SPS조치

208)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2조(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Parties shall apply their regulations i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atter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and shall not introduce any new measures that have the effect of unduly obstructing trade.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is hereby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209) 한-칠레 FTA 제8.2조 1항.

210) 한-칠레 FTA 제8.3조.

211) 한-칠레 FTA 제8.5조 2항.

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어서는 아니되고,²¹²⁾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도 아니되며, 자국 상품과 타방 당사국 상품간에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²¹³⁾ 이밖에 각 당사국의 SPS조치가 국제기준에 기초하도록 할 것,²¹⁴⁾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것,²¹⁵⁾ 각 당사국의 SPS조치가 위해성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할 것과 위험을 평가하고 SPS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와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²¹⁶⁾ 또한 각 당사국은 SPS조치의 변경 및 변동사항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²¹⁷⁾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싱가포르 FTA의 경우 단지 前文에서 당사국들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상 장애를 제거 내지 감축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기로 하자는 약속을 선언할 뿐 달리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SPS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들 FTA 당사국들은 모두 WTO 회원인 관계로 각 당사국의 SPS조치 분야에 있어 SPS 협정이 적용된다.

212) 한-칠레 FTA 제8.4조 나항.

213) 한-칠레 FTA 제8.4조 가항, 다항.

214) 한-칠레 FTA 제8.5조 1항.

215) 한-칠레 FTA 제8.6조.

216) 한-칠레 FTA 제8.7조.

217) 한-칠레 FTA 제8.10조.

2) NAFTA형

NAFTA는 WTO SPS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채택되어, 당사국들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규정에 있어 SPS협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당사국의 SPS조치를 취할 권리와 관련하여 NAFTA 제7장 B절[식품에 대한 건강기준] 규정은 당사국들간의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검역조치에 적용된다면서²¹⁸⁾ 각 당사국은 상품표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그리고 독소와 같은 식품 오염물질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SPS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데, 동 조치에는 국제표준보다 더 엄격한 당사국의 SPS조치까지도 포함된다²¹⁹⁾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각기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확립할 권리를 가진다고²²⁰⁾ 규정함으로써 NAFTA 당

218) NAFTA 제709조. 단, NAFTA 제301조(내국민대우)와 제309조(수출입제한) 그리고 제2101조(1)항에 수용된 GATT 제20조(b)항의 규정(일반적 예외) 등은 SPS조치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규정한다. NAFTA 제710조.

219) NAFTA 제712조 제1항 및 제724조.

제712조(Basic Rights and Obligations)

Right to Tak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Each Party ma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dopt, maintain or apply any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n its territory, including a measure more stringent than an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220) NAFTA 제712조

Right to Establish Level of Protection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ection, each Party may, in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establish its appropriate

사국은 식품첨가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자국의 검사 및 허가절차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한다.²²¹⁾

다음으로 상술한 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국제기준보다도 엄격한 SPS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 FTA 당사국의 SPS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농산품과 식품은 이들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FTA에서는 당사국의 SPS조치를 적용할 권리의 행사에 있어 남용 가능성을 방지 내지 제한할 목적으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 NA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SPS조치가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의 지속을 위한 어떠한 과학적 기초가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위해성평가²²²⁾에 기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²²³⁾ 또한 NAFTA는 그러한 위해성평가의 수행에 있어 국제표준화기구가 개발한 평가기법 및 방법론을 고려할 것과 관련 과학적 증거를 고려할 것 등을 요구한다.²²⁴⁾ 둘째, 각 당사국은 자국의 SPS조치가 자국의 상품과 다른 당사국 상품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하며, 당사국들간의 무역에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²²⁵⁾ 셋째, NAFTA는 각 당사

levels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5.

221) 가령 미국은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계속 금지할 것이다. 21 U.S.C. §360(b).

222) 여기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해충이나 질병의 가능성, 이와 연관된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 또는 식품내 첨가물이나 오염물질의 존재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 또는 생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NAFTA 제724조.

223) NAFTA 제712조 제3항.

224) NAFTA 제715조 제1항.

225) NAFTA 제712조 제4-6항.

국의 SPS조치의 기초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이용하도록 한다.²²⁶⁾ 넷째, 당사국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각국의 SPS조치의 동등성(equivalence)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²²⁷⁾ 특히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이 합의된 위해성평가방법에 따라 자국의 SPS조치가 객관적으로 당해 수입당사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당사국의 SPS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²²⁸⁾ 또한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의 SPS조치가 자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당해 수출당사국에 제시하도록 요구한다.²²⁹⁾ 또한 NAFTA는 각 당사국이 적절한 보호수준을 수립함에 있어 해충이나 질병으로 초래될 수 있는 생산이나 판매의 상실분, 해충이나 질병의 통제 및 퇴치를 위한 비용 등과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²³⁰⁾ 나아가 역내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협정의 목적 역시 고려하도록 한다.²³¹⁾ 다섯째, 각 당사국은 동식물의 해충이나 질병의 유입, 발생 및 확산에 관한 자국의 SPS조치를 동 조치를 적용받는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 및 당해 상품의 목적지의 위생 및 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²³²⁾ 여섯째, 각 당사국은 자국이 실시하는 통제 또는 검사

226) NAFTA 제713조 제1항. 구체적으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및 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등을 포함하여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특히 북미 지역의 관련 기구와의 가입을 촉구한다. NAFTA 제713조 제5항.

227) NAFTA 제714조 제1항.

228) NAFTA 제714조 2(a).

229) NAFTA 제714조 제2항(c).

230) NAFTA 제715조 제2항.

231) NAFTA 제715조 제3항.

232) NAFTA 제716조 제1항.

절차와 관련하여 당해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시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당해 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해 자국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²³³⁾ 또한 당사국의 주무당국은 그러한 절차의 처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고,²³⁴⁾ 당해 절차의 운영에 대한 불만(complaints)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러한 불만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의 시정조치를 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²³⁵⁾ 일곱째, 연방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PS조치의 채택 또는 수정을 계획하고 있는 당사국은 최소한 당해 조치의 채택 또는 수정 60일 전에 다른 당사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 당해 조치를 알 수 있도록 동 조치의 全文을 공개하여야 하고,²³⁶⁾ 州나 지방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²³⁷⁾ 또한 당해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자신의 새로운 조치 가운데 관련 국제표준이나 지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히고, 다른 당사국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서면진술 및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²³⁸⁾ 특히 SPS조치의 위반을 이유로 다른 당사국 상품의 자국내 통관을 거부하는 수입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련 조치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²³⁹⁾ 여덟째, NAFTA 당사국은 각국의 통제나 검사절차를 포함한 SPS

233) NAFTA 제717조 제1항(a).

234) NAFTA 제717조 제1항(c)(ii).

235) NAFTA 제717조 제1항(i).

236) NAFTA 제718조 제1항(a).

237) NAFTA 제718조 제2항(a).

238) NAFTA 제718조 제1항(c),(d).

239) NAFTA 제718조 제6항.

조치와 위해성평가절차 등에 대한 다른 당사국 및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할 책임을 가진 문의처(inquiry point)를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아홉째,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당사국의 SPS조치와 관련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자문, 자료 및 지원의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²⁴⁰⁾ 또한 그러한 임무 등을 위하여 NAFTA는 각 당사국의 SPS조치 주무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검역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²⁴¹⁾

(3) 주요 FTA의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유형간 비교 평가

먼저 앞 항에서 살펴본 기술규정 및 표준이 공산품의 교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본 항에서 살펴본 SPS조치는 농산물 교역과 관련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WTO TBT협정과 NAFTA 및 한-칠레 FTA 관련 규정에서는 과학적 증거에 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WTO SPS협정과 NAFTA 및 한-칠레 FTA SPS조치 규정에서는 당해 SPS조치가 과학적 원리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주요 FTA상 SPS조치 관련 규정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보면, WTO SPS협정 준용형은 당해 FTA에서 별도의 SPS조치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에 SPS협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사국 모두가 WTO 회

240) NAFTA 제720조 제1항.

241) NAFTA 제772조.

원국인 FTA에서 별도의 SPS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반면에 NAFTA형은 FTA 당사국의 SPS조치를 취할 권리 및 의무에 있어 SPS협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후자에 해당되는 NAFTA의 위생 및 검역규정에서는 대체로 WTO SPS협정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SPS조치를 취할 권리와 관련하여 WTO SPS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국제기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²⁴²⁾에 비하여 NAFTA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사국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SPS조

〈표 IV-3〉 주요 FTA에 있어 SPS조치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WTO SPS 협정 준용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20조) EFTA국가-싱가포르(제12조) 한-칠레(제8장)	
	미-싱가포르 FTA(협정 前文 에서 간략히 언급) 일본-싱가포르 FTA(규정 없음)	미-싱가포르 FTA 및 일본-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 본문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WTO 회원인 등 협정 당사국들간에는 WTO SPS협정이 적용됨
NAFTA형	NAFTA(제7장 B절)	NAFTA는 당사국의 SPS조치 행사 권한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도입할 권리도 인정(NAFTA 제712.1조)

242) WTO SPS협정 제2.1조, 제3.1조.

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동 조치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까지 포함된다²⁴³⁾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환언하면 NAFTA에서는 당사국의 SPS조치의 도입 또는 유지에 있어 국제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NAFTA 규정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생 및 검역 보호 수준을 채택할 자유를 그만큼 넓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NAFTA 당사국의 국내 SPS조치 관련 국내규정은 자칫 당해 FTA하에서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를 둘러싼 당사국들간의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⁴⁴⁾ 그렇지만 WTO SPS협정에서도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SPS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²⁴⁵⁾이 있고, NAFTA의 경우 모든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²⁴⁶⁾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양자간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TO SPS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동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게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²⁴⁷⁾ 동시에 회원국들의 SPS조치들간에 조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²⁴⁸⁾ 이에 비해 NAFTA에서는 당사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수립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²⁴⁹⁾ 이는 NAFTA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243) NAFTA 제712.1.1.조.

244) 실제로 캐나다-미국 FTA하에서 육류검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7 Int'l Trade Reporter 11 (Jan. 3, 1990) ; Recitation in Folsom etc., p.150.

245) WTO SPS협정 제3조 제3항.

246) NAFTA 제712조 제3항.

247) WTO SPS협정 제2조 제1항.

248) WTO SPS협정 제3조 제1항.

249) NAFTA 제712.2조.

〈표 IV-4〉 주요 FTA SPS조치규정 유형별 FTA 당사국의
당해 조치 도입에 있어 재량 여지 비교

← 당사국의 재량 여지 적음	당사국의 재량 여지 많음 →
WTO SPS협정 준용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EFTA국가-싱가포르; 한-칠레; 미-싱가포르; 일본-싱가포르)	NAFTA형 (NAFTA)

위생 및 검역 기준을 통일시켜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며,²⁵⁰⁾ 이 역시 당사국들간에 있어 SPS조치의 도입에 있어 그만큼 당사국들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이들 FTA 당사국은 SPS조치 규정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독자적인 국내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SPS협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FTA 당사국들에 비하여 그만큼 SPS조치의 도입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WTO협정이나 FTA에서 SPS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기본 이유는 농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각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SPS조치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은 물론 유전자변형식물(GMO) 등과 같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

250) Jon R. Johnso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A Comprehensive Guide, Canada Law Book, 1994, p.238; recited in: Trebilcock & Howse, p.148.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의 개발이 확산되면서 SPS조치 자체의 본래적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FTA상 SPS조치 규정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교섭하는 FTA에 있어 SPS조치에 관해 어떠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국들과 FTA를 교섭하는 경우 FTA의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무역 자유화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타방 협상 당사국 농산품의 국내시장에의 접근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리라고 보여진다. 이 점에서 농축산물 수출국들과의 FTA SPS조치규정 협상에서는 일견 SPS조치 규정의 도입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NAFTA형을 모델로 할 경우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는 물론 간접적으로 국내 관련 생산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다소간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이 경우 자칫 당사국들간에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SPS조치의 도입에 있어서는 과학적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한-칠레 FTA SPS조치규정에서와 같이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축산물의 수출품목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서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입안하기보다는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SPS조치 규정에서와 같이 이에 관해서는 WTO SPS협정을 따르도록 한다는 준용 규정만을 도입하는 것도 협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제V장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 : 세이프가드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국제규범의 성립 및 발전

1)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로서 GATT 제19조의 성립 및 의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이는 '1947(년) GATT'로 약칭된다) 제19조에서는 어느 체약당사자에게 무역자유화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으로부터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조치의 실시를 허용하는바, 이를 가리켜 GATT 세이프가드條項이라 하며 이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제한조치를 가리켜 흔히 세이프가드措置(safeguards ; safeguard measures)라 한다. 여기서 1947년 GATT 제19조의 핵심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과 본 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체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해 어느 물품이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동종물품이나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당해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²⁵¹⁾

요컨대 GATT 제19조는 계약당사자들로 하여금 수입이 특정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자신들의 GATT에 따른 의무를 일탈하여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되는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발동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바, 이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따라서 임시적 성격을 가지며 발동국은 당해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출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동 수출국에 다른 물품의 관세인하와 같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2)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먼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1947년 GATT 제19조의 경우 (i) 발동요건의 하나인 심각한 피해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아니한 관계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고, (ii) 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에 관한 국내절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iii)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GATT에의 통고 및 협의가 적절하지 아니하고, (iv) 세이프가드조치는 필요한 최단기간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v) 상당수의 세이프가드類似措置가 GATT규범 밖에

251) 1947 GATT 제19조 제1항(a).

서 선별적으로 선정된 국가를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²⁵²⁾ 이에 따라 제19조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제19조의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자간 협상에서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Tokyo Round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약”(Code)의 마련에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는 지난 Uruguay Round 다자간무역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²⁵³⁾

한편 UR결과 채택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그 前文에서 밝혔듯이 무엇보다도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한 기존의 GATT 제19조의 규율을 명료화하고 강화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그러한 통제를 일탈하는 조치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또한 국내산업에 있어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여기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기본적으로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한 것으로, 환언하면 GATT 제19조의 이행협정이라 할 수 있으며 GATT의 제반 규약(Code)들과 달리 UR 최종의 정서를 수락하는 모든 회원국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기능하게 된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i) 발동요건, (ii)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 및 제한, (iii) 세이프가드조치절차, (iv) 세이프가드조치, (v) 보상 및 보복, (vi) 분

252) Work Already Undertaken in the GATT on Safeguards, GATT Doc.No. MTN.GNG/NG9/W/1(April 8,1987).

253) T.P. Stewart(ed.), p.1718.

쟁해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주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규정의 유형 분석

1) FTA 당사국들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면제 유형

먼저 공동의 통상정책을 포함하는 관세동맹에 있어서는 당사국들간의 역내무역에 있어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EU나 Mercosur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일부 FTA에서도 당사국들간에 있어 세이프가드조치의 상호 적용을 면제하도록 해석되거나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발견된다.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8조에서는 양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협정의 발효일 이후 각 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조의 각주 규정에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²⁵⁴⁾ 이는 양 당사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정의된 그러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상호간에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이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당사국의 상품이

254)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8조(Safeguard Measures)

Neither Party shall take safeguard measures⁵⁾ against good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5) "Safeguard measures" means those measures falling within the ambit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포함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후자의 적용에 있어서는 WTO 협정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칠레 FTA 제6.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는 양 당사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²⁵⁵⁾ 이는 문언 그대로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다자간조치는 양 당사국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의미한다. 다만, WTO 회원국이면서 FTA 당사국인 관계에서는 FTA에서 그러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됨은 물론이다.²⁵⁶⁾ 또한 동 FTA에서는 달리 양자간 조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국간에는 일반적인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는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 FTA 제3.12조에서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규정을 둠으로써²⁵⁷⁾ 예외적으로 농산품에 대해서만 양자간 특별세이프가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FTA 안에서 세이프가드에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역시 당해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255) 한-칠레 FTA 제6.1조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2.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이 협정 제19장(분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5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에서 제6.1조상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동 조 2항상 분쟁해결과의 관계에서의 명료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57) 한-칠레 FTA 제3.12조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 조항

1. 이 협정 제6장 및 농업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 타방 당사국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타방 당사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농산물시장의 특별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타방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자간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의 준용 유형

두 번째 유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에 있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현재 이 문구 그대로 FTA상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FTA가 본 조사대상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FTA 세이프가드규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래에서 상술하는 WTO 플러스유형중 NAFTA 등 일부 FTA에서는 적어도 양자간 조치에 관한 규정에 있어 대체로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관련 조문을 따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용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WTO세이프가드협정의 전 조문을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FTA를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으로 분류하였다.

3)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 유형

먼저 여기서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이라 함은 FTA의 세이프가드규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과도기간 중에 한하여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의 행사와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

거나 또는 보다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나아가 FTA 세이프가드규정에서 당사국들간에 적용된다는 의미에서의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규정 이외에 별도로 비당사국을 포함한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동 규정에서 당해 FTA 당사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다자간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분류는 개념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제의 FTA에서는 협정안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비해 강화된 규정과 완화된 규정을 혼재하여 규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①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 포함 유형

이는 FTA 당사국들간의 역내 무역에 있어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되, 동 조치의 적용에 있어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에 비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행사를 보다 규제하는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인바, 대다수의 FTA가 이러한 유형의 세이프가드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FTA에는 (i) 상술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FTA와, (ii) 당해 FTA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한 다자간[글로벌]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가 있다. 이들 FTA 모두 양자간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이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i) 다자간 조치 규정 불포함 FTA의 관련 규정

먼저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긴급조치의 절차에 있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²⁵⁸⁾ 긴급조치의 발동기간이 WTO 협정상 4년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8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역시 3년을 초과하여 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²⁵⁹⁾ 또한 긴급조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받는 회원국이 입게 될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 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입의 절대적 증가로 인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3년간 그러한 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상 및 대응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당해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 형태의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만일 그러한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동 조치의 영향을 다른 당사국도 이와 동시에 보상

258)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7.4조.

259)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7조

3. Emergency measures shall be taken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after review by the Joint Committee, measures may be taken up to a total maximum period of three years. A Party taking such measures shall present a schedule leading to their progressive elimination. No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the import of a product which has previously been subject to such a measure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since the expiry of the measure.

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²⁶⁰⁾

다음으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5조[safeguard clause]에서도 당사국들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를 허용하지만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하여 발동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 3년간만 발동할 수 있도록 기간이 단축되어 있고, 재발동의 경우에도 WTO협정에서는 최초 조치 후 2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함에 비하여 동 FTA에서는 최초의 종료 이후 최소 3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여 조치의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²⁶¹⁾

이 밖에 일본-싱가포르 FTA 제18조[Emergency Measures]의 경우 각 당사국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에 한하여 그리고 피해를 구제하거나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260)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7조

5. The Party intending to take an emergency measure under this Article shall promptly make a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ies and the Joint Committee, containing all pertinent information which shall include evid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ncreased imports, precise description of the product involved, the proposed measure, proposed date of introduction and expected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posed measure. Any Party that may be affected by the measure shall simultaneously be offered compensation in the form of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liberalisation in relation to the imports from any such Party.
6. The Joint Committee shal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examine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5 in order to facilitate a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to the matter. In the absence of such resolution, the importing Party may adopt a measure pursuant to paragraph 2 to remedy the problem, and, in the absence of mutually agreed compensation, the Party against whose product the measure is taken may take compensatory action.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 compensatory action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Joint Committee. The compensatory action shall consist of suspension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concession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emergency a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 compensatory action, priority must be given to the action which least disturbs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261) Mexico-EC FTA 제15조 3항.

한의 범위내에서 (i)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거나 (ii) 당해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긴급조치의 발동시 최혜국관세와 협정의 발효시 최혜국관세중 보다 낮은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²⁶²⁾ 긴급조치의 이용을 잠정기간 동안 등으로 크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조 5항에서는 양 당사국간에 수입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품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합치하게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를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규정을 두면서²⁶³⁾ 긴급조치를 발동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대해 당해 조치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관세 상당액에 대해 관세양허의 형태로 합의된 적절한

262) 일본-싱가포르 FTA 제18조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ach Party may, on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or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at the time when the measure set out in this paragraph is taken; and
 - (ii) the most-favoured-nation applied rate of customs duty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f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which is accorded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vided for in Article 14,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form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that originating good alone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of the former Party.

263) 일본-싱가포르 FTA 제18조

5.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prevent a Party from applying safeguard measures to a good being imported to that Party irrespective of its source, including such a good being imported from the other Party, unless such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Agreement on Safeguards.

무역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협의 개시 후 30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최소 기간동안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²⁶⁴)으로써 보상규정에 있어 WTO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ii) 다자간 조치 규정 명시 FTA의 관련 규정

본 항에서는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에서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그러한 FTA로서 양자간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NAFTA에서 “양자간 조치”(bilateral actions)라 함은 NA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의 인하나 철폐의 결과 수입이 급증한 역내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가리키는데²⁶⁵) 이러한 양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NAFTA에서는 동 협정상 관세인하 및 철폐 대상 품목에 대해 과도기간²⁶⁶)중에 한하여, 그리고 (i) 특정 당사국 제품이 다른 당사

264) 일본-싱가포르 FTA 제18조

4. A Party proposing to apply a measure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adequate means of trad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whose level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compensation within 30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consultations pursuant to subparagraph (c) of paragraph 3 above,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taken shall be free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under this Agreement, which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measure appli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Party exercising the right of suspension may suspend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f customs duties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265) NAFTA 제801조 제1항.

국으로 상당히 증가된 양으로 수입되었을 것과 (ii) 이로 인해 수입 당사국의 동종 내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당해 수입 당사국은 그러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국 수입 상품에 대해 (i) 동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감축의 정지, (ii) 당해 조치의 발동 당시 시행중인 최혜국 관세율(the most-favored-nation applied rate of duty)이나 동 협정 발효 직전 시행 중인 최혜국 관세율중 보다 낮은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또는 (iii) 계절적 기초에 기하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동 협정 발효일 직전 상응하는 계절에 당해 제품에 대해 시행 중인 최혜국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관세율의 인상 등과 같은 형태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⁶⁷⁾

양자간 조치의 발동절차와 관련하여 NAFTA에서는 발동국은 동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당사국에 당해 조치의 절차 개시에 관해 지체없이 서면 통지 및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며, 양자간 조치는 일정한 예외²⁶⁸⁾를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해 조치 대상 제품 당사국의 동의가 없으면 과도기간의 종료 후 어떠한 조치도 유지할 수

266) 여기서 과도기간이라 하면 NAFTA 발효일인 1994.1.1부터 10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NAFTA 제805조.

267) NAFTA 제801조 제1항.

268) 조치대상 제품이 양자간 조치 발동 당사국 관세철폐 일정표상 카테고리 C+에 속하고, 당해 당사국이 영향을 받는 산업이 조정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의 경우 양자간 구제조치 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NAFTA 제801조 제2항(c)(i).

없다. 또한 당사국은 과도기간중 다른 당사국의 특정 제품에 대해 1회 이상 양자간 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²⁶⁹⁾ 그런데 과도기간의 종료 이후 협정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산업 피해나 피해 우려에 대처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양자간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치의 적용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다른 당사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으로써²⁷⁰⁾ 과도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양자간 조치의 이용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NAFTA에서는 양자간 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은 동 조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당사국에 당해 조치로 인해 초래된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교역효과를 가지거나 추가부담 관세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허형태의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²⁷¹⁾ 그런데 관련 당사국들간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치 대상 당사국은 당해 조치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²⁷²⁾

이 밖에도 양자간 조치와 관련하여 NAFTA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 TRQ) 형태의 특별세이프가드를 허용하고, 동 부속서 300-B의 적용대상인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도 제801조상의 양자간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에²⁷³⁾ 과도기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²⁷⁴⁾

이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NAFTA의 양자간 조치 규정은

269) NAFTA 제801조 제2항.

270) NAFTA 제801조 제3항.

271) NAFTA 제801조 제4항.

272) NAFTA 제801조 제4-5항.

273) NAFTA 제801조 제5항.

274) OECD, p.133.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광의에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준용규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도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 일방 당사국이 상술한 NAFTA 규정과 대동소이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치를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⁷⁵⁾ 이러한 양자간 조치는 원칙적으로 10년의 과도기간 동안 중에만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 양자간 조치를 취하려면 조치를 적용받는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²⁷⁶⁾ 양자간 조치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주무당국이 동 기간을 넘어 조치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275) 미국-싱가포르 FTA 제7.1조 : APPLIC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Subject to Articles 7.2 through 7.5,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such Party may:

- (a)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good;
- (b)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 (i)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 (ii)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 (c)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that was in effect on the good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corresponding season o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76) 미국-싱가포르 FTA 제6조 No measure may be maintained:

-
- (c)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taken.

최대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²⁷⁷⁾ 그리고 한번 양자간 조치를 적용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재발동을 할 수 없다.²⁷⁸⁾

양자간 조치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등하거나 추가 관세 가액에 상당하는 양허 형태의 무역자유화 보상을 상호간에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치를 적용받는 당사국은 양자간 조치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그러한 조치를 가진 타방 당사국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²⁷⁹⁾

이 밖에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별도의 양자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다.²⁸⁰⁾ 여기에

277) 미국-싱가포르 FTA 제7.2조(Conditions and Limitations)

6. No measure may be maintained:
.....

(b) for a period exceeding two years; except that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two years if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in conformity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paragraphs 1 through 5, that the measure continues to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erious injury and to facilitate adjustment a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dustry is adjusting;

278) 미국-싱가포르 FTA 제7.2조(Conditions and Limitations)

7. No measure may be applied against the same originating good on which a measure has been taken or that has been subject to any other safeguard measure sinc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279) 미국-싱가포르 FTA 제7.4조(COMPENSATION)

The Party applying a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7.1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mutually agreed trade liberalizing compensation in the form of concessions having substantially equivalent trade effects or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additional duties expected to result from the measure.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compensation within 30 days in the consultations under Article 7.2, the Party against whose originating good the measure is applied may take action with respect to originating goods of the other Party that has trade effect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measure described in Article 7.1. The Party taking such action shall apply the action only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achieve the substantially equivalent effects, and in any event, only while the measure under Article 7.1 is being applied.

280) 미국-싱가포르 FTA 제5.9조.

서는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경제 변수에 있어 변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사국은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되, 기술이나 소비자 선호의 변화는 그러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⁸¹⁾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동 조의 규정이 당사국으로 하여금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이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합치하여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을 규제할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²⁸²⁾

셋째,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양자간 긴급조치(bilateral emergency actions)와 관련 적용대상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과도기간 동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이를 발동할 수 있고,²⁸³⁾ 그러한 과도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다른 당사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한다.²⁸⁴⁾ 또한 양자간 조치의 발동국은 다른 당사국과 보상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에 실패한 경우 동 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당사국은 당해 조치와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²⁸⁵⁾

281) 미국-싱가포르 FTA 제5.9조 2항.

282) 미국-싱가포르 FTA 제5.9조(bilateral textile and apparel safeguard actions)

7.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ability of a Party to restrain imports of textile and apparel good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WTO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or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283) 칠레-멕시코 FTA 제6-02조 1항 및 2항 (c)(i).

284) 칠레-멕시코 FTA 제6-02조 2항(c)(ii).

285) 칠레-멕시코 FTA 제6-02조 4항.

②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 포함 유형

일부 FTA의 세이프가드규정에서는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들 규정은 당해 FTA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사례로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협약) 제14장상 세이프가드조치²⁸⁶⁾와 유럽경제지역협정(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 EEA)의 제4장 세이프가드조치²⁸⁷⁾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다. 이들 FTA에서는 모두 WTO협정상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고, 대신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적 또는 지역적 성격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로만 규정하여, 발동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²⁸⁸⁾ 또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도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심각한 피해 요건 이외에 수입국 경제의 여하한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serious disturbances)이나 수입국의 특

286) EFTA 제40조~41조.

287) EEA CHAPTER 4 SAFEGUARD MEASURES 제112조~제114조.

288) EFTA 제40조

1. If serious economic, societal or environmental difficulties of a sectorial or regional nature liable to persist are arising, a Member State may unilaterall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41.

EEA Article 112

1. If serious economic, societal or environmental difficulties of a sectorial or regional nature liable to persist are arising, a Contracting Party may unilaterall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113.

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려움(difficulties)이 있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²⁸⁹⁾ 그 발동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치의 행사 가능성을 그만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기간 및 재발동의 기간 등에 있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과 대조된다. 이는 동일한 FTA 협정안에서 발동요건 및 발동기간 등 그 규율 대상에 따라 상이한 입법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범위 및 발동기간에 대해서도 상황을 치유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정도라고만 규정할 뿐²⁹⁰⁾ 조치의 구체적인 형태나 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밖에 EEA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조치가 협

289)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5조

1. Where any product of one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 (a)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Party; or
 - (b) serious disturbances in any sector of the economy or difficulties which could bring about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economic situation of a region of the importing Party.

The importing Party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is Article.

290) EFTA 제40조

2. Such safeguard measures shall b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ir scope and duration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Priority shall be given to such measures as will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is Convention.

EEA Article 112

2. Such safeguard measures shall b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ir scope and duration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Priority shall be given to such measures as will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정상 권리 및 의무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한 경우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불균형을 치유하는데 엄격히 필요한 적절한 균형을 바로잡는 조치(proportionate rebalancing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¹⁾ 다만,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세이프가드조치의 선별적 적용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마찬가지로 EFTA 및 EEA에서는 당해 FTA의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²⁾ 그리고 E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 농업협정에 의거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유지한다.²⁹³⁾

4) 다자간 조치에 대한 옵션조항

여기서 옵션조항(optional clause)이라 함은 FTA 세이프가드규정에서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조치 규정 이외에 당해 FTA 당사국들간에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라 행사되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면제

291) EEA 제114조

1. If a safeguard measure taken by a Contracting Party creates an im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y other Contracting Party may towards that Contracting Party take such proportionate rebalancing measures as are strictly necessary to remedy the imbalance. Priority shall be given to such measures as will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e EEA.

292) EFTA 제40조

3. The safeguard measure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ll Member States.

EEA Article 112

3.The safeguard measures shall apply with regard to all Contracting Parties.

293) EFTA 제40조

4.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specific safeguard provisions set out in the Annexes to this Convention or of special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옵션조항은 (i) FTA 당사국들간에는 다자간 조치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또는 (ii)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다자간조치의 행사에 있어 다른 FTA 당사국 상품이 포함된 경우 동 조치를 당해 당사국 상품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되는 규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① FTA 당사국들간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 규정 별도 명시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중에는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와 당해 FTA 당사국들간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구별하여 규정하되, 특히 전자의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당해 FTA 당사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발견된다. 가령 NAFTA, 칠레-멕시코 FTA 그리고 최근 체결된 미국-싱가포르 FTA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FTA 당사국들간 다자간조치의 적용 면제는 FTA상 세이프가드규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 규정 유형에 있어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는 옵션조항(optional clause)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유는 FTA상 세이프가드라 할 때 이는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조치로서 이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

래에서는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NAFTA의 경우 제8장[긴급조치(emergency action)]에서 양자간 조치와 글로벌 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는바, 글로벌조치와 관련하여 NAFTA에서는 당사국이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²⁹⁴⁾ WTO 관련 규정에 의거 그 출처와 관계없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global actions)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간 조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별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중 상당한 부분(a substantial share)을 차지하고²⁹⁵⁾ 개별 당사국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모든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에 있어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²⁹⁶⁾가 아닌 한, 당사국은 자신의 다자간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²⁹⁷⁾ 이와 관련 실제로 미국 무역위원회는 Wheat Gluten 사건²⁹⁸⁾에서 캐나다산 수입품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캐나다산 수입품이 수입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여, 캐나다산 수입품을

294) NAFTA 제802조.

295) 이는 당해 개별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수입시장점유율에서 적용 대상 제품 공급자의 상위 5위안에 포함된 경우가 해당된다. NAFTA 제802조 제2항(b).

296) 이는 어느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같은 기간중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총수입의 증가율보다 명백히 낮은 경우 그러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NAFTA 제802조 제2항(b).

297) NAFTA 제802조 제1항. 단, 최초의 다자간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조치 부과 당사국의 조사 당국이 당해 당사국(들)으로부터의 해당 제품의 수입이 그러한 조치의 효과(effectiveness)를 손상시킨다고 결정하는 경우 추후 당해 국가의 해당 제품을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NAFTA 제802조 제3항.

298) Investigation No. TA-201-67, Publication 3088, March 1998.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²⁹⁹⁾

이와 같이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을 제외하는 것은 NAFTA 당사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WTO/GATT상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간에 있어 세이프가드조치의 선별적 적용을 하지 말도록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협정³⁰⁰⁾과 합치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분쟁과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WTO 분쟁해결절차에 부탁된 아르헨티나-신발류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사건,³⁰¹⁾ 미국-EC산 밀 글루텐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사건³⁰²⁾ 및 미국-한국산 탄소강관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사건³⁰³⁾에 있어 패널 및 상소기구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당사국을 제외하는 것이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합치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가부를 밝히지 않고, 대신에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에서의 대상 범위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서의 대상 범위간의 상응성(parallelism)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즉,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단계에서 RTA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포함시켰다면, 동 조치의 적용 단계에서도 당해 RTA 당사국의 수입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최근의 미국-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치의 주무기관인 미국 무역위원회

299) OECD,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3, p.137, n.5.

300)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2조.

301) Argentina-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Case, WT/DS121/AB/R, para.113.

302) US-Wheat Gluten Case, WT/DS166/AB/R, para.99; WT/DS166/R, para.8.183.

303) US-Line Pipe Case, WT/DS202/R, para.7.167.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가 피해조사단계에서 NAFTA 당사국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품을 조사하였지만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및 요르단산 수입품을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었음을 주목하면서 동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품 즉,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및 요르단 이외의 국가들의 수입철강만으로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정당화할 의무가 미 ITC에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⁰⁴⁾

다자간 조치의 행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NAFTA에서는 다자간 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은 동 조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당사국에 당해 조치로 인해 초래된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교역효과를 가지거나 추가부담 관세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허 형태의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련 당사국들간에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치 대상 당사국은 당해 조치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무역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⁵⁾

둘째, 미국-싱가포르 FTA 역시 제7장[세이프가드]에서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와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한

304) US-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Case, WT/DS259/AB/R, paras.440-444.

305) NAFTA 제802조 제6항.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당해 당사국 수입품에 대해 동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⁰⁶⁾

셋째, 칠레-멕시코 FTA에서도 NAFTA에서와 같은 two-track 방식의 세이프가드규정을 두고 있다. 즉,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거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긴급조치에 대해 함께 규정한다. 다만, 글로벌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조치 발동국 총수출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위협을 초래함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⁷⁾

② 다른 FTA 당사국에 대한 다자간 조치를 행사하지 말도록 해석되는 규정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8조에서는 양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협정의 발효일 이후 각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306) 미국-싱가포르 FTA 제7.5조 : GLOBAL SAFEGUARD MEASURES

Each Party retains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rticle XIX of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This Agreement does not confer any additional rights or obligations on the Parties with regard to global safeguard measures, except that a Party taking a global safeguard measure may exclude imports of an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if such imports are not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307) 칠레-멕시코 FTA 제6-03조 제1항.

동 조의 각주 규정에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³⁰⁸⁾ 이는 양 당사국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정의된 그러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상호간에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이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당사국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후자의 적용에 있어서는 WTO 협정과 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주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규정 유형의 비교 및 평가

이상에서 FTA에 있어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규정은 (i) 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 적용 면제 유형, (ii) WTO 세이프가드협정 준용 유형 그리고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 유형중 (iii) WTO 세이프가드협정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형과 (iv) WTO협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WTO 플

308)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8조(Safeguard Measures)

Neither Party shall take safeguard measures⁵⁾ against goods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5) "Safeguard measures" means those measures falling within the ambit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러스 세이프가드규정에 해당하는 (iii) 또는 (iv)의 유형에서 선택적으로 수용 규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FTA 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면제하는 (i)의 유형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등 급격한 교역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FTA 당사국들 상호간에 있어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유형으로서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당해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교역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경쟁의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발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당사국들간에 있어 일체의 세이프가드조치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 면제형의 규정은 당사국들간에 있어 산업발전 및 경쟁력 수준이 동등하거나 양국간의 산업구조가 각기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에 도입할 수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 FTA에서 극히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이 당사국들 상호간에 있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면제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면제형 규정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세이프가드조치의 선별적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³⁰⁹⁾과 상충되며 따라서 그 합치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309)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표 V-1〉 주요 FTA에 있어 세이프가드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FTA 당사국들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면제 유형	한-칠레(제61조), 싱가포르-뉴질랜드(제8조)	EU, Mercosur 등 관세동맹 적용면제 규정함.
WTO세이프가드협정 준용 유형	조사 대상 FTA중 암묵하게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협정은 없음.	
WTO 세이프가드협정 적용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싱가포르(제17조): 긴급조치 발동기간 1년, 최대 3년; 보강조치의 동시 실시 • EC-멕시코(제5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기간 1년, 최대 3년; 재발동 경과기간 3년 요구 • 일본-싱가포르(제18조): 긴급조치의 행사를 잠정기간으로 국한; 보강규정 강화 • NAFTA(제80조): 양자간조치의 과도기간 이후 행사시 다른 당사국의 동의 요함; 발동기간 3년 등 • 미국-싱가포르(제71조-제74조): 양자간조치는 과도기간중에만 행사, 과도기간 이후 타 당사국의 동의 요함; 발동기간 2년, 최대 4년; 동일 재중에 대한 재발동 금지 • 칠레-멕시코(제6조): 양자간 조치는 과도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 EC-멕시코(제5조 1항): 심각한 피해 이외에 심각한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규정 • EFTA(제14장 제40조-제41조): 심각한 피해 요건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대체; FTA 당사국들간에 신변직을 배제 • EEA(제12조-14조): 심각한 피해 요건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대체; FTA 당사국들간에 선별적용 배제; 적절한 균형화조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 FTA 다자간조치 규정 언급 없음. • EC-멕시코 발동요건 완화된 기준 포함
다자간 조치에 대한 우선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 다자간조치(제82조)와 관련된 다른 FTA 당사국의 적용 배제 근거 규정 명시 • 미국-싱가포르(제75조): 다자간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예외적으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칠레-멕시코(제6조) 다자간조치의 적용에서 다른 FTA 당사국 수입품 배제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속 FTA 당사국들 다자간 조치 적용 면제 규정 별도 명시
	뉴질랜드-싱가포르 (CEFTA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조항은 상술한 다양한 세이프가드규정 유형에서 다자간 조치에 대해 선택적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의미함.

주 : * 한-칠레(제312조), NAFTA, EFTA는 농산물, NAFTA의 경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양자간 특별세이프가드규정도 두고 있음.

둘째, (ii) WTO세이프가드협정 준용 유형은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FTA를 가리키는바, 이러한 유형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은 FTA 체결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에 있어 특별 대우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한-칠레 FTA가 그러하다. 이는 FTA 체결 이후에도 기존의 WTO 회원국들간에 적용되는 GATT 1994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따르도록 하여, WTO규범과의 불일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WTO협정상 세이프가드 조치만을 유지하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산업별 교역 여건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거나 또는 그와 같이 FTA 체결로 인해 급격한 교역환경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및 업종을 당해 FTA의 무역자유화 적용 예외 또는 점진적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등에 있어 이용하기에 적합한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세 번째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 유형은 FTA의 당사국들간 및 비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현행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부분적으로 이를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등 WTO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시 (i)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한 유형과 (ii)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에서는 당사국들간에 적용되는 양자간 조치에 관한

규정 이외에 다자간조치에 있어 당사국들의 적용 면제를 규정한 다자간 조치에 관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iii)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한 유형이라 함은 FTA 당사국들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현행 WTO 관련 규정의 요건 및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조치의 행사를 그만큼 제약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긴급조치의 발동기간이 WTO 협정에는 4년으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폭 제한하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8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역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크게 제한하고 있다.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도 발동기간을 1년, 예외적인 경우에도 3년으로 동일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동의 경우 WTO협정에서는 최초 조치후 2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함에 비하여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최소 3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여 재발동의 행사를 보다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긴급조치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받는 회원국이 입게 될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의 절대적 증가로 인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3년간 그러한 정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상 및 대응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는 긴급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당해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 형태의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만일 그러한 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조치의 영향을 다른 당사국도 이와 동시에 보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긴급조치의 남용을 보다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조치의 형태와 관련하여 WTO협정에서는 관세조치는 물론 수량제한조치 등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싱가포르 FTA 등에서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긴급조치의 형태로서 양허관세의 추가 인하 정지나 관세율의 인상 등 관세조치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iii)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옵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FTA로서 NAFTA를 보면, 양자간 조치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과도기간 종료 이후의 양자간 조치의 발동시 타방 당사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양자간조치는 과도기간 중에만 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 조치의 발동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양자간조치의 재발동을 금지한다. 이 밖에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양자간조치는 과도기간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iv)의 WTO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한 유형이라 함은 FTA 당사국들간의 역내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현행 WTO 관련 규정의 요건 및 기준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조치의 행사를 그만큼 용

이하에 하여 주는 규정을 가리키며, EFTA 및 EEA의 관련 규정이 그러하다. 즉, 이들 FTA에서는 WTO협정상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기준 대신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적 또는 지역적 성격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대체하여 규정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의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도 WTO협정상 규정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국 경제의 여하한 분야에서의 심각한 혼란(serious disturbances)이나 수입국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비해 발동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기간 및 재발동의 기간 등에 있어서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그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FTA안에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강화된 규정과 완화된 규정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특히 다자간 조치의 적용에 있어 당해 FTA 당사국들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옵션조항과 관련하여, 이는 NA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 미국이 당사

자로 참여한 FTA와 이 밖에 칠레-멕시코 FTA,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코스타리카 FTA 등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즉, 이들 FTA에서는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나 피해 위협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수입품에 대해 동 조치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선별적 적용을 금지하는 WTO 세이프가드협정과의 합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³¹⁰⁾ 또한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부탁된 Argentina-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 사건,³¹¹⁾ US-Wheat Gluten 사건³¹²⁾ 및 US-Line Pipe 사건³¹³⁾에 있어 패널 및 상소기구들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있어 특정 RTA 당사국을 제외하는 것이 WTO와 합치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대신 이들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세이프가드조사 단계에서의 대상 범위와 세이프가드 적용 단계에서의 대상 범위간에 parallelism(균등성)의 필요를 강조하였음이 주목된다. 즉, 조사단계에서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을 포함시켰다면, 조치의 발동단계에서도 당해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의 상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310) 이 문제는 GATT 1994 제24조 8항 괄호상의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바, 현행 규정만으로는 서로 다른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TN/RL/W/8, p.27. 이 점에서 이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논의가 DDA 지역무역협정 규범 협상에서 논의중에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고준성, DDA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 논의 및 방향에 대한 분석, 국제경제법학회 2003년 하반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11) WT/DS121/AB/R, para.113.

312) WT/DS166/AB/R, para.99; WT/DS166/R, para.8.183.

313) WT/DS202/R, para.7.167.

그런데 NAFTA 등에서 다자간조치의 적용에 있어 당사국에의 적용 배제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동 조치의 선별적 적용 금지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당사국들의 교역상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그 운용을 둘러싼 통상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은 조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입법론적으로 GATT 1994 제24조의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부 FTA³¹⁴⁾에서는 농산물이나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을 대상으로 대체로 보다 완화된 요건의 특별 세이프가드를 규정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이는 당사국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민감한 품목을 FTA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어 유용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들 민감한 품목의 경우 자유무역의 예외에 포함시키거나 과도기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주요 FTA상 세이프가드규정의 유형별로 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 난이도를 보면 FTA 당사국들간 (양자간) 조치 적용면제 유형, WTO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유형, WTO협정 준용규정 유형, WTO협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유형 순으로 갈수록 당사국들간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가 용이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FTA 당사국들간 다자간조치의 적용면제를 명시하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FTA의 경우 당해 FTA에 따른 다자간조치의 행사에 있어서는 다른 FTA 당사국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가능

314) 가령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면서 동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시장에서의 심각한 피해나 교란(serious injury or disturbance in the markets)만을 규정하고, 이를 판단할 다른 객관적 요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칠레 FTA 제3.12조.

〈표 V-2〉 주요 FTA 세이프가드규정 유형별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 당사국간 세이프가드행사 어려움		당사국간 세이프가드 행사 용이함 →	
FTA 당사국들간 세이프가드 적용 면제 유형 (뉴질랜드-싱가포르; 한-칠레)	WTO세이프가드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유형 (EFTA-멕시코; 일본-싱가포르; EC-멕시코; NAFTA;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WTO세이프가드협정 준용 규정 유형 (조사 대상 FTA 중에는 없음)	WTO세이프가드협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유형 (EC-멕시코; EFTA; EEA)
		WTO 세이프가드협정상 권리·의무 유지 명시(한-칠레) 또는 FTA에서 다자간조치에 대해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는 경우 (그 밖의 FTA)	옵션조항 포함 • FTA 당사국들간 다자간조치 적용면제 규정 포함 (NAFTA: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 다른 FTA 당사국에 대해 다자간조치 행사하지 말도록 해석되는 규정 (뉴질랜드-싱가포르)
← 다자간 조치 행사 어려움		다자간 조치 행사 용이함 →	

성이 있으므로 그만큼 다자간 조치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먼저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유형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협상 상대국간에 있어 주요 산업 및 품목별

경쟁력 비교를 통해 향후 FTA 발효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양국 산업 및 품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입국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세이프가드 규정 유형은 협상 상대국과의 산업 전반 및 주요 교역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 우열 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FTA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및 품목이 비교 열위에 놓여 있는 분야 및 품목이 절대 다수인 경우에는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결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품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 대상국과의 FTA 세이프가드규정 협상에서는 가능한 한 당사국간 세이프가드조치 행사가 용이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나 EFTA 등에서와 같이 양자간 조치의 발동요건을 심각한 피해 이외에 심각한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이 추가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크다. 이 경우 양자간 조치의 발동기간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체제 하에서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FTA 세이프가드규정 협상에서 이의 관철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이를 전체 협상 과정에서의 레버리지(leverage)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

우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 규정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협상 상대국의 상품이 국내산업 피해 발생의 주요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자간 조치의 적용에서 다른 체약국의 적용면제 규정을 도입할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FTA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경쟁품목에 있어 우리나라가 공산품분야에서 전반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이 일견 유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FTA에 있어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 교섭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태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에서 이용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강화된 기준이 반영된 수준의 세이프가드규정 유형을 채택함으로써 양자간 조치의 행사를 보다 제한하되, 그 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EFTA국가-싱가포르 FTA,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일본-싱가포르 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에서와 같이 양자간조치의 발동기간을 WTO협정에 비해 보다 단축하거나 재발동 역시 이를 금지하거나 보다 제한하고, 보상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한 양자간 세이프가드 규정의 도입이 권고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 규정은 우리나라의 타방 당사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므로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셋째, 우리나라와 FTA 협상 상대국간에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동등하거나 경합적인 산업 및 품목이 적지 않은 경우

에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준용 규정을 도입하거나 협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일부 도입하는 수준에서의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이면 무난하리라고 본다.

넷째, 앞서 언급하였지만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다자간 조치의 적용면제를 규정한 옵션조항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다자간 조치의 도입은 타방 당사국의 수입품의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해 타방 당사국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도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옵션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협상 상대국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옵션조항의 도입은 그만큼 역외 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조치의 행사에 있어 우리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므로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본다.

한편 NAFTA, EFTA 및 한-칠레 FT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FTA에서는 특히 농산물과 섬유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양자간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FTA 협상 상대국이 농산물이나 섬유 및 의류 등에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당해 품목에 대한 양자간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특별 세이프가드규정 도입 여부는 양국간 자유화협상을 통해 우리측의 당해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의 범위나 과도기간의 日程 및 대상 품목의 범위가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의 결과와 관련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상에서 FTA 세이프가드규범은 다양한 유형의 규정을 도

입할 수 있고, 같은 유형안에서도 다양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규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³¹⁵⁾ 따라서 향후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는 협상 상대국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일종의 ‘맞춤형 세이프가드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크다.

315) 가령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WTO 플러스 세이프가드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세이프가드규정의 입안에 있어 발동요건은 완화하되 조치의 행사기간은 제한하는 등 협정보다 완화된 규정과 강화된 규정을 동일한 FTA안에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제VI장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1. 불공정무역규범의 성립 및 발전

(1) 불공정무역관행 규제의 의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 이외에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무역관행들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서 GATT 1947 제6조에서는 덤핑이나 보조금 공여와 같은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수입국 당사국들로 하여금 각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를 통해 그러한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입은 국내 생산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불공정 무역관행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규칙을 도입하게 된 근거는 무엇보다 세계의 모든 생산자들을 위한 “동등한 경

쟁의 場”(a level-playing field)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무역을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 또는 산업피해구제제도라 함은 외국으로부터의 輸入으로 인한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일체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외국 정부나 민간기업의 불공정한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여 수입국에 허용되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 등과 같은 불공정무역규제는 물론 상술한 ‘공정한’(fair)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수입국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이프가드조치와 같은 공정무역규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국제 불공정무역규범의 발전 및 과제

상술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응하여 국가가 취하는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규범 체계 일반을 가리켜 ‘불공정무역규범’이라 하는데 이는 국제 불공정무역규범과 국내 불공정무역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前者의 국제(통상)규범으로는 GATT 1994 제6조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반덤핑협정] 그리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後者の 국내규범이라 함은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를 위해 개별 국가가 제정한 관련 국내(통상)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인 덤핑과 보조금의 공여에 대한 규제에 관해 규정하였던 종래의 GATT 1947 제6조는 지나치게 골격적인 규정이었던 관계로 동 규정하에서 GATT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통해 이들 불공정 관행을 국내적으로 규제

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졌고, 그 결과 불공정무역규제조치를 보호무역수단의 하나로서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무역관행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격의 산정과 같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회계작업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기존의 GATT 제6조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인 관계로 미국이나 EC 등과 같은 회원들이 독자적인 불공정무역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는데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의 행사에 관한 국제규범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협상의제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WTO 불공정무역규범은 종전의 GATT 시기중 채택되었던 반덤핑규약이나 보조금규약³¹⁶⁾과 달리 WTO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제 불공정무역규범에 있어 일대 진전을 이룬 성과로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이나 보조금협정 모두 지난 UR 협상에서 이해관계국들간의 타협의 산물이어서 아직도 남용 내지 오용이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고, 그 결과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에서는 이들 무역규범의 개선을 협상 의제의 하나로서 채택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국내 불공정무역규범의 경우 지난 GATT 시기에는

316) 이는 지난 GATT시기의 도쿄라운드 규범분야 협상의 결과로서 채택된 부수협정(side agreements)의 일부인바, 이들 규약은 별도의 가입 의사를 표시한 회원국들에만 적용되었던 관계로 제한적인 일부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졌다.

일부 선진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국내법이 제정,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국내 불공정무역규범의 제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반덤핑법을 제정한 WTO 회원 수만도 90여개에 달한다.

참고로 GATT시기에서는 반덤핑조치와 같은 불공정무역규범 운용의 대부분을 미국, EU, 캐나다 및 호주 등 일부 선진 회원들이 차지하였으나, WTO 출범 이후에는 개도국 회원들에 의한 불공정 무역조치의 이용이 전체 이용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동 조치의 이용국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조치의 이용 건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³¹⁷⁾

2. 반덤핑조치

(1) 주요 FTA에서의 반덤핑규정 유형 모색

1) FTA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 규정

이는 FTA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이용 가능성을 상호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 FTA 규정은 WTO 관련 규정의 틀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일부 FTA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규정된 반덤

317)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WTO, Report of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를 참조.

핑조치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³¹⁸⁾ 당사자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동 협정에서는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상 경쟁 규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¹⁹⁾

다음으로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상호간에 반덤핑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여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적용 면제를 향후 협상 과제의 하나로써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²⁰⁾

캐나다-칠레 FTA에서도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반덤핑조치의 이용 배제는 관세의 폐지를 조건부로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HS 8단위로 규정된) 일정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날부터 동 FTA 당사국들간의 역내 무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종료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연장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³²¹⁾ 환언하면, 동 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이용을 과도기간 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FTA의 경우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반덤핑조치를 적용

318) EFTA국가-싱가포르 FTA Article 16 (Anti-Dumping) 1문.
A Party shall not apply anti-dumping measures as provided for under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in relation to product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319) EFTA국가-싱가포르 FTA Article 16 (Anti-Dumping) 2문.

320) 칠레-멕시코 FTA 제20-08조 (Future Negotia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ommission shall:
.....
(b) begin negotiations to reciprocally eliminate antidumping duties, one year after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at which time it shall appoint negotiators and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321) OECD, p.134.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³²²⁾ EEA에서도 동 협정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반덤핑조치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³²³⁾ 다만, EEA의 경우 동 협정이 HS 제1장~제25장에 속하는 제품 즉,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³²⁴⁾ EEA 당사국은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1983년 1월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FTA의 경우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³²⁵⁾ 다만, 산업합리화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추가적 조치를 통해 반덤핑조치의 행사를 면제하거나 제3국에 대해 공동의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특이하다.³²⁶⁾ 그러나 동 규정은 1988년 채택되어 본 협정에 부속문서로 첨부된 ANZCERAT 상품자유무역의 촉진에 관한 의정서(호주-뉴질랜드 FTA Protocol on Acceleration of Free Trade in Goods)에 의해 1990년 7월 1일 이후로 동 협정의 적용대상인 상품에

322) EFTA 제36조

Anti-dumping measures, countervailing duties and measures against illicit commercial practices attributable to third countries shall not be applied in relations between the Member States.

323) EEA 제26조.

Anti-dumping measures, countervailing duties and measures against illicit commercial practices attributable to third countries shall not be applied in rel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324) EEA 제8조 3항.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only to:
(a) products falling within Chapters 25 to 97 of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cluding the products listed in Protocol 2:

325) 호주-뉴질랜드 FTA 제15조.

326) 호주-뉴질랜드 FTA 제13조 3항 (d),(e).

Article 13 (Rationalisation of industry) 3. Additional measures which may be implemented by the Member States may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d) exemption from the operation of anti-dumping action;
(e) joint anti-dumping action against third countries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다.³²⁷⁾ 다만, 1990년 개정에서 당사국들간의 상계조치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행사를 배제하는 대신에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국이 WTO협정에 따라 제3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³²⁸⁾

2)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 당사자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동 협정에서는 나아가 당사자들간의 교역에 있어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협정 제V장 [경쟁조치]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³²⁹⁾

327) 호주-뉴질랜드 FTA Protocol on Acceleration of Free Trade in Goods 제4조.

328) An Australia-USA Free Trade Agreement : Issues and Implications, p.161; OECD, p.134.

329) EFTA 제16조 2문.

In order to prevent dumping, the Parties shall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as provided for under Chapter V.

참고로 제V장 제50조는 다음과 같다.

V. COMPETITION, Article 50 (Competition)

The Parties recognise that certain business practices, such as anti-competitive agreements or concerted practices, and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may restrict trade between the Parties.

A Party shall, at the request of another Party,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eliminating prac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arty addressed shall accord full an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such a request and shall co-operate through the supply of publicly available non-confidential information of relevance to the matter in question. Subject to its domestic law and the conclusion of a satisfactory agreement safeguarding confidentiality of

이와 관련하여 FTA는 아니지만 EEC의 경우 경쟁정책에 관한 장이 별도로 조약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통합이 이루어진 관계로 공동시장에 속한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는 공동의 경쟁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반덤핑관세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도기간에 한하여 반덤핑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3) WTO 반덤핑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유형

이는 FTA에서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반덤핑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되 FTA 당사국들간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자의적이고도 보호주의적인 이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의 발동요건 및 절차 등을 WTO 반덤핑협정에 비해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의 경우 당사국간의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있어 WTO 반덤핑협정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 및 절차를 도입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i)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덤핑 마진의 크기를 2%에서 5%로 확대하였고, (ii) 새로운 5%의 최소덤핑 마진 기준을 최초 조사 단계에서 적용함은 물론 이를 재심단계에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iii) WTO 반덤핑협정상 무시할만한 수입수량 기준 역시 3%에서 5%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iv) 덤핑수입

information, the Party addressed shall also provide any other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requesting Party.

No Party may have recourse to arbitration under Chapter IX with respect to matters arising under this Chapter.

물량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대표기간이 통상 최소한 12월이 되도록 하고, (v) WTO 반덤핑협정상 5년인 자동종료 재심기간을 3년으로 단축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³³⁰⁾ 이 밖에 통고 및 협의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³³¹⁾

330)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9조 (Anti-Dumping)

1. Both Parties are Members of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WTO Anti-Dumping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rade between the Parties, the following changes are agreed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order to bring greater discipline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o minimise the opportunities to use anti-dumping in an arbitrary or protectionist manner :
 - (a) the de minimis dumping margin of 2 per c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export price below which no anti-dumping duties can be imposed provided for in Article 5.8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raised to 5 per cent;
 - (b) the new de minimis margin of 5 per cent established in sub-paragraph (a) is applied not only in new cases but also in refund and review cases;
 - (c) the maximum volume of dumped imports from the exporting Party which shall normally be regarded as negligible under Article 5.8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ed from 3 per cent to 5 per cent of imports of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Party. Existing cumulation provisions under Article 5.8 continue to apply;
 - (d) the time frame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volume of dumped imports under the preceding sub-paragraphs shall be representative of the imports of both dumped and non-dumped goods for a reasonable period. Such reasonable period shall normally be at least 12 months;
 - (e) the period for review and/or termination of anti-dumping duties provided for in Article 11.3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reduced from five years to three years.

331)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9조.

2. Notification procedures shall be as follows:
 - (a) immediately following the acceptance of a properly documented application from an industry in one Party for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n respect of goods from the other Party, the Party that has accepted the properly documented applic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Party;
 - (b) where a Party consider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it shall give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that Agreement, and observ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7.2 of that Agreement concerning consultations.

4) WTO 반덤핑조치 관련 규정의 준용 규정

대다수의 FTA에서는 WTO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에 기하여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각 당사자가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³³²⁾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당사국에 대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GATT 1994 제6조,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 적용된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³³³⁾

한-칠레 FTA에서도 양 당사국은 WTO 반덤핑조치 관련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³³⁴⁾ 나아가 한-칠레 FTA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취한 반덤핑조치는

332)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4조(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munity and Mexico con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from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333) 일본-싱가포르 FTA Article 14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imposing, at any time,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s of the other Party :
(b) any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334) 한-칠레 FTA 제7.1조 1항.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6조,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이하에서 "반덤핑협정") 그리고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협정상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³³⁵⁾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이를 WTO 관할하에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5)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규정 유형

미국-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상 관세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 반덤핑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할 뿐³³⁶⁾ 달리 반덤핑조치의 행사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반덤핑법규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NAFTA의 경우 제19장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조치법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³³⁷⁾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조치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³³⁸⁾고 규정함으로써 NAFTA에서는 당사국간에 적용되는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335) 한-칠레 FTA 제7.1조 2항.

2.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및 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이 협정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36) 미국-싱가포르 FTA 제2.13조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duty includes …… , but does not include any:
……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337) NAFTA 제1902.1조. 각 체약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에는 각 당사국에 적절한 경우 관련 법규, 입법사, 규정, 행정관행 및 사법적 선례가 포함된다.

338) NAFTA 제1902.2조.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 및 상계조치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다만, NAFTA는 각 당사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조치법의 개정 및 적용이 WTO협정 및 NAFTA의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양국간 패널(bilateral panel)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³⁹⁾ 이는 당사국간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행사에 있어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 국내법규 및 적용에 있어 WTO협정 및 NAFTA 관련 규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NAFTA는 당사국간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사건에 있어 행정당국의 최종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양국간 패널 심사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⁴⁰⁾ 이에 따라 당사국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국간 패널이 수입국 행정당국의 결정을 재심하여, 당해 결정이 수입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³⁴¹⁾ 이는 한-칠레 FTA에서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분쟁을 당해 협정의 분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대해 달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2장[General Definitions]에서 동 협정의 적용상 관세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

339) NAFTA 제1903.1조. 여기서 양국간 패널의 설치에 대해서는 부속서(Annex) 1901.2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340) NAFTA 제1904.1조.

341) NAFTA 제1904.2.9조.

라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³⁴²⁾ 즉, 칠레 및 멕시코는 양국간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있어 자국 반덤핑법규에 기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상호간에 반덤핑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³⁴³⁾

(2) 주요 FTA상 반덤핑규정 유형의 평가 및 비교

이상에서는 기존의 FTA상 반덤핑규정을 크게 5개 유형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FTA 체결 당사국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EFTA국가-싱가포르 FTA와 호주-뉴질랜드 FTA 등이 그러하다. 이 밖에 캐나다-칠레 FTA에서는 관세의 철폐를 조건부로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고, EFTA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품목에 대

342) 칠레-멕시코 FTA 제2-01조.

Article 2-09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customs duty includes any customs or import duty and a charge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including any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343) 칠레-멕시코 FTA 제20-08조 (Future Negotiations)

Unless otherwise agreed, the Commission shall:

.....

(b) begin negotiations to reciprocally eliminate antidumping duties, one year after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at which time it shall appoint negotiators and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해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조치 자체가 후생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한 수단으로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를 경쟁조치로 대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FTA 규정이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EFTA국가-싱가포르 FTA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반덤핑법은 외국의 덤핑수출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경쟁자(domestic competitors)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경쟁(competition)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반덤핑에서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시장구조 집중도라든지 소비자의 후생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경쟁론자들은 반덤핑 자체가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덤핑규칙을 경쟁규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³⁴⁴⁾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목적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경쟁법으로의 대체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현행 WTO협정상 반덤핑제도의 행사에 있어 제반 요건 및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유형으로서 뉴질랜드-싱가포르 FTA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절차의 종료 사유로 규정된 최소덤핑(de minimis dumping) 마진의 크기를 WTO협정상 2%에서 5%로 확대하였고, 이를 최초 조사단계는 물론 재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무시

344)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Clarisse Morgan, Competition Policy and Anti-Dumping : Is it Time for a Reality Check?, Journal of World Trade, Vol.30, No.5(1996) 참조.

〈표 VI-1〉 주요 FTA에 있어 반덤핑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FTA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싱가포르 FTA(제16조 1문) : 덤핑 방지를 위해 협정상 경쟁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16조 2문) · 칠레-멕시코 FTA(제2-08조) : 협정 발효 1년 후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 철폐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명시 · 캐나다-칠레 FTA : 반덤핑조치의 적용 배제를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연계함. · EFTA(제36조) · EEA(제26조) : 농산물에 대해서만 반덤핑조치 적용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제8조 제3항) · 호주-뉴질랜드 CERTA(1990년 개정) : 협정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이들 FTA 당사국들은 WTO협정에 따라 제3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 적용하는 규정	EFTA-싱가포르 FTA : 협정 제V장[경쟁조치]에서 규율	관세동맹인 EEC의 경우 공동의 경쟁정책이 적용되고, 반덤핑조치 비적용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유형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제9조) : 최소 덤핑 마진 5%; 재심단계에서도 최소덤핑마진 적용; 무시할 만한 수입물량 5%; 자동제심을 3년후 적용 등	
WTO 반덤핑협정의 준용 유형	한-칠레 FTA(제7조) EC-멕시코 FTA(제14조) 일본-싱가포르 EPA(제14조)	한-칠레 FTA는 반덤핑조치분쟁에 대해 당해 협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WTO절차에 따르도록 함.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유형	NAFTA(제1902.1조) 미국-싱가포르 FTA(제2.13조) 칠레-멕시코 FTA(제2-01조)	NAFTA는 각 당사국 반덤핑법의 WTO협정과 합의 여부와 반덤핑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양국간 패널에 부탁하도록 함.

할 만한 수입물량(negligible imports) 역시 WTO협정상 3%에서 5%로 상향하고, 반덤핑조치에 대한 자동종료재심 기간을 WTO협정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반덤핑조치의 이용 내지 남용 가능성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그간 WTO차원에서의 반덤핑논의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반덤핑협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론적 관점에서 WTO 반덤핑규정상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 FTA 반덤핑규정은 반덤핑조치의 남용 억제라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유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현행 WTO 반덤핑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형으로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한-칠레 FTA, 일본-싱가포르 FTA 등이 그러하다. 이는 FTA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있어 별도의 규칙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다수 조항이 그 적용에 있어 남용 가능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NA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와 칠레-멕시코 FTA 등에서 이러한 유형의 규정을 두고 있다. FTA 당사국의 국내반덤핑법의 덤핑 및 피해 판정 요건이나 절차 규정 가운데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반덤핑조치의 행사 가능성을 그만큼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다만, 당해 FTA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거나 FTA상 반덤핑조치 행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들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은 WTO 협정과의 합치시킬 의무를 가지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위의 네 번째 유형인 WTO 반덤핑규정의 준용 유형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주요 FTA상 반덤핑규정의 유형별로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이용 가능성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반덤핑조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두 번째 유형은 반덤핑법에 비해 그 발동요건이 매우 엄격한 경쟁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다른 반덤핑규정 유형에 비해 조치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 그 밖의 3가지 반덤핑규정 유형의 경우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형이 조치의 발동 및 이용 가능성이 가장 낮고, 다음이 WTO 반덤핑협정 준용 유형이며,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유형이 반덤핑조치의 행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I-2〉 주요 FTA 반덤핑규정 유형별 반덤핑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 당사국간 반덤핑조치 이용 어려움		당사국간 반덤핑조치 이용 용이함 →		
FTA 당사국들간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 (EFTA-싱가포르; 칠레-멕시코; 캐나다-칠레; EEA; 호주-뉴질랜드)	반덤핑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 적용하는 규정 (EFTA-싱가포르)	WTO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유형 (뉴질랜드-싱가포르)	WTO반덤핑협정 준용 규정 유형 (한-칠레; EC-멕시코; 일본-싱가포르)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 적용 (NAFTA;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3) 정책적 시사점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반덤핑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무역에서 덤핑 자체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수입국의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덤핑의 규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규제 대상 덤핑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가격차별 이외에 다른 생산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약탈적 의도까지를 요구하는 경쟁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WTO 반덤핑협정이 개선된 국제반덤핑규범이기는 하지만 덤핑 및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반덤핑제소, 조사 및 재심 등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규정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마다 반덤핑법 및 정책의 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적극적인 반덤핑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국내 반덤핑법조차 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반덤핑조치도 행사한 적이 없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그 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덤핑 제소 빈도 등도 중요한 지표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간 기업의 수출 관행으로 볼 때 덤핑에의 의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임금에 바탕한 수출지향적 국가일수록 덤핑을 통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제반 요소를 고려할 때, 먼저 미국과 같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행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위험이 큰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 있어서는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이나 적어도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 유형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실익이 크다. 미국과 같이 반덤핑조치에의 의존도가 큰 국내산업이 존재하는 관계로 FTA 협상에서 반덤핑법의 적용 배제나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 유형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반덤핑규범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의 적용 유형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의 반덤핑제도의 운용에 있어 사실상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인 국가들로서 당해 국가의 수출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 전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는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매우 적으리라고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의한 우리나라에의 덤핑 수출 가능성 역시 매우 적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과 같이 반덤핑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본 기업들 중에는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산업 및 생산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덤핑 전략을 활용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협상에서는 현

행 WTO 반덤핑협정의 준용 내지 최소한 강화된 반덤핑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이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출에 대한 대응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 등과 같이 그간 우리나라에의 덤핑 수출 전력이 있고, 향후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덤핑 제소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는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의 적용 유형이나 WTO 반덤핑협정 준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거나 또는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여야 되는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의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DDA 반덤핑협상에 있어 현행 협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입장과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WTO 반덤핑협상에 있어 우리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계조치 및 보조금

(1) 주요 FTA에서의 상계조치규정 유형 모색

1) FTA 당사국들간 상계조치의 적용 배제 규정

이는 FTA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상계조치의 이용 가

능성을 상호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 FTA 규정은 WTO 관련 규정의 틀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일부 FTA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EFTA의 경우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³⁴⁵⁾

EEA에서도 동 협정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있어 상계관세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나³⁴⁶⁾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적용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³⁴⁷⁾

2) WTO 보조금 관련 규정의 강화 적용

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들은 반드시 GATT 제6조 및 1979년 보조금규약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⁴⁸⁾ 그런데 호주-뉴질랜드 FTA의 경우 보

345) EFTA 제36조

Anti-dumping measures, countervailing duties and measures against illicit commercial practices attributable to third countries shall not be applied in relations between the Member States.

346) EEA 제26조.

Anti-dumping measures, countervailing duties and measures against illicit commercial practices attributable to third countries shall not be applied in rel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347) EEA 제8조 3항.

348) 호주-뉴질랜드 FTA Article 16(Countervailing action)

1. Neither Member State shall levy countervailing duties on good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Member State, except:

(a)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VI, XVI and XX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done at Geneva on 12 April 1979 (hereinafter in this Article called the "Subsidies Code");

조금 및 국가 지원에 대해 WTO 보조금협정상 관련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이를 규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먼저 호주-뉴질랜드 FTA 제11조에서 당사국들은 1987년까지 역내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일체의 수출보조금과 수출 인센티브를 철폐하기 위해 행동할 것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역내 교역 상품에 대해 협정 부속서 D(Annex D)에 특정된 실적에 기한 수출인센티브를 198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또한 5년 주기의 호주-뉴질랜드 FTA에 대한 제1차 일반검토(General Review) 결과 1988년 산업지원에 관한 합의의사록(1988 Agreed Minute on Industry Assistance)에서는 1990년 7월 1일 이후로 다른 당사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생산장려금이나 유사 조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역내 산업들간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특정적 조치(industry-specific measures)를 채택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1992년 제2차 일반검토 결과 각 당사국은 산업특정적인 비재정적 지원조치(industry-specific non-financial assistance measures)가 역내에 있는 산업들간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주장에 적절한 고려를 할 것에 합의하였다.³⁴⁹⁾ 이는 비재정적 지원조치까지를 규제 가능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WTO 상계조치 관련 규정의 준용 규정

대다수의 FTA에서는 WTO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349) WT/REB111/R/B/2, 2002, p.5.

에 기하여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에서는 각 당사자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상계조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⁵⁰⁾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당사국에 대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GATT 1994 제6조,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 적용된 상계관세의 부과를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³⁵¹⁾

한-칠레 FTA에서도 양 당사국은 WTO 상계조치 관련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³⁵²⁾ 나아가 한-칠레 FTA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취한 상계조치는 협정상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³⁵³⁾ 상계조치

350)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4조(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munity and Mexico confirm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from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351) 일본-싱가포르 FTA Article 14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
5.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imposing, at any time,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s of the other Party :
(b) any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of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352) 한-칠레 FTA 제7.1조 1항.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GATT 제6조, GATT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이하에서 "반덤핑협정") 그리고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353) 한-칠레 FTA 제7.1조 2항.
2.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라 취해진 반덤핑조치, 그리고 GATT 제6조 및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 따라 취해진 상계조치는 이 협정 제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이를 WTO 관할 하에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편 EFTA국가-싱가포르 FTA의 경우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음에 비하여 보조금에 대한 각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는 GATT 1994 제6조 및 제16조와 WTO 보조금협정 그리고 WTO 농업협정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⁴⁾

뉴질랜드-싱가포르 FTA에서도 수출보조금 및 조치가능보조금의 규제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⁵⁾

354) EFTA국가-싱가포르 FTA 제15조 (Subsidi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respect of subsidies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VI and XVI of the GATT 1994,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d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355)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제7조(subsidie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subsidy is as defined in Article 1.1 of the A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 The Parties agree to prohibit export subsidies. "Export Subsidies" means subsidies as defined by Article 3 of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ith the additional provision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at definition extends also to all agricultural products, on all good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2. If either Party grants or maintains any subsidy which operates to increase exports of any product from, or to reduce imports of any product into, its territory, i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subsidisation, of the estimated effect of the subsidisation on the quantity of the affected product or products imported into or exported from its territory and of the circumstances making the subsidisation necessary. In any case in which it is determined that serious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is caused or threatened by any subsidisation, the Party granting the subsidy shall, upon request, discuss with the other Party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subsidisation. This paragraph shall be applied in conjunction with the relevant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SCM Agreement).

3. The Partie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WTO SCM Agreement in respect of actionable subsidies. "Actionable

4) 당사국의 상계조치법의 적용 규정

미국-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상 관세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된 상계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할 뿐³⁵⁶⁾ 달리 상계조치의 행사에 대해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각기 자국의 상계조치법규에 따라 상계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NAFTA의 경우 제19장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상계조치법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³⁵⁷⁾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상계조치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³⁵⁸⁾고 규정함으로써 NAFTA에서는 당사국간에 적용되는 상계조치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상계조치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다만, NAFTA는 각 당사국의 상계조치법의 개정 및 적용이 WTO협정 및 NAFTA의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양국간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⁹⁾ 이는 당사국간의 상계조치의

subsidies' are subsidies referred to as such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WTO SCM Agreement.

4. Each Party shall seek to avoid causing adverse effects to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in terms of Article 5 of the WTO SCM Agreement.

356) 미국-싱가포르 FTA 제2.13조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ustoms duty includes, but does not include any:

.....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357) NAFTA 제1902.1조.

각 체약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에는 각 당사국에게 적절한 경우 관련 법규, 입법사, 규정, 행정관행 및 사법적 선례가 포함된다.

358) NAFTA 제1902.2조.

359) NAFTA 제1903.1조. 여기서 양국간 패널의 설치에 대해서는 부속서(Annex) 1901.2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행사에 있어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 국내법규 및 적용에 있어 WTO협정 및 NAFTA 관련 규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NAFTA에서는 당사국간의 상계조치 사건에 있어 행정당국의 최종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양국간 패널 심사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⁶⁰⁾ 이에 따라 당사국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국간 패널이 수입국 행정당국의 결정을 재심하여, 당해 결정이 수입국의 상계조치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³⁶¹⁾ 이는 한-칠레 FTA에서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분쟁을 당해 FTA의 분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상계조치의 적용에 대해 달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2장(General Definitions)에서 동 협정의 적용상 관세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상계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한다.³⁶²⁾ 따라서 칠레 및 멕시코는 양국간 상계관세의 부과에 있어 자국 상계관세법규에 기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

360) NAFTA 제1904.1조.

361) NAFTA 제1904.2.9조.

362) 칠레-멕시코 FTA 제2-01조.

제2-01조(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customs duty includes any customs or import duty and a charge of any kind impos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a good, including any form of surtax or surcharge in connection with such importation, but does not include any:

.....

(b)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that is applied pursuant to a Party's domestic law;

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³⁶³⁾과 국내지원³⁶⁴⁾에 대해서는 WTO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칠레-멕시코 FTA에서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1년 후 상호간에 이를 철폐하는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³⁶⁵⁾ 반하여 상계관세에 대해서는 달리 향후 철폐에 대한 규정이 없음이 주목된다.

(2) 주요 FTA상 상계조치규정 유형의 평가 및 비교

이상에서는 FTA상 다양한 상계조치 규정의 유형을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바, 첫 번째 유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상계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EFTA, EEA 등이 있는데 EEA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계조치 행사를 허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규정은 FTA 당사국들간에 산업지원제도 전반에 있어 일정한 통일화 내지 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WTO 보조금 관련 규정보다 규제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당사국들간에 있어 정부 보조금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규정인바, 호주-뉴질랜드 FTA가 그러하다. 특히 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산업특정적인 비재정적 지원조치(industry-specific non-financial assistance measures)가 역내에 있는 산업들간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주장에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비재정적 지원조치까지

363) 칠레-멕시코 FTA 제3-13조.

364) 칠레-멕시코 FTA 제3-14조.

365) 칠레-멕시코 FTA 제2-08조.

〈표 VI-3〉 주요 FTA에 있어 상계조치규정의 유형

유형	해당 FTA	비고
FTA 당사국들간 상계조치 적용 배제 유형	EFTA(제36조) EEA(제26조) : 농산물에 대해서만 상계조치 적용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제8조 제3항)	이들 FTA 당사국들은 WTO협정에 따라 제3국에 대해 상계조치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WTO 보조금 협정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는 유형	호주-뉴질랜드(제16조) : 1987년까지 일체의 역내 수출 보조금 및 인센티브의 철폐; 당사국들간 교역상품에 대한 1990년 7월 이후 생산장려금이나 유사 조치 또는 산업 특정적 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호주-뉴질랜드는 주기적 일반적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점진적 철폐를 약속함.
WTO 보조금 협정의 준용 유형	EC-멕시코(제14조) 한-칠레(제7조) 일본-싱가포르(제14조) EFTA국가-싱가포르(제15조) 뉴질랜드-싱가포르(제7조)	한-칠레의 경우 상계조치분쟁에 대해 당해협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WTO절차에 따르도록 함.
FTA 당사국의 상계조치법 적용 유형	NAFTA(제1902.1조) 미국-싱가포르(제2.13조) 칠레-멕시코(제2-01조)	NAFTA는 각 당사국 상계법의 WTO협정과 합치 여부와 상계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양국간 패널에 부탁하도록 함.

를 규제 가능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무역왜곡을 제거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번째 유형은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보조금의 규율에 대해 WTO 상계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한-칠레 FTA, 일본-싱가포르 FTA, EFTA국가-싱가포르 FTA,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등 다수의 FTA가 이를 따르고 있다. 이는 보조금의 규제에 있어서는 FTA 당사국들간의 관계에 대해 달리 특별한 고려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 유형은 상계조치의 적용에 있어 FTA 당사국의 국내 상계조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리킨다. 미국-싱가포르 FTA와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와 칠레-멕시코 FTA에서 이러한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는 FTA 당사국의 국내상계조치법상 보조금의 판정 요건이나 절차 규정 가운데 WTO 상계조치협정의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상계조치의 행사 가능성이 그만큼 용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FTA 당사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거나 FTA상 상계조치 행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들 당사국의 국내 상계조치법은 WTO 협정과 함치성에 관한 다툼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상술한 세 번째 유형인 WTO 상계조치규정의 준용 유형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NAFTA에서는 당사국의 상계조치당국에 의한 최종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양국간 패널심사에 맡기고 있음이 주목된다.

끝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주요 FTA상 상계조치규정 유형별로 당사국들간에 상계조치의 이용 가능성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은 상계조치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밖의 유형의 경우 두 번째 유형이 이용 가능성이 가장 낮고, 세 번째 및 네 번째 순으로 그만큼 상계조치의 이용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I-4〉 주요 FTA 보조금규정 유형별 상계조치의 행사 난이도 비교

← 당사국간 상계조치 이용 어려움		당사국간 상계조치 이용 용이함 →	
FTA 당사국들간 상계조치 적용배제 유형 (EFTA; EEA)	WTO보조금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유형 (호주-뉴질랜드)	WTO보조금협정 준용 규정 유형(EC-멕시코; 한-칠레; 일본-싱가포르; EFTA-싱가포르; 뉴질랜드-싱가포르)	FTA 당사국의 상계조치법 적용 (NAFTA; 미국-싱가포르; 칠레-멕시코)

(3) 정책적 시사점

FTA 상계조치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계조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첫째, FTA 협상 상대국이 국내산업 및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에 있어 지원제도가 어떠한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협상 상대국의 그간의 상계조치제도의 운용이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소극적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특히 협상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조치 행사 빈도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 논란을 제기받을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가령 미국 및 EU 등과 같이 그간 우리나라의 보조금 관련 법 및 관행에 대해 보조금 시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오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상계조치규범 협상에서는 FTA 당사국들간에 상계조치

적용 배제 유형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타결 가능성은 매우 적으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당사국들간의 상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간에 보조금 관련 국내 제도에 있어 상당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제도는 물론 향후 그러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NAFTA에서와 같이 당사국의 상계조치법에 따르도록 하는 유형의 경우 조치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FTA 보조금규범 협상에서는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준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

(1) 특정품목에 대한 특별 규정 도입의 의의

중전의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고, 현행 WTO협정 역시 상품무역이 핵심 규율대상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GATT 1947이나 WTO 상품무역관련 협정은 상품무역 전반을 규율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일부 특정품목부문(specific products sectors)에 대해서는 그 적용에 있어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가령 GATT 1947의 경우 섬유 및 의류제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농산물 역시 사실상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WTO협정의 경우에도 농산물, 섬유 및 의류제품, 정보통신제품[information technology(IT) products]이나 민간항공기와 정부조달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협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특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라 함은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무역자유화의 약속수준이 그 밖의 제품과 비교하여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드물게 IT제품의 경우에서처럼 오히려 훨씬 완화되어 있거나 또는 그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주요 FTA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 분석

1) 농산품

① NAFTA의 농업무역규정

i) 농업무역규정의 특징

NAFTA의 제7장 A절 농업규정은 농산품 무역과 관련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적용되는바, 당해 농업규정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A절의 농업규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³⁶⁶⁾ 다음으로 NAFTA는 농산품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관련하여 3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율방식 대신에 양자간 관계로 규율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제7장에 대한 부속서에서 멕시코-미국간³⁶⁷⁾ 그리고 캐나다-멕시코간³⁶⁸⁾의 농산품과 식료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캐나다-미국간의 농업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캐나다-미국 FTA의 관련 규정이 상당 부분 계속 적용된다. 반면에 국내지원이나 수출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제7장의 다른 규정은 3개 당사국 모두에 적용된다.³⁶⁹⁾

366) NAFTA 제701.2조.

367) NAFTA Annex 703.2 Section A.

368) NAFTA Annex 703.2 Section B.

369) NAFTA Annex 702.1, 제1항.

ii)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농산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관한 NAFTA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즉,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는 3국간에 철폐되지만,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각 당사국이 특정 타방 당사국에 대해 행한 약속에 따라 즉, 양자간 관계에서 5년, 10년 또는 15년의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미국간의 관세 인하를 보면, 광범위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NAFTA가 발효된 1994년 즉시 철폐되어 양국간에 교역되는 농산품중 대략 절반이 무관세 대우를 받았다. 나머지 대다수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2003년까지 철폐되었고, 일부 가장 민감한 품목(370)의 경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2008년 완전 폐지된다.³⁷¹⁾

다음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각기 전통적으로 실시하여 온 농산품에 대한 수량제한이나 수입허가 및 기타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였다. 여기서 “관세화”(tariffication)라 함은 그러한 무역제한조치들을 상응하는 관세나 관세율쿼타(tariff-rate quota : TRQs)로 변환시킴을 의미한다. 관세율쿼타는 수입품의 수량에 따라 적용 관세율의 수준을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입 수량이 많을수록 관세율도 그만큼 높게 된다. 이를 위하여 멕시코와 미국은 농산품에 대한 수량제한을 부과할 GATT상 자국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³⁷²⁾ 많은 관세율쿼타가 보다 낮은 수입물량에 있어 무관세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³⁷³⁾

370) 15년의 단계적인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가장 민감한 농산품으로는 멕시코로 수입되는 미국산 옥수수와 건조된 콩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오렌지주스와 설탕이 있다.

371) NAFTA Annex 302.2, 제1항.

372) NAFTA Annex 703.2, Section A, 제3항.

이 밖에 미국은 자국의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를 멕시코산 수입농산품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³⁷⁴⁾

한편 캐나다의 경우 멕시코와의 양자간 농산품무역에 있어 관세인하와 관련 낙농제품, 가금 및 계란을 제외함으로써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이나 GATT상 관세양허는 그대로 존속된다.³⁷⁵⁾ 다만 시리얼, 고기 및 마아가린 등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철폐하였다.³⁷⁶⁾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은 NAFTA협상에서 양국간 농산품무역에 있어 각자의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고, 대신 캐나다-미국 FTA의 관련 규정을 NAFTA로 수용, 적용하기로 하였다.³⁷⁷⁾

iii) 농산물 등급 및 마케팅 기준

미국과 멕시코는 일방 당사국이 자국 농산물의 분류, 등급(grading) 또는 마케팅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동 조치에 따라 자국 농산품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유사 농산품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³⁷⁸⁾

373) Folsom etc., p.148.

374) NAFTA Annex 703.2 Section A, 제8항.

375) NAFTA Annex 703.2 Section B, 제7항.

376) Trebilcock & Howse, p.252.

377) NAFTA Annex 702.1.

378) NAFTA Annex 703.2 Section A, 제23항.

iv)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농산품무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해집단의 후원을 받는 관계로 NA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부속서 703.3에 열기한 농산품³⁷⁹⁾에 대해서는 협정 제8장상 긴급조치 대신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⁸⁰⁾ 농업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율쿼타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³⁸¹⁾ 수입당사국은 수입물량이 지정된 발동 수준(trigger levels)에 도달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수입당사국은 1991년 1월 1일 시행중인 MFN 관세나 동 국가의 현행 MFN 관세중 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NAFTA 농산품 무역에 적용되는 발동 수준은 매년 상향되도록 하여, 특별 세이프가드의 의존을 그만큼 어렵게 하였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농업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의 행사가 금지된다.

v) 국내지원 및 수출보조금

NAFTA 당사국들은 국내지원조치가 자국의 농업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조치가 무역왜곡 및 생산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국내농업지원조치를 도입하더라도 무역왜곡효과가 미미하거나

379) 참고로 캐나다의 특별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에는 Fresh cut flowers and flower buds, fresh or chilled tomatoes, onions or shallots, cucumbers or gherkins, strawberries 등이 포함되어 있고, 멕시코의 리스트에는 live swine, meat of swine, potatoes, apples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리스트에는 tomatoes (except cherry tomatoes), onions and shallots, chili peppers, watermelons 등이 포함되어 있다.

380) NAFTA 제703.3조.

381) NAFTA 제703.3조.

전혀 없는 그러한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³⁸²⁾ 또한 당사국은 국내지원조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국의 GATT상 의무에 따를 것을 약속하였다.³⁸³⁾

다음으로 NAFTA는 농산품무역 규율에 있어 최대 난제인 수출보조금에 대해 당사국들은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한 GATT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한 수출보조금이 수입당사국 및 수출당사국 양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수입당사국의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³⁸⁴⁾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미국 FTA에서는 양국간 농산품무역에 있어 수출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NAFTA에서는 멕시코에 대해서까지 이를 확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NAFTA에서는 농업 수출보조금 조치를 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입당사국에게 서면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⁵⁾ 또한 농업보조금작업반(Working Group on Agricultural Subsidies)을 설치하여, 당사국간의 농산품 수입의 수량 및 가격을 감시하고, 수출보조금의 규제에 관한 합의 도달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³⁸⁶⁾ NAFTA에서는 어느 당사국이 판단하기에 비회원국이 다른 당사국 시장에 수출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농산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당사국이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수입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특정 조치에 관한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출당사국과 협의하도록

382) NAFTA 제704조.

383) Id.

384) NAFTA 제705.1-2조.

385) NAFTA 제705.4조.

386) NAFTA 제705.6조.

하고, 당해 수입당사국이 합의된 조치를 채택할 경우 수출당사국은 당해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⁷⁾

한편 상술한 수출보조금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NA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그 출처를 불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자국으로 수입된 농산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³⁸⁸⁾

②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농수산물무역규정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3절에서는 농산물 및 수산물 무역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멕시코산 및 EC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의 철폐 일정 및 대상 품목에 대해 규정한다.³⁸⁹⁾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간의 농수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부속서 I 및 II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쿼타수량을 재검토한다.³⁹⁰⁾

③ 칠레-멕시코 FTA의 농축산물 및 기초식료품 무역규정

칠레-멕시코 FTA는 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농축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387) NAFTA 제705.3조.

388) NAFTA 제705.7조 (b)항.

389)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8조~제9조.

390) EC-멕시코 상품무역 FTA 제10조 1-2항.

WTO협정들 안에서 농축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한다.³⁹¹⁾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 어느 당사국도 양국간 교역에 있어 농축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³⁹²⁾ 2003년 1월 1일까지 어느 당사국이 농축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도입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당해 수출품에 대해 MFN 관세율까지 수입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³⁹³⁾

다음으로 칠레-멕시코 FTA는 멕시코와 관련하여 기초 식료품(basic foodstuffs)³⁹⁴⁾에 대해 매우 독특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즉, 멕시코는 당해 식료품 지원에 관한 국내 프로그램의 목적상 또는 국내 소비자 및 가공업자에 대한 공급 물량의 보장을 위하여 그리고 당해 식료품의 국내가격이 정부의 안정화프로그램에 의해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초식료품과 그 구성품 및 부산물에 대해 조세나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³⁹⁵⁾ 이와 관련 멕시코는 당해 식료품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 즉, 칠레로의 당해 식료품의 수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세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다.³⁹⁶⁾

391) 칠레-멕시코 FTA 제3-13조 제1항.

392) 칠레-멕시코 FTA 제3-13조 제2항.

393) 칠레-멕시코 FTA 제3-13조 제5항.

394) 참고로 식물성 기름, 쌀, 참치통조림, 흑설탕, 동물 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3-11, 제3항.

395)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 3-11, 제1항.

396)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 3-11, 제2항.

2) 섬유 및 의류

① NAFTA의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도입 배경

NAFTA의 체결에 따른 섬유 및 의류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국은 미국과 멕시코이다. 이는 그 간 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지역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된 섬유를 수입,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의류를 미국에 재수출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간의 오래된 섬유 및 의류생산에 있어 분업 구조로 인해 NAFTA의 체결이 미국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섬유 및 의류부문에 있어 각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섬유산업은 NAFTA의 체결로 인해 對 멕시코 섬유수출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섬유산업이 북미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생사 및 직물의 생산업체인데, NAFTA의 체결로 미국산 섬유제품이 멕시코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관세 및 수량 제한에 있어 특혜를 받는 반면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NAFTA 비회원국산 섬유제품은 멕시코로부터 기존의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이다.³⁹⁷⁾

반면에 미국의 의류산업은 NAFTA의 체결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의류생산에 대한 미국의 對 멕시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397) USITC, Potential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Selected Industrie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Report to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the Financ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Jan. 1993, p.8-2 ; 김현중, p.170.

장기적으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내 의류생산업체의 생산 및 고용에 있어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³⁹⁸⁾

② NAFTA의 섬유 및 의류무역관련 규정

첫째,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NAFTA의 섬유 및 의류제품 규정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NAFTA 원산지를 부여받은 의류 및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바,³⁹⁹⁾ 그 일정은 캐나다-미국, 멕시코-미국 그리고 캐나다-멕시코간 무역별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 이행된다.⁴⁰⁰⁾

둘째, 섬유 및 의류 무역의 금지나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NAFTA는 관세철폐에서와 마찬가지로 NAFTA 3국이 각기 양국간의 무역관계별로 수량제한 등의 철폐 일정을 달리 규정한다.⁴⁰¹⁾

셋째, NAFTA는 상술한 섬유 및 의류무역에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조치에 따른 다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양자간 조치로서 관세 및 수량제한의 감축 정지나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⁴⁰²⁾

398) Id ; 김현중, pp.170~171.

399) NAFTA Annex 300-B, Section 2.

400) NAFTA Annex 300-B, Appendix 2.1.

401) NAFTA Annex 300-B, Appendix 3.1.

402) NAFTA Annex 300-B, Section 4.5.

넷째, 당사국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NAFTA 부속서 401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의 시행 효과를 모니터하고, 동 규정의 시행으로 초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⁴⁰³⁾

3) 자동차

① NAFTA의 자동차무역 규정

자동차는 비록 공산품의 한 품목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일 뿐만 아니라 동 품목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따라서 NAFTA에서의 자동차 부문에 관한 협상 결과가 당사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 역시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NA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 관한 논의는 큰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부속서 300-A에서 자동차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NA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자동차 무역 및 투자는 캐나다와 미국간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간의 관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바, 이들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캐나다-미국간 자동차 무역을 살펴보면, 양국은 1965년 캐나다 및 미국 정부간 자동차제품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Automotive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약칭 ‘자동차의정서’(Auto Pact)]와 캐나다-미국

403) NAFTA Annex 300-B, Section 7.

FTA의 체결로 양국간 자동차 무역과 투자에 있어 자유화를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 NAFTA에서는 양국간의 기존 협정을 존속시키되 다만, 원산지규정은 캐나다-미국 FTA의 규정 대신에 지역가치함량 비율을 강화한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⁴⁰⁴⁾ 이에 따라 승용차와 경량 트럭의 경우 62.5% 그리고 그 밖의 차량과 부품에 대해서는 60%의 지역가치함량(RVC) 요건이 2002년 전면 적용된다.

다음으로 멕시코-미국간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NAFTA의 체결로 가장 기대를 갖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 및 투자이다. 그 이유는 멕시코가 전통적으로 자국의 자동차 부문을 규제하여, 이 부분의 투자 및 무역 모두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NAFTA의 체결로 멕시코는 첫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부가하여야 하는 국내부가가치[national value added ; 또는 멕시코가치(Mexican value)]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만 한다. 가령 1994년에는 34%, 2003년에는 29%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멕시코내 공급자들로 부터의 자동차 부품 구입 비중을 점차 낮출 수 있게 된다.⁴⁰⁵⁾ 둘째, 멕시코는 1989년 “자동차 산업 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대통령) 명령”[Decree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 약칭 ‘자동차명령’(Auto Decree)]과 1990년 동 시행규정을 통해 그러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NAFTA는 멕시코가 1989년 자동차명령을 2003년 말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⁴⁰⁶⁾

404)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1, 제1항

405)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6항.

406)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1항.

자동차 수입을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판매와 연계시켜 제한하는 것은 즉시 철폐하도록 요구함으로써⁴⁰⁷⁾ 동 명령을 개정해야만 하였다. 셋째, NAFTA는 멕시코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들이 제조하여 수출한 자동차 및 그 부품 가액에서 이들이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의 가액을 감하여 계산되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개념⁴⁰⁸⁾과 관련하여 멕시코의 자동차무역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⁴⁰⁹⁾ 넷째, 멕시코는 1998년 말까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의 자동차수송차량의 수입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⁴¹⁰⁾ 다섯째, 멕시코는 중고차의 수입에 대한 금지를 2008년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2009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차량의 수명을 기초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⁴¹¹⁾

② 칠레-멕시코 FTA의 자동차무역 규정

칠레-멕시코 FTA 제3-15조는 자동차부문에 관한 조문이나 구체적 규정은 부속서 3-15에서 규정한다. 동 부속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칠레로부터 일정 품목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자동적으로 사전 수입허가를 한다.⁴¹²⁾ 또한 HS 8703에 속하지 않으나 협정 제4장[원산지규정] 하부 항목에 속하며 최소한

407)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17항.

408)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12,27항.

409)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12항 이하.

410)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21~23항.

411) NAFTA Annex 300-A, Appendix 300-A.2 (Mexico), 제24항.

412)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 3-15, 제1항.

거래가 기준 16% 또는 순비용 기준 13%의 현지 부품을 사용한 그러한 자동차품목에 대해 멕시코는 칠레로부터 연간 5,000대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칠레는 멕시코로부터 전년도에 수입된 자동차 대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물량의 연간 수입을 무관세로 허용해야 한다.⁴¹³⁾ 또한 당사국은 수입쿼타의 관리 및 할당에 있어 선착순제를 적용해야 한다.⁴¹⁴⁾

4) 에너지·기초유화제품

① NAFTA의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규정 도입 배경 및 특징

캐나다-미국 FTA 교섭에서 캐나다가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끝내 문화산업 분야를 FT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부문이 바로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이었다. 멕시코는 1917년 헌법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개발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광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및 참여도 제한하였다. 그 결과 PEMEX(국영 석유·가스·기초유화)와 CFE(국영전기)가 이들 부문을 독점하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은 캐나다-미국 FTA 및 NAFTA를 통하여 자국 에너지 수요에 대한 안보적 차원에서 의 보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국 NAFTA는 에너지와 기초 유화제품에 관한 제6장冒頭에서 “당사국은 자신들의 헌법

413)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 3-15, 제2항.

414) 칠레-멕시코 FTA 부속서 3-15, 제6항.

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인한다”⁴¹⁵⁾는 이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부문에 대한 상술한 독점, 제한 그리고 헌법적 기초를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고, 단지 부분적인 약속만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한편 NAFTA 에너지규정에서는 멕시코에 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령 당사국의 GATT 제20조(g)호 등에 따른 에너지 및 유화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으려면 이전 기간의 수출 실적에 비례할 것 등의 여러 단서를 부과하고 있는바, 멕시코와 다른 당사국간의 관계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⁴¹⁶⁾이나 국가안보조치에 관한 협정 제607조가 멕시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나 권리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협정 제2102는 멕시코와 다른 당사국들 간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⁴¹⁷⁾ 등이 그러하다.

② NAFTA의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무역 규정

i) 관련 제품의 수출입제한 및 수출세 등

NAFTA는 먼저 동 협정상 확립된 권리 및 의무의 준수를 조건으로 당사국이 에너지 및 유화제품 거래에 대한 수량제한 및 다른 제한과 관련하여 GATT 규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NAFTA는 최저 또는 최고 수출가격(minimum or maximum export-price) 및 수입가격 요건의 부과를 금지한

415) NAFTA 제601.1조.

416) NAFTA Annex 605.

417) NAFTA Annex 607.

다.⁴¹⁸⁾ 이와 관련 NAFTA에서는 어느 당사국이 에너지 및 유화제품의 비당사국과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에너지 및 유화제품의 다른 당사국 영토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⁴¹⁹⁾ 이 밖에도 각 당사국은 에너지 및 유화제품의 수출입허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⁴²⁰⁾

다음으로 NAFTA 당사국은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의 수출에 대한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그러한 세금 및 부과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당해 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²¹⁾

ii) 에너지규제조치

NAFTA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에너지규제 담당 기관이 에너지규제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도로 계약관계의 붕괴를 피하고, 당해 규제조치에 적합한 분별있고, 형평스런 시행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²⁾ 그렇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미국조차 “독립적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와 공공의사업위원회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한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⁴²³⁾

418) NAFTA 제603.1.2조.

419) NAFTA 제603.3조.

420) NAFTA 제603.5조.

421) NAFTA 제603.4조.

422) NAFTA 제606.2조.

iii) 국가안보

NAFTA에서는 캐나다-미국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국 군대에의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ATT 제21조나 협정 제2102조(국가안보)하에서 에너지나 기초 유화제품의 다른 당사국에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⁴²⁴⁾ 이 규정은 미국이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미국의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⁴²⁵⁾ 다만 멕시코는 NAFTA 제2102조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에 대한 일반규정에만 구속된다.⁴²⁶⁾ 따라서 미국은 캐나다-미국 FTA하에서 캐나다로부터 얻어낸 것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안보를 멕시코로부터 받아낼 수 없게 되었다.

5) 증류주 · 방송기기 · 추잉검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증류주, 방송기기 및 추잉검에 대한 시장접근과 관련 먼저 싱가포르는 수입산 및 국산 증류주에 대한 물품세를 통일시킬 것과 치료효과를 가진 추잉검에 대한 수입을 허가할 것을 규정한다.⁴²⁷⁾ 그리고 당사국은 위성 접시안테나를 포함한 방송기기에 대한 수입금지를 유지해서는

423) Folsom etc., p.145.

424) NAFTA 제607조.

425) NAFTA Annex 607 제1항.

426) NAFTA Annex 607 제2항.

427) 미국-싱가포르 FTA 제2.9조, 제2.11조.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⁴²⁸⁾

(3) 주요 FTA와 WTO협정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간 비교

주요 FTA중 특정품목 무역에 대해 별도의 특별 규정을 가진 FTA는 NAFTA, EC-멕시코 FTA, 칠레-멕시코 FTA, 미국-싱가포르 FTA 등이며, 한-칠레 FTA, EFTA국가-싱가포르 FTA 및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FTA상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 대상을 보면, 농수축산물 3건의 FTA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장 많고, 자동차가 2건의 FTA에서 그리고 섬유 및 의류, 에너지·기초유화제품, 증류주·방송기기·추잉검 등이 각 1건의 FTA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다자간무역체제인 WTO협정에서는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특별 협정이 있다.

먼저 FTA에 있어 농산품 무역에 대한 특별 규율이 도입된 배경을 보면, 농산품과 식료품은 국제무역에 민감한 대표적 분야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는 농산물의 특성상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등락폭이 크고, 특히 생산국에 따른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의 차이 역시 크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업부문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NAFTA는 농산물, EC-멕시코 상품무역 FTA는 농산물 및 수산물, 칠레-멕시코 FTA는 농·축산물 및 기초식료품에 관해 각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428) 미국-싱가포르 FTA 제2.10조.

마찬가지로 GATT/WTO체제하에서도 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한 식량의 자급자족정책, 휴경지의 확대에 의한 환경문제와 농촌실업문제 및 농산물의 속성상 비롯된 수급 조절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때문에 일찍이 GATT시기부터 농산물무역에 대해서는 GATT상 기본의무에 대한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 UR협상에서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Cairns그룹이 국가의 농업정책을 다자간무역규범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WTO 농업협정이 별도로 채택, 규율되기에 이르렀다.

〈표 VII-1〉 주요 FTA와 WTO협정의 특정품목 무역 규율 규정 비교

특정품목	NAFTA	한-칠레	EC-멕시코	칠레-멕시코	EFTA-싱가포르	일본-싱가포르	미국-싱가포르	WTO협정
농산물	○		○	○				○
축산물				○				
수산물			○					
기초식료품				○				
섬유·의류	○							○
자동차	○			○				
에너지·기초 유화제품	○							
증류주, 방송기기, 추잉검							○	
정보기술(IT)제품 ¹⁾								○
민간항공기 ²⁾								○

주 : 1) 정보기술제품은 1997년 채택된 제1차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 I)에 의해 규율됨.

2) 민간항공기는 복수국가간무역협정(PTA)에 의해 규율됨.

여기서 NAFTA의 농업규정은 WTO 농업협정과 유사하게 농업무역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EC-멕시코 FTA 관련 규정은 사실상 농산물 관세 감축 양허 표에 상당하는 것이고, 칠레-멕시코 FTA에서는 농축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특히 기초 식료품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물량의 확보와 공급부족시 일시적 수출세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이 독특하다.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를 보면 NAFTA에서는 무엇보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미국 의류산업계의 생산 및 고용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해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섬유 및 의류무역의 다자간무역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도입 취지가 다르다.

이 밖에 NAFTA에서의 자동차 및 에너지·기초유화제품에 대한 특별 규율은 전자의 경우 미국 및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며, 후자는 멕시코에 있어 에너지·기초유화제품 분야는 오랜 동안 국가독점사업에 속하였던 역사적 배경에 기초한 것이었다.

(4) 정책적 시사점

본래 FTA는 당사국들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NAFTA, 칠레-멕시코 FTA 및 EC-멕시코 FTA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입자유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농축수산품의 보호나 기초식료품의 안정적 수급 필요,

멕시코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영기업에 의해 발전되어 온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생산업계의 보호 내지 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필요, 자동차와 같이 국내산업과 투자 및 무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가진 산업에의 영향 최소화 등 특정 국가가 직면하여 있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FTA에서 이들 분야 및 품목의 무역에 관해 무역자유화를 완화 내지 유보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FTA의 추진에 있어 교섭 상대국별로 그러한 특별 대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품목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내 고용, 생산 및 수출 등에 있어 비중이 큰 품목이면서도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경쟁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품목이 그러한 특별규정의 우선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국내의 특수한 사정을 가진 품목의 경우 FTA에서 이에 관한 특별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보다는 협상 상대국과의 양허협상 등을 통해 그러한 특정품목에 대한 자유화 약속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일본-싱가포르 FTA에서 농산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도입하는 대신에 농산물에 대한 양허협상에서 상당수의 농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협정의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유보시킨 것이 그러하다.



결론 : FTA 상품무역규정 이슈별 한국의 협상가이드라인

1. 내국민대우 등과 관련하여⁴²⁹⁾

1-1	<p>향후 FTA 협상시 내국민대우 규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서와 같이 GATT 1994 제3조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제3조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과 이를 위하여 GATT 제3조 및 주석 규정이 당해 FTA에 수용,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봄.</p> <p>· 특히, 후자의 문구는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예외인 스크린쿼타의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함.</p>	중
1-2	<p>일부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정부는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그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국내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p>	중
1-3	<p>EFTA국가-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최혜국대우 부여를 위한 협상 기회 제공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이는 자칫 당사국간은 물론 비당사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p>	하

429) 박스로 된 협상가이드라인의 맨 우측 칼럼의 "상", "중", "하" 표시는 동 가이드라인의 중요도를 가리킨다.

2.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p>2-1</p>	<p>FTA에 있어 관세철폐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당사국들간에 있어 교역의 증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p> <p>→ 따라서 FTA 협상 상대국과의 교섭에 있어 우리의 관세철폐 대상의 예외나 이의 유예 품목을 확대하려고만 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그러한 예외 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p>	<p>상</p>
------------	--	----------

<p>2-2</p>	<p>FTA 협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의 격차 등으로 관세철폐의 영향이 큰 산업 및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취약산업 및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따른 10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잠정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임.</p> <hr/> <p>· 잠정기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 및 품목별로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적절한 기간-가령 5년후 철폐, 7년후 철폐, 10년후 철폐 등-을 설정, 해당 품목을 양허하여야 할 것임.</p> <hr/> <p>· 양허에 있어서도 당해 품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칠레 FTA의 우리측 양허안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예방법을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음.</p> <hr/> <p>· 어느 상품을 어떤 단계[얼마의 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상품의 경쟁력과 수입 민감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p> <hr/> <p>· GATT 1994 제24조 해석 양해에서는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극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이 넘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p>	<p>상</p>
------------	--	----------

2-3	<p>GATT 1994 제24조에서는 모든 무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환언하면 이는 어느 정도 제한된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의 유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p> <p>·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의미와 관련, WTO 사무국은 당사국들간 무역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 것과 무세화 적용 대상을 HS 6단위 기준 세번 품목 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 것의 수량적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란 요건에 합치하는 무역자유화 비율의 최저기준(threshold)으로서 WTO 사무국이 예시적으로 제안한 95% 기준이 참조할만하다고 봄.</p> <p>· 또한 질적 접근방안으로서 특정 분야 또는 주요 분야가 FT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아니됨을 유의해야 할 것임.</p> <p>→ 따라서 FTA 관세철폐 협상에서 그러한 관세철폐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국내 특정산업 부문을 사전에 조사, 선정하여, 협상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을 관철시키거나 적어도 전체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p>	상
-----	--	---

3.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3-1	<p>원산지규정의 요체인 원산지결정에 관한 규정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다만, 모든 FTA에 있어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의 원산지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합한 단일의 원산지규정 모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그 이유는 원산지규정은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임.</p> <p>→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협상에서는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품목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색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며, 품목별 적합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모색에 있어서는 당해 품목에 있어 양국간 경쟁력 등의 조사 비교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인식해야 할 것임.</p>	상
-----	--	---

206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3-2	<p>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무엇보다 FTA 체결에 따른 역외 제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원산지규정 자체 및 그 운용이 수출입업자들에게 부담스런 절차로 작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투명하고, 단순한 규정을 도입하도록 할 것 ·셋째, 국내취약산업 및 품목에 있어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가능한 FTA 체결에 따른 역내 교역 및 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임. 	상
3-3	<p>FTA 체결에 따른 역외 제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함으로써 협정상 특혜무역대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기준상 역내가치포함(RVC) 비율이나 캐나다-칠레 FTA의 우회방지규정 등을 포함한 불인정공정 리스트의 활용이 유용하리라고 봄.</p>	중
3-4	<p>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과 비교할 때 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특정가공공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방식 및 공정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해서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p> <p>→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번변경기준을 주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p>	중
3-5	<p>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을 도입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만큼 역내무역의 창출이 기대되며, 따라서 최소허용수준의 도입은 바람직하리라고 보여짐.</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 최소허용수준의 기준은 우회수입의 방지를 위해서는 낮은 것이 유리하겠지만 원자재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해외부품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있어서는 이를 10% 수준까지 높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p>	중

<p>3-6</p>	<p>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NAFTA형을 따를 경우 역내가치함량 (RVC) 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높게 규정할 경우 역내 생산자가 FTA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 역내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생산자로서는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p> <p>→ 따라서 역내가치포함 비율은 우리나라 완제품에 있어 부품의 전반적인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하되, 상술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한-칠레 FTA에서와 같은 중간적 수준(45%~30%)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봄.</p> <hr/> <p>· 부가가치기준과 관련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계산시 적용되는 거래 가격방법과 순비용방법중 前者는 계산이 편리한 반면에 관계자간의 거래시 왜곡 가능성이 있고, 後者は 그러한 단점이 없는 대신에 계산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이 점에서 계산방법은 양자의 방법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규정,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봄.</p>	<p>중</p>
<p>3-7</p>	<p>특정품목에만 적용되는 특별 원산지규정은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입에 민감한 그러한 분야 및 품목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것임. 수입에의 민감도는 당해 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p> <p>→ 따라서 FTA 협상국과의 관계에서 특별 원산지규정을 도입,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품목의 존재를 조사,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p>	<p>중</p>
<p>3-8</p>	<p>FTA 원산지규정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투자와 관련하여 원산지규정의 활용 가치가 중요함. 이 점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북미 및 유럽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특히 PANEURO형에서 많이 이용되는 누적규정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봄. 이 경우 우리 기업 및 무역업자들은 투입재료의 사용이나 생산설비의 투자국의 판단에 있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임.</p>	<p>중</p>

3-9	<p>원산지규정 협상에 있어 우리의 산업, 무역 및 투자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 규정을 입안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규정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기 쉬움. 그러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로서 행정 및 운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기업들 역시 규정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임.</p> <p>· 이 점에서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및 무역 등에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 및 품목들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장점을 가진 세번변경기준의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봄.</p>	중
-----	---	---

4.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하여

4-1	<p>선진국과의 FTA 기술규정 협상에서 일본-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상호인정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그 실익이 매우 큼. FTA 협상 의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흥정(bargaining)이 오가기 마련이므로 정부는 FTA 기술규정안에 상호인정조항의 도입을 위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p> <p>· 여기에서는 FTA 협상 당사국이 발급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서, 인증서 및 마크 등 일체를 협상 당사국들간에 상호 인정해 주도록 하는 상호인정협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FTA 협상국과의 기술규정협상에 앞서 상호인정 도입 실익이 큰 공산품목의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p>	상
4-2	<p>선진국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 상호인정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의 도입 및 운용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가급적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p> <p>· 이를 위해서는 WTO TBT협정 준용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WTO TBT협정의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도입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봄.</p>	중

4-3	<p>개도국들과의 FTA TBT 규정 협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WTO TBT 플러스형의 채택이 무난하리라고 판단됨.</p> <p>'다만, 협상 상대국의 기술기준 및 인증절차의 운영과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의 구성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WTO TBT 준용형이나 상호인정규정 도입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p>	중
-----	---	---

5.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5-1	<p>농축산물 수출국들과 FTA를 교섭하는 경우 FTA의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무역 자유화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타방 협상 당사국 농산품의 국내시장에의 접근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리라고 판단됨.</p> <p>'이 점에서 농축산물 수출국들과의 FTA SPS조치 규정 협상에서는 일견 SPS조치 규정의 도입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NAFTA형을 모델로 할 경우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는 물론 간접적으로 국내 관련 생산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p> <p>· 그렇지만 이 경우 자칫 당사국들간에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에 있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SPS조치의 도입에 있어서는 과학적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실제에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p> <p>→ 따라서 한-칠레 FTA SPS조치규정에서와 같이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 관련 규정을 입안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고 판단됨.</p>	중
-----	---	---

5-2	<p>농축산물의 수출품목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서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입안하기 보다는 EC-멕시코 상품무역 FTA의 SPS조치 규정에서와 같이 이에 관해서는 WTO SPS협정을 따르도록 한다는 준용 규정만을 도입하는 것도 협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여짐.</p>	중
-----	---	---

6. 세이프가드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6-1	<p>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유형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협상 상대국간에 있어 주요 산업 및 품목별 경쟁력 비교를 통해 향후 FTA 발효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양국 산업 및 품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p> <p>'그 이유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입국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임.</p>	상
6-2	<p>FTA 세이프가드규범은 다양한 유형의 규정을 도입할 수 있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다양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규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p> <p>→ 따라서 향후 FTA 세이프가드규범협상에서는 협상 상대국별로 우리에게 적합한 일종의 '맞춤형 세이프가드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큼.</p>	상
6-3	<p>FTA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및 품목이 비교 열위에 놓여 있는 분야 및 품목이 절대 다수인 경우에는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결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에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품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p> <p>→ 따라서 이러한 협상 대상국과의 FTA 세이프가드규정 협상에서는 가능한 한 당사국간 세이프가드조치 행사가 용이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할 실익 및 필요가 크다고 봄.</p> <hr/> <p>· 구체적으로 EC-멕시코 상품무역 FTA나 EFTA 등에서와 같이 양자간 조치의 발동요건을 심각한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이 추가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 또한 양자간 조치의 발동기간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체제하에서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 WTO 세이프가드협정 관련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만큼 FTA 세이프가드협상에서 이의 관철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전체 협상과정에서 레버리지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p> <hr/> <p>· 다만, 이 경우 다자간 조치의 적용면제 규정은 다른 당사국 상품이 국내산업피해 발생의 주요 수입원일 수 있어 도입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p>	상

6-4	<p>우리나라와 FTA 협상 상대국간에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동등하거나 경합적인 산업 및 품목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준용 규정을 도입하거나 협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일부 도입하는 수준에서의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이면 무난하리라고 봄.</p>	중
6-5	<p>FTA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경쟁품목에 있어 우리나라가 공산품분야에서 전반적인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들간에 세이프가드조치의 행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이 일견 유리할 수 있음. 그렇지만 FTA에 있어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 교섭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태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에서 그 이용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p> <p>→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WTO 세이프가드협정보다 강화된 기준이 반영된 수준의 세이프가드규정 유형을 채택함으로써 양자간 조치의 행사를 보다 제한하되, 그 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됨.</p> <hr/> <p>· 구체적으로 EFTA국가-싱가포르 FTA 등에서와 같이 양자간조치의 발동기간을 WTO협정에 비해 보다 단축하거나 재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보상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양자간 세이프가드 규정의 도입이 적절하리라고 봄.</p> <hr/> <p>· 이러한 경우 다자간 조치의 적용 면제 규정은 타방당사국으로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므로 도입 실익이 있음.</p>	중
6-6	<p>우리의 FTA 협상 상대국이 농산물이나 섬유 및 의류 등에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FTA 세이프가드규범 협상에서 당해 품목에 대한 양자간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다만, 그러한 특별 세이프가드규정 도입 여부는 양국간 자유화협상을 통해 우리측의 당해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의 범위나 과도기간의 日程 및 대상 품목의 범위가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의 결과와 연관하여 그 도입 여부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p>	중

6-7	<p>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한 다자간 조치의 적용에 있어 면제를 규정하는 옵션조항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타방 당사국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전반적으로 경쟁력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의 도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옵션조항을 도입할 실익이 없을 것임.</p> <hr/> <p>· 반면에 협상 상대국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옵션조항의 도입은 그만큼 역외 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조치의 행사에 있어 우리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므로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봄.</p>	중
-----	---	---

7. 반덤핑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7-1	<p>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반덤핑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p> <p>· 첫째, 덤핑규제를 경쟁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p> <p>· 둘째,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규정이 적지 않음.</p> <p>· 셋째, 국가마다 반덤핑법 및 정책의 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함. 이와 관련 그간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덤핑 제소 빈도 등도 중요한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음.</p> <p>· 넷째, 타방 교섭국 기업들의 수출에 있어 덤핑에의 의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임금에 바탕한 수출지향적 국가인 경우 덤핑을 통한 수출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임.</p>	중
-----	---	---

7-2	<p>가령 미국과 같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행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위험이 큰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 있어서는 FTA 당사국들간에 있어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이나 적어도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 유형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실익이 매우 큼.</p> <p>· 미국과 같이 반덤핑조치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이 존재하는 관계로 FTA 협상에서 상기한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이나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 유형을 관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FTA 전체 협상과정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반덤핑규범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p> <p>·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의 국내 반덤핑법의 적용 유형은 수용해서는 아니됨.</p>	상
7-3	<p>그간의 반덤핑제도의 운용에 있어 사실상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인 국가들로서 당해 국가의 수출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 전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는 당사국들간에 반덤핑조치 적용 배제 유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봄.</p> <p>'그 이유는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매우 적으리라고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의한 우리나라에의 덤핑 수출 가능성 역시 매우 적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임.</p>	중
7-4	<p>가령 일본과 같이 정부는 반덤핑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기업들 중에는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산업 및 생산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덤핑 전략을 활용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협상에서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준용 내지 최소한 강화된 반덤핑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짐.</p> <p>'이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출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임.</p>	중

7-5	<p>가령 중국 등과 같이 그간 우리나라에의 덤핑 수출 전력이 있고, 향후 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덤핑 제소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과의 FTA 반덤핑규범 협상에서는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의 적용 유형이나 WTO 반덤핑협정 준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p>	중
7-6	<p>FTA 반덤핑규범 협상에 있어 반덤핑조치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거나 또는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는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前者의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현재 진행중인 DDA 반덤핑협상에 있어 현행 협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입장과 일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WTO 반덤핑협상에 있어 우리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중

8. 상계조치 및 보조금 규정과 관련하여

8-1	<p>FTA 상계조치규범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계조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FTA 협상 상대국의 국내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특히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 및 품목에 있어 어떠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둘째, 협상 상대국의 그간의 상계조치제도의 운용이 적극적이었는가 아니면 소극적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특히 협상 상대국의 그간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조치 행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 논란을 제기받을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중
-----	---	---

8-2	미국 및 EU 등과 같이 그간 우리나라의 보조금 관련 법 및 관행에 대해 보조금 시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오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상계조치규범 협상에서는 FTA 당사국들간에 상계조치 적용 배제 유형의 도입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만,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짐.	중
8-3	NAFTA에서와 같이 당사국의 상계조치법에 따르도록 하는 유형의 경우 조치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상계조치규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
8-4	결과적으로 FTA 보조금규범 협상에서는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준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유형을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중

9. 특정품목 무역의 규율과 관련하여

9-1	<p>FTA에서는 어느 체약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특정 분야 및 품목에 대해 무역자유화를 완화 내지 유보하는 특별 규정을 두는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함. 따라서 FTA 추진시 교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특별 대우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문 및 품목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여기에 있어서는 국내 고용, 생산 및 수출 등에 있어 비중이 큰 품목이면서도 협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경쟁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품목이 그러한 특별 규정의 우선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p> <p>가령 NAFTA, EC-멕시코 FTA, 칠레-멕시코 FTA 등에서 수입 자유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농축수산물,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기초식료품, 멕시코의 경우 역사적으로 국영기업에 의해 발전되어 온 에너지와 기초유화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이 그러함.</p>	상
-----	--	---

216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p>9-2</p>	<p>FTA 교섭시 특정 품목에 대해 특별대우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상대국과의 양허협상을 통해 그러한 특정 분야 및 품목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p> <p>‘가령 일본-싱가포르 FTA에서 일본은 농산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도입하는 대신에 농산물에 대한 양허협상에서 상대국의 농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협정상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유보시킨 것이 그러함.</p>	<p>중</p>
------------	---	----------

〈참 고 문 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 _____, DDA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범의 개정 논의 및 방향에 대한 분석, 국제경제법학회 2003년 하반기 학술대회 주제발표, 2003.
- 김현중,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21세기 북스, 1989.
- 최진혁 편역,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무역구제 2002. 7 여름호.
- F.M. Abbott, Law and Policy of Regional Integration : The NAFTA and Western Hemispheric Integr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 The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Monash University, An Australia-USA Free Trade Agreement : Issues and Implications, 2001.
- R. Bhala & K. Kennedy, World Trade Law : The GATT-WTO System, Regional Arrangements, and U.S. Law, Lexis Law Publishing, 1998.
- R.H. Folsom & M.W. Gordon & J.A. Spanogle, J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Problem-Oriented Coursebook, America Casebook Series, 1995.
- R. Folsom & W.D. Folsom, Understanding NAFTA and Its International Business Implications, Lexis Publishing, 1999.

- J.A. Frankel & E. Stein & Shang-Jin Wei,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 G.C. Hufbauer & J.J. Schott, Western Hemisphere Economic Integr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 J.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1969,
- J.H. Jackson & W.J. Davey,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86,
- J.H. Jackson, W.J. Davey & A.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antioan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995.
-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apore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2002.
- Kaye Scholer LLP, Safeguards and AD/CVD Regula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2002, Korea Trade Commission.
- O.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E.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Globefield Press, 1995.
- OAS, Investment Agreements in the Western Hemisphere : A Compendium, 1999.

- OECD,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3.
- G. Sacerdoti,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Instruments on Investment Protection, Recueil des Cours, Acade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Vol.269, 1997.
- T.P. Stewart(ed.), The Uruguay Round :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 Michael J. Trebilcock and Robert Howse,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Routledge, 1999.
- TN/RL/W/8.
- U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59-1999, 2000.
- WT/DS121/R ; WT/DS121/AB/R.
- WT/DS166/R ; WT/DS166/AB/R.
- WT/DS202/R.
- WT/REG/W/45.
- WT/REG148/1.
- WTO Newsletter : FOCUS, No.25.
- WTO Secretariat,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1.
- <http://www.ustr.gov/new/fta/Singapore/final.htm>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참고자료〉

분석대상 FTA 조문목차

I. NAFTA

II. 한-칠레 FTA

III-1. EC-멕시코 상품무역분야 FTA

III-2. EC-멕시코 서비스무역분야 FTA

IV. EFTA국가-싱가포르 FTA

V. 칠레-멕시코 FTA

VI. 일본-싱가포르 FTA

VII. 미국-싱가포르 FTA

I . NAFTA

PREAMBLE

PART ONE : GENERAL PART

Chapter One Objectives

- Article 101 :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Area
- Article 102 : Objectives
- Article 103 :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 Article 104 : Relation to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Agreements
- Article 105 : Extent of Obligations
- Annex

Chapter Two General Definitions

- Article 201 :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 Annex

PART TWO : TRADE IN GOODS

Chapter Three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 Article 300 : Scope and Coverage

Section A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301 : National Treatment

Section B - Tariffs

- Article 302 : Tariff Elimination
- Article 303 : Restriction on Drawback and Duty Deferral Programs
- Article 304 : Waiver of Customs Duties
- Article 305 :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Article 306 : Duty-Free Entry of Certain Commercial Samples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Article 307 :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Article 308 : Most-Favored-Nation Rates of Duty on Certain Goods

Section C - Non-Tariff Measures

Article 309 :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Article 310 : Customs User Fees

Article 311 : Country of Origin Marking

Article 312 : Wine and Distilled Spirits

Article 313 : Distinctive Products

Article 314 : Export Taxes

Article 315 : Other Export Measures

Section D - Consultations

Article 316 : Consultations and Committee on Trade in Goods

Article 317 : Third-Country Dumping

Section E - Definitions

Article 318 : Definitions

Annexes

Annex 300-A :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utomotive Sector

Annex 300-B : Textile and Apparel Goods

Chapter Four Rules of Origin

Article 401 : Originating Goods

Article 402 : Regional Value Content

Article 403 : Automotive Goods

Article 404 : Accumulation

Article 405 : De Minimis

Article 406 :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Article 407 :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Article 408 : Indirect Materials

Article 409 :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Article 410 :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Article 411 : Transshipment

- Article 412 : Non-Qualifying Operations
- Article 413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Article 414 : Consultation and Modifications
- Article 415 : Definitions
- Annexes

Chapter Five Customs Procedures

Section A - Certification of Origin

- Article 501 : Certificate of Origin
- Article 502 : Obligations Regarding Importations
- Article 503 : Exceptions
- Article 504 : Obligations Regarding Exportations

Section B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 Article 505 : Records
- Article 506 : Origin Verifications
- Article 507 : Confidentiality
- Article 508 : Penalties

Section C - Advance Rulings

- Articles 509 : Advance Rulings

Section D - Review and Appeal of Origin Determinations and Advance Rulings

- Article 510 : Review and Appeal

Section E - Uniform Regulations

- Article 511 : Uniform Regulations

Section F - Cooperation

- Article 512 : Cooperation
- Article 513 : Working Group and Customs Subgroup
- Article 514 : Definitions

Chapter Six Energy and Basic Petrochemicals

- Article 601 : Principles

- Article 60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603 :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 Article 604 : Export Taxes
- Article 605 : Other Export Measures
- Article 606 : Energy Regulatory Measures
- Article 607 : National Security Measures
- Article 608 : Miscellaneous Provisions
- Article 609 : Definitions
- Annexes

Chapter Seven Agriculture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ection A - Agriculture

- Article 701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702 : International Obligations
- Article 703 : Market Access
- Article 704 : Domestic Support
- Article 705 : Export Subsidies
- Article 706 : Committee on Agricultural Trade
- Article 707 :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regarding Agricultural Goods
- Article 708 : Definitions
- Annexes

Section B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709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710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711 : Reliance on NonGovernmental Entities
- Article 712 :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 Article 713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tandardizing Organizations
- Article 714 : Equivalence
- Article 715 : Risk Assessment and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 Article 716 :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 Article 717 :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 Article 718 : Notification, Publ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719 : Inquiry Points
- Article 720 : Technical Cooperation

- Article 721 : Limitations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722 :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723 : Technical Consultations
- Article 724 : Definitions

Chapter Eight Emergency Action

- Article 801 : Bilateral Actions
- Article 802 : Global Actions
- Article 803 :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 Article 804 : Dispute Settlement in Emergency Action Matters
- Article 805 : Definitions
- Annexes

PART THREE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hapter Nine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901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902 : Extent of Obligations
- Article 903 : Affirmation of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Other Agreements
- Article 904 :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 Article 905 :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 Article 906 : Compatibility and Equivalence
- Article 907 : Assessment of Risk
- Article 908 : Conformity Assessment
- Article 909 : Notification, Publ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910 : Inquiry Points
- Article 911 : Technical Cooperation
- Article 912 : Limitations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913 :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914 : Technical Consultations
- Article 915 : Definitions
- Annexes

PART FOUR :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Ten Government Procurement

Section A - Scope and Coverage and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001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002 : Valuation of Contracts
- Article 1003 :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 Article 1004 : Rules of Origin
- Article 1005 : Denial of Benefits
- Article 1006 : Prohibition of Offsets
- Article 1007 : Technical Specifications

Section B - Tendering Procedures

- Article 1008 : Tendering Procedures
- Article 1009 : Qualification of Suppliers
- Article 1010 : Invitation to Participate
- Article 1011 : 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 Article 1012 : Time Limits for Tendering and Delivery
- Article 1013 : Tender Documentation
- Article 1014 : Negotiation Disciplines
- Article 1015 : Submission,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 Article 1016 :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Section C - Bid Challenge

- Article 1017 : Bid Challenge

Section D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018 : Exceptions
- Article 1019 :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1020 : Technical Cooperation
- Article 1021 : Joint Programs for Small Business
- Article 1022 : Rectifications or Modifications
- Article 1023 : Divestiture of Entities
- Article 1024 : Further Negotiations
- Article 1025 : Definitions
- Annexes

PART FIVE : INVESTMENT, SERVICES AND RELATED MATTERS

Chapter Eleven Investment

Section A - Investment

- Article 1101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102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103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104 :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1105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1106 : Performance Requirements
- Article 1107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Article 1108 : Reservations and Exceptions
- Article 1109 : Transfers
- Article 1110 :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Article 1111 :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 Article 1112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1113 : Denial of Benefits
- Article 1114 : Environmental Measures

Section B -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 Article 1115 : Purpose
- Article 1116 :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 Article 1117 :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 Article 1118 : Settlement of a Claim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 Article 1119 :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120 :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121 : Conditions Precedent to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122 : Consent to Arbitration
- Article 1123 : Number of Arbitrators and Method of Appointment
- Article 1124 : Constitution of a Tribunal When a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or the Disputing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a Presiding Arbitrator
- Article 1125 : Agreement to Appointment of Arbitrators
- Article 1126 : Consolidation

Article 1127 : Notice
Article 1128 : Participation by a Party
Article 1129 : Documents
Article 1130 : Place of Arbitration
Article 1131 : Governing Law
Article 1132 : Interpretation of Annexes
Article 1133 : Expert Reports
Article 1134 :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rticle 1135 : Final Award
Article 1136 : Finalit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Article 1137 : General
Article 1138 : Exclusions
Article 1139 : Definitions
Annexes

Chapter Twelv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rticle 1201 : Scope and Coverage
Article 1202 : National Treatment
Article 1203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ticle 1204 : Standard of Treatment
Article 1205 : Local Presence
Article 1206 : Reservations
Article 1207 :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1208 : Liberalization of Non-Discriminatory Measures
Article 1209 : Procedures
Article 1210 : Licensing and Certification
Article 1211 : Denial of Benefits
Article 1212 : Sectoral Annex
Article 1213 : Definitions
Annexes

Chapter Thirteen Telecommunications

Article 1301 : Scope and Coverage
Article 1302 :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Article 1303 : Conditions for the Provision of Enhanced or
ValueAdded Services

Article 1304 : Standards-Related Measures
Article 1305 : Monopolies
Article 1306 : Transparency
Article 1307 : Relation to Other Chapters
Article 1308 : Relat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s
Article 1309 : Technical Cooperation and Other Consultations
Article 1310 : Definitions
Annex

Chapter Fourteen Financial Service

Article 1401 : Scope and Coverage
Article 1402 :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rticle 1403 :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1404 : Cross-Border Trade
Article 1405 : National Treatment
Article 1406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ticle 1407 : New Financial Services and Data Processing
Article 1408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409 : Reservations and Specific Commitments
Article 1410 : Exceptions
Article 1411 : Transparency
Article 1412 :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Article 1413 : Consultations
Article 1414 : Dispute Settlement
Article 1415 :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Article 1416 : Definitions
Annexes

Chapter Fifteen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Article 1501 : Competition Law
Article 1502 :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Article 1503 : State Enterprises
Article 1504 : Working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Article 1505 : Definitions
Annex

Chapter Sixteen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Article 1601 : General Principles
- Article 1602 : General Obligations
- Article 1603 : Grant of Temporary Entry
- Article 1604 :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1605 : Working Group
- Article 1606 :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607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1608 : Definitions
- Annexes

PART SIX :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Seventeen Intellectual Property

- Article 1701 :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 Article 1702 : More Extensive Protection
- Article 1703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704 : Control of Abusive or Anticompetitive Practices or Conditions
- Article 1705 : Copyright
- Article 1706 : Sound Recordings
- Article 1707 : 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 Article 1708 : Trademarks
- Article 1709 : Patents
- Article 1710 : Layout 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 Article 1711 : Trade Secrets
- Article 1712 : Geographical Indications
- Article 1713 : Industrial Designs
- Article 1714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715 : Specific Procedural and Remedial Aspects of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 Article 1716 :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1717 :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Article 1718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the Border
Article 1719 :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rticle 1720 : Protection of Existing Subject Matter
Article 1721 : Definitions
Annexes

PART SEVEN :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Eighteen Publication, Notif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Laws

Article 1801 : Contact Points
Article 1802 : Publication
Article 1803 :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rticle 1804 :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1805 : Review and Appeal
Article 1806 : Definitions

Chapter Nineteen Review and Dispute Settlement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

Article 1901 : General Provisions
Article 1902 : Retention of Domestic Antidumping Law and Countervailing Duty Law
Article 1903 : Review of Statutory Amendments
Article 1904 : Review of Final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Article 1905 : Safeguarding the Panel Review System
Article 1906 : Prospective Application
Article 1907 : Consultations
Article 1908 : Special Secretariat Provisions
Article 1909 : Code of Conduct
Article 1910 : Miscellaneous
Article 1911 : Definitions

Annexes

Chapter Twent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ection A - Institutions

Article 2001 : The Free Trade Commission

Article 2002 : The Secretariat

Section B - Dispute Settlement

Article 2003 : Cooperation

Article 2004 : Recourse 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rticle 2005 : GATT Dispute Settlement

Article 2006 : Consultations

Article 2007 : Commission -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ticle 2008 :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Article 2009 : Roster

Article 2010 : Qualifications of Panelists

Article 2011 : Panel Selection

Article 2012 : Rules of Procedure

Article 2013 : Third Party Participation

Article 2014 : Role of Experts

Article 2015 : Scientific Review Boards

Article 2016 : Initial Report

Article 2017 : Final Report

Article 2018 : Implementation of Final Report

Article 2019 : Non-Implementation - Suspension of Benefits

Section C - Domestic Proceedings and Privat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Article 2020 : Referrals of Matters from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2021 : Private Rights

Article 2022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nexes

PART EIGHT : OTHER PROVISIONS

Chapter Twenty-One Exceptions

- Article 2101 : General Exceptions
- Article 2102 : National Security
- Article 2103 : Taxation
- Article 2104 : Balance of Payments
- Article 2105 : Disclosure of Information
- Article 2106 : Cultural Industries
- Article 2107 : Definitions
- Annexes

Chapter Twenty-Two Final Provisions

- Article 2201 : Annexes
- Article 2202 : Amendments
- Article 2203 : Entry into Force
- Article 2204 : Accession
- Article 2205 : Withdrawal
- Article 2206 : Authentic Texts

Notes

- Annex 401 : Specific Rules of Origin
- Annexes I Through VII : Reservations and Exceptions to Investmen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Chapters
- Annex I : Reservations for Existing Measures and Liberalization
Commitments (Chapters 11, 12 and 14)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nnex II : Reservations for Future Measures(Chapters 11, 12 and 14)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nnex III : Activities Reserved to the State (Chapter 11)

- Schedule of Mexico
- Annex IV : Exceptions from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hapter 11)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nnex V : Quantitative Restrictions (Chapter 12)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nnex VI : Miscellaneous Commitments (Chapter 12)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Annex VII : Reservations, Specific Commitments and Other Items (Chapter 14)
 - Schedule of Canada
 - Schedule of Mexico
 -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I. 한-칠레 FTA

PREAMBLE

PART I GENERAL ASPECTS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 Article 1.1 :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Area
- Article 1.2 : Objectives
- Article 1.3 : Relation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Article 1.4 : Succession of Treat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 Article 1.5 : Extent of Obligations

CHAPTER 2 GENERAL DEFINITIONS

- Article 2.1 :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 Annex 2.1 : Country-Specific Definitions

PART II TRADE IN GOODS

CHAPTER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Section A - Definitions and Scope and Coverage

- Article 3.1 : Definitions
- Article 3.2 : Scope and Coverage

Section B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3.3 : National Treatment

Section C - Tariffs

- Article 3.4 : Tariff Elimination
- Article 3.5 :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 Article 3.6 : Duty-Free Entry of Certain Commercial Samples of

Negligible Value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Article 3.7 :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Article 3.8 : Customs Valuation

Section D – Non-Tariff Measures

Article 3.9 :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Article 3.10 : Customs User Fees

Article 3.11 : Export Taxes

Article 3.12 : Emergency Clause for Agricultural Goods

Article 3.13 : Committee on Trade in Goods

Annex 3.4

Section 1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Chile

Section 2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Korea

Appendix 1 Tariff Elimination Schedule of Chile

Section A Introductory Note

Section B Schedule of Chile

Appendix 2 Tariff Elimination Schedule of Korea

Section A Introductory Note

Section B Tariff Quotas for Products under Category “TQ”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der Section 1 of this Annex

Section C Schedule of Korea

Annex 3.5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CHAPTER 4 RULES OF ORIGIN

Article 4.1 : Definitions

Article 4.2 : Originating Goods

Article 4.3 : Regional Value Content

Article 4.4 : Intermediate Materials

Article 4.5 : Accumulation

Article 4.6 : De Minimis

Article 4.7 :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Article 4.8 :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Article 4.9 : Indirect Materials

- Article 4.10 :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 Article 4.11 :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 Article 4.12 : Transshipment
- Article 4.13 : Non-Qualifying Operations
- Article 4.14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Article 4.15 : Consultations and Modifications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 Article 5.1 : Definitions
- Article 5.2 :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Origin
- Article 5.3 : Obligations Regarding Importations
- Article 5.4 : Obligations Regarding Exportations
- Article 5.5 : Exceptions
- Article 5.6 : Invoicing by a Non-Party Operator
- Article 5.7 : Confidentiality
- Article 5.8 : Origin Verifications
- Article 5.9 : Advanced Rulings on Determinations of Origin
- Article 5.10 : Review and Appeal
- Article 5.11 : Penalties
- Article 5.12 : Uniform Regulations
- Article 5.13 : Cooperation
- Article 5.14 : Review

CHAPTER 6 SAFEGUARD MEASURES

- Article 6.1 : Safeguard Measures

CHAPTER 7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

- Article 7.1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atters

CHAPTER 8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8.1 : Definitions
- Article 8.2 : General Provisions
- Article 8.3 : Rights of the Parties
- Article 8.4 : Obligations of the Parties

- Article 8.5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rmonization
- Article 8.6 : Equivalence
- Article 8.7 : Risk Assessment and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Sanitary and Phytosanitary Level of Protection
- Article 8.8 : 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 Article 8.9 :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 Article 8.10 : Transparency
- Article 8.11 :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8.12 : Technical Consultations

CHAPTER 9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9.1 : Definitions
- Article 9.2 : General Provision
- Article 9.3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9.4 :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 Article 9.5 : Compatibility
- Article 9.6 :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Article 9.7 : Authorization Procedures
- Article 9.8 : Transparency
- Article 9.9 : Limitations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9.10 :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9.11 : Technical Cooperation
- Annex 9.10 : Members of the Standards-Related Measures Committee

PART III INVESTMENT, SERVICES AND RELATED MATTERS

CHAPTER 10 INVESTMENT

- Section A - Definitions
 - Article 10.1 : Definitions
- Section B - Investment

- Article 10.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0.3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0.4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0.5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10.6 : Losses and Compensation
 - Article 10.7 : Performance Requirements
 - Article 10.8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Article 10.9 : Reservations and Exceptions
 - Article 10.10 : Future Liberalization
 - Article 10.11 : Transfers
 - Article 10.12 : Exceptions and Safeguard Measures
 - Article 10.13 :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Article 10.14 : Subrogation
 - Article 10.15 :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 Article 10.16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10.17 : Denial of Benefits
 - Article 10.18 : Environmental Measures
- Section C -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 Article 10.19 : Purpose
 - Article 10.20 :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 Article 10.21 :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 Article 10.22 : Settlement of a Claim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 Article 10.23 :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0.24 :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0.25 : Conditions Precedent to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10.26 : Consent to Arbitration
 - Article 10.27 : Number of Arbitrators and Method of Appointment
 - Article 10.28 : Constitution of a Tribunal When a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or the Disputing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a Presiding Arbitrator
 - Article 10.29 : Agreement to Appointment of Arbitrators

- Article 10.30 : Consolidation
- Article 10.31 : Notice
- Article 10.32 : Participation by a Party
- Article 10.33 : Documents
- Article 10.34 : Place of Arbitration
- Article 10.35 : Governing Law
- Article 10.36 : Interpretation of Annexes
- Article 10.37 : Expert Reports
- Article 10.38 :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 Article 10.39 : Final Award
- Article 10.40 : Finalit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 Article 10.41 : General Provision
- Article 10.42 : Exclusions

Section D –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ommittee

- Article 10.43 :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ommittee
 - Annex 10.9.6
 - Annex 10.11
 - Annex 10.20
 - Annex 10.41.2 Service of Documents
 - Annex 10.41.4 Publication of an Award
 - Annex 10.43 Composition of the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ommittee

CHAPTER 11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rticle 11.1 : Definitions
- Article 11.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1.3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1.4 : Local Presence
- Article 11.5 : Reservations
- Article 11.6 : Quantitative Restrictions
- Article 11.7 : Future Liberalization
- Article 11.8 : Procedures
- Article 11.9 : Licensing and Certification

Article 11.10 : Denial of Benefits
Annex 11.9 Professional Services

CHAPTER 12 TELECOMMUNICATIONS

Article 12.1 : Definitions
Article 12.2 : Scope and Coverage
Article 12.3 :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Article 12.4 : Conditions for the Provision of Enhanced or
Value-Added Services
Article 12.5 : Standards-Related Measures
Article 12.6 : Monopolies
Article 12.7 : Transparency
Article 12.8 : Relation to Other Chapters
Article 12.9 : Relat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s
Article 12.10 : Technical Cooperation and Other Consultations
Annex 12.1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nex 12.5.8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CHAPTER 13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Article 13.1 : Definitions
Article 13.2 : General Principles
Article 13.3 : General Obligations
Article 13.4 : Grant of Temporary Entry
Article 13.5 : Provision of Information
Article 13.6 : Working Group
Article 13.7 : Dispute Settlement
Article 13.8 : Relation to Other Chapters
Annex 13.4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Section I - Business Visitors
Section II - Traders and Investors
Section III - Intra-Company Transferees
Annex 13.4.1
Appendix 13.4.I.1 Business Activity
Appendix 13.4.I.3 Existing Immigration Measures

CHAPTER 14 COMPETITION

- Article 14.1 : Definitions
- Article 14.2 : Objectives
- Article 14.3 : Notifications
- Article 14.4 : Coordination of Enforcement Activities
- Article 14.5 : Consultations when the Important Interests of a Party are Adversely Affect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 Article 14.6 :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 Article 14.7 : Technical Assistance
- Article 14.8 : Public Enterprises and Enterprises Entrusted with Special or Exclusive Rights, including Designated Monopolies
- Article 14.9 : Dispute Settlement

PART IV GOVERNMENT PROCURMENT

CHAPTER 15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15.1 : Definitions
- Article 15.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5.3 :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 Article 15.4 : Prohibition of Offsets
- Article 15.5 : Transparency
- Article 15.6 : Tendering Procedures
- Article 15.7 : Conditions for Suppliers' Participation in Procurement
- Article 15.8 : Publication of Advance Notices
- Article 15.9 : Tender Documentation
- Article 15.10 : Time-Limits
- Article 15.11 : Technical Specifications
- Article 15.12 : Awarding of Contracts
- Article 15.13 : Bid Challenges
- Article 15.14 :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operation
- Article 15.15 : Modifications to Coverage
- Article 15.16 : Further Negotiations
- Article 15.17 : 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 Annex 15.1 Coverage on Government Procurement
 - Appendix 1 Entities at Central Level
 - Appendix 2 Entities at Subcentral Level
 - Appendix 3 All Other Entities
 - Appendix 4 Supplies
 - Appendix 5 Services
 - Appendix 6 Construction Services
 - Appendix 7 General Notes
- Annex 15.2 Government Procurement Implementation
 - Appendix 1 (Referred to in Article 8.3) Means of Publication
 - Appendix 2 Value of Thresholds

PART 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cle 16.1 : Obligations
- Article 16.2 : More Extensive Protection
- Article 16.3 : Protection of Trademarks
- Article 16.4 :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 Article 16.5 : Enforcement
- Article 16.6 : Consultative Mechanism
 - Annex 16.4.3
 - Annex 16.4.4
 - Annex 16.4.5 Geographical Indications of Wines Originating in Chile

PART VI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17 TRANSPARENCY

- Article 17.1 : Definitions
- Article 17.2 : Contact Points
- Article 17.3 : Publication
- Article 17.4 :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rticle 17.5 : Exchange of Information on State Aid

Article 17.6 :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17.6 : Review and Appeal

CHAPTER 18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Article 18.1 : The Free Trade Commission

Annex 18.1.1 Officials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Annex 18.1.2(c)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nnex 18.1.3(c) Implementation of Decision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nex 18.2 The Secretariat

CHAPTER 19 DISPUTE SETTLEMENT

Section A - Dispute Settlement

Article 19.1 : Cooperation

Article 19.2 :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19.3 : Choice of Forum

Article 19.4 : Consultations

Article 19.5 :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Article 19.6 :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Article 19.7 : Roster

Article 19.8 : Qualifications of Panelists

Article 19.9 : Panel Selection

Article 19.10 : Model Rules of Procedure

Article 19.11 :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Article 19.12 : Initial Report

Article 19.13 : Final Report

Article 19.14 : Implementation of Final Report

Article 19.15 : Non-Implementation - Suspension of Benefits

Section B - Domestic Proceedings and Privat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Article 19.16 :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befo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19.17 : Private Rights

Article 19.18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nnex 19.2 Nullification or Impairment
- Annex 19.10 Model Rules of Procedure
- Annex 19.7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nels
- Definitions
 - Section I Responsibilities to the Process
 - Section II Disclosure Obligations
 - Section III Performance of Duties by Candidates and Members
 - Section IV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Members
 - Section V Duties in Certain Situations
 - Section VI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 Section VII Responsibilities of Assistants and Staff

PART VII OTHER PROVISIONS

CHAPTER 20 EXCEPTIONS

- Article 20.1 : General Exceptions
- Article 20.2 : National Security
- Article 20.3 : Taxation
- Article 20.4 : Balance of Payments

CHAPTER 21 FINAL PROVISIONS

- Article 21.1 : Annexes, Appendices and Notes
- Article 21.2 : Amendments
- Article 21.3 : Entry into Force
- Article 21.4 : Termination of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Article 21.5 : Work Program on Financial Services
- Article 21.6 : Duration and Termination
- Article 21.7 : Authentic Texts

III-1. EC-멕시코 상품무역분야 FTA¹⁾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 Objectives

TITLE II Free Movement of Goods

Article 2 : Objective

CHAPTER I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Section 1 - Common provisions

Article 3

Section 2 - Industrial Products

Article 4

Article 5 :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Mexico

Article 6 :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SECTION 3 - Agricultural Products and Fisheries

Article 7 : Definition

Article 8 :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Mexico

Article 9 : Customs duties on impor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Article 10 : Review Claus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CHAPTER II Non-Tariff Measures

Article 11 : Scope

Article 12 :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13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Article 14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15 : Safeguard clause

Article 16 : Shortage clause

1)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Mexico Decision No. 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

- Article 17 : Customs cooperation
- Article 18 : Customs valuation
- Article 19 :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Article 20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21 : Balance-of-payments difficulties
- Article 22 : General exceptions
- Article 23 :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
- Article 24 : Special Committee on Steel Products

TITLE III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25 : Coverage
- Article 26 :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 Article 27 : Rules of origin
- Article 28 : Prohibition of offsets
- Article 29 : Procurement procedures and other provisions
- Article 30 : Bid challenge
- Article 31 :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32 : Technical cooperation
- Article 33 : Information technology
- Article 34 : Exceptions
- Article 35 : Rectifications or modifications
- Article 36 : Privatisation of entities
- Article 37 : Further negotiations
- Article 38 : Final provisions

TITLE IV Competition

- Article 39 : Mechanism of cooperation

TITLE V Consultation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 Article 40 : Speci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

TITLE VI Dispute Settlement

CHAPTER I Scope and Coverage

Article 41 : Scope and coverage

CHAPTER II Consultation

Article 42 : Consultation

CHAPTER III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4 :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Article 44 : Appointment of arbitrators

Article 45 : Panel reports

Article 46 : Implementation of panel reports

Article 47 : General provisions

**TITLE VII Specific Duties of the Joint Committee with
Respect to Trade and Other Related
Matters**

Article 48

TITLE VIII Final Provisions

Article 49 : Entry into force

Article 50 : Annexes

III-2. EC-멕시코 서비스무역분야 FTA²⁾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the Decision

TITLE II TRADE IN SERVICES

Article 2 Coverag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3 Definitions

Article 4 Market Access

Article 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6 National Treatment

Article 7 Trade liberalisation

Article 8 Regulatory carve-out

Article 9 Mutual recognition

CHAPTER II MARITIME TRANSPORT

Article 10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CHAPTER III FINANCIAL SERVICES

Article 11 Definition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 suppliers

Article 13 Cross-border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rticle 14 National treatment

Article 1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rticle 16 Key personnel

Article 17 Commitments

Article 18 Regulatory carve out

Article 19 Prudential carve out

2) Decision No 2/2001 of the EU-Mexico Joint Council of 27 February 2001 implementing Articles 6, 9, 12(2)(b) and 50 of the 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 Article 20 Effective and transparent regulation
- Article 21 New financial services
- Article 22 Data processing
- Article 23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 Article 24 Consultations
- Article 25 Dispute settlement
- Article 26 Specific exceptions

CHAPTER IV GENERAL EXCEPTIONS

- Article 27 Exceptions

TITLE III INVESTMENT AND RELATED PAYMENTS

- Article 28 Definitions
- Article 29 Payments related to investment
- Article 30 Exchange rate policy and monetary policy difficulties
- Article 31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 Article 32 Transfers
- Article 33 Investment promotion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34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investment
- Article 35 Review clause

TITLE IV INTELLECTUAL PROPERTY

- Article 36 Multilateral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TITLE V DISPUTE SETTLEMENT

CHAPTER I SCOPE AND COVERAGE

- Article 37 Scope and coverage

CHAPTER II CONSULTATION

- Article 38 Consultation

CHAPTER III ARBITRATION PROCEDURE

- Article 39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panel
- Article 40 Appointment of arbitrators
- Article 41 Panel reports
- Article 42 Implementation of panel reports
- Article 43 General provisions

**TITLE VI SPECIFIC DUTIES OF THE JOINT COMMITTEE
WITH RESPECT TO TRADE AND OTHER
TRADE RELATED MATTERS**

- Article 44

TITLE VII FINAL PROVISIONS

- Article 45 Entry into force
- Article 46 Annexes

IV. EFTA국가-싱가포르 FTA

PREAMBLE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Objectives
- Article 2 Geographical Scope
-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greements
- Article 5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II. TRADE IN GOODS

- Article 6 Scope and Coverage
- Article 7 Rules of Origin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 Article 8 Customs Duties
- Article 9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 Article 10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1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2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13 Technical Regulations
- Article 14 State Trading Enterprises
- Article 15 Subsidies
- Article 16 Anti-Dumping
- Article 17 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
- Article 18 Balance-of-Payments Difficulties
- Article 19 General Exceptions
- Article 20 Security Exceptions

III. SERVICES

- Article 21 Scope and Coverage
- Article 22 Definitions
- Article 23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24 Market Access
- Article 25 National Treatment

- Article 26 Additional Commitments
- Article 27 Trade Liberalisation/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Article 28 Domestic Regulation
- Article 29 Subsidies
- Article 30 Recognition
- Article 31 Monopolies and Exclusive Service Suppliers
- Article 32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Article 33 General Exceptions
- Article 34 Security Exceptions
- Article 35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of-Payments
- Article 36 Annexes

IV. INVESTMENT

- Article 37 Definitions
- Article 38 Scope and Coverage
- Article 39 Promotion and Protection
- Article 40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41 Taxation
- Article 42 Dispossession, Compensation
- Article 43 Domestic Regulation
- Article 44 Transfers
- Article 45 Key Personnel
- Article 46 Reservations
- Article 47 Subrogation
- Article 48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a Party
- Article 49 Exceptions

V. COMPETITION

- Article 50 Competition

VI.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51 Scope and Coverage
- Article 52 Exchange of Information
- Article 53 Further Negotiations

VII.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54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III. INSTITUTIONAL PROVISIONS

Article 55 The Joint Committee

IX. DISPUTE SETTLEMENT

Article 56 Scope and Coverage

Article 57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Article 58 Consultations

Article 59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Panel

Article 60 Arbitration Panel

Article 61 Procedures of the Arbitration Panel

Article 62 Initial Report

Article 63 Final Report

Article 64 Termination of Arbitration Panel Proceedings

Article 65 Implementation of Arbitration Panel Reports

Article 66 Other Provisions

X. FINAL CLAUSES

Article 67 Transparency

Article 68 Annexes and Appendices

Article 69 Amendments

Article 70 Additional Parties

Article 71 Withdrawal and Termination

Article 72 Entry into Force

Article 73 Depositary

V. 칠레-멕시코 FTA

PREAMBLE

PART ONE - GENERAL PART

CHAPTER 1 INITIAL PROVISIONS

- Article 1-01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Area
- Article 1-02 Objectives
- Article 1-03 Relation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Article 1-04 Observance of the Agreement
- Article 1-05 Successor Agreements
- Article 1-06 Relation to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Agreements

CHAPTER 2 GENERAL DEFINITIONS

- Article 2-01 Definitions of General Application
- ANNEX 2-01 Country-Specific Definitions

PART TWO - TRADE IN GOODS

CHAPTER 3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Section A - Definitions, Scope and Coverage

- Article 3-01 Definitions
- Article 3-02 Scope and Coverage

Section B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3-03 National Treatment

Section C - Tariffs

- Article 3-04 Tariff Elimination
- Article 3-05 Customs Valuation Code

- Article 3-06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 Article 3-07 Duty-Free Entry of Certain Commercial Samples and Printed Advertising Materials
- Article 3-08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Section D - Non-Tariff Measures

- Article 3-09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 Article 3-10 Customs User Fees
- Article 3-11 Export Taxes
- Article 3-12 International Obligations
- Article 3-13 Export Subsidies on Agricultural Goods
- Article 3-14 Domestic Support

Section E - Automotive Sector

- Article 3-15 Automotive Sector

Section F - Consultations

- Article 3-16 Committee on Trade in Goods
- Article 3-17 Information and Consultations
 - Annex 3-01 Used Vehicles
 - ANNEX 3-03 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 ANNEX 3-04(3) Tariff Reduction Programme
 - ANNEX 3-04(4) Exceptions
 - Section A - Chilean Products
 - Section B - Mexican Products
 - ANNEX 3-06**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 ANNEX 3-09** Import and Export Measures
 - Section A - Chilean Measures
 - Section B - Mexican Measures
 - ANNEX 3-10 Customs User Fees
 - ANNEX 3-11 Export Taxes
 - ANNEX 3-15 Automotive Sector

CHAPTER 4 RULES OF ORIGIN

- Article 4-01 Definitions
- Article 4-0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Article 4-03 Originating Goods
- Article 4-04 Regional Value Content
- Article 4-05 Value of Materials
- Article 4-06 De Minimis
- Article 4-07 Intermediate Materials
- Article 4-08 Accumulation
- Article 4-09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Article 4-10 Sets and Assortments
- Article 4-11 Indirect Materials
- Article 4-12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 Article 4-13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 Article 4-14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 Article 4-15 Automotive Goods
- Article 4-16 Non-Qualifying Operations and Practices
- Article 4-17 Transshipment and Direct Shipment
- Article 4-18 Sub-Committee on Rules of Origin

CHAPTER 5 CUSTOMS PROCEDURES

- Article 5-01 Definitions
- Article 5-02 Declaration and Certification of Origin
- Article 5-03 Obligations Regarding Importations
- Article 5-04 Obligations Regarding Exportations
- Article 5-05 Exceptions
- Article 5-06 Accounting Records
- Article 5-07 Origin Verifications
- Article 5-08 Confidentiality
- Article 5-09 Advance Rulings
- Article 5-10 Penalties
- Article 5-11 Review and Appeal
- Article 5-12 Uniform Regulations
- Article 5-13 Cooperation
- Article 5-14 Customs Sub-Committee

CHAPTER 6 EMERGENCY ACTION

- Article 6-01 Definitions
- Article 6-02 Bilateral Emergency Actions

- Article 6-03 Global Emergency Actions
- Article 6-04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 Article 6-05 Dispute Settlement in Emergency Action Matters
 - ANNEX 6-01 Investigating Authority
 - ANNEX 6-04 Administration of Emergency Action Proceedings

PART THREE - TECHNICAL STANDARDS

CHAPTER 7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7-01 Definitions
- Article 7-02 General Provisions
- Article 7-03 Rights of the Parties
- Article 7-04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rmonization
- Article 7-06 Equivalence
- Article 7-07
- Article 7-08 Recognition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 Article 7-09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 Article 7-10 Transparency
- Article 7-11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Article 7-12 Technical Consultations
- Article 7-13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NNEX 7-02 Revocation of the Document on Protocol Support

CHAPTER 8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8-01 Definitions
- Article 8-02 General Provision
- Article 8-03 Scope and Coverage
- Article 8-04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 Article 8-05 Compatibility
- Article 8-06 Assessment of Risk
- Article 8-07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Article 8-08 Approval Procedures
- Article 8-09 Notification, Publication and Transparency

- Article 8-10 Limitations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8-11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8-12 Technical Cooperation
 - ANNEX 8-01 Services Sectors or Subsectors
 - ANNEX 8-09 Authorities Responsible for Notification
 - ANNEX 8-11 Members of the Committee on Standards-Related Measures

PART FOUR - INVESTMENT, SERVICES AND RELATED MATTERS

CHAPTER 9 INVESTMENT

Section A - Definitions

- Article 9-01 Definitions

Section B - Investment

- Article 9-02 Scope and Coverage
- Article 9-03 National Treatment
- Article 9-04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Article 9-05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9-06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9-07 Performance Requirements
- Article 9-08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Article 9-09 Reservations and Exceptions
- Article 9-10 Transfers
- Article 9-11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Article 9-12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 Article 9-13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9-14 Denial of Benefits
- Article 9-15 Environmental Measures

Section C -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 Article 9-16 Purpose
- Article 9-17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 Article 9-18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 Article 9-19 Settlement of a Claim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 Article 9-20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9-21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9-22 Conditions Precedent to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 Article 9-23 Consent to Arbitration
- Article 9-24 Number of Arbitrators and Method of Appointment
- Article 9-25 Constitution of a Tribunal When a Party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or the Disputing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a Presiding Arbitrator
- Article 9-26 Agreement to Appointment of Arbitrators
- Article 9-27 Consolidation
- Article 9-28 Notice
- Article 9-29 Participation by a Party
- Article 9-30 Documents
- Article 9-31 Place of Arbitration
- Article 9-32 Governing Law
- Article 9-33 Interpretation of Annexes
- Article 9-34 Expert Reports
- Article 9-35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 Article 9-36 Final Award
- Article 9-37 Finality and Enforcement of an Award
- Article 9-38 General
- Article 9-39 Exclusions

Section D - Committee on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rticle 9-40 Committee on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NNEX 9-10 Transfers 1
 - ANNEX 9-38(2) Place for Delivery
 - ANNEX 9-38(4) Publication of an Award

- ANNEX 9-39 Exclusions from Dispute Settlement. Mexico
- ANNEX 9-40 Members of the Committee on Investment and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rticle 10-01 Definitions
- Article 10-02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0-03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0-0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0-05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10-06 Local Presence
- Article 10-07 Reservations
- Article 10-08 Quantitative Restrictions
- Article 10-09 Future Liberalization
- Article 10-10 Liberalization of Non-Discriminatory Measures
- Article 10-11 Procedures
- Article 10-12 Licensing and Certification
- Article 10-13 Denial of Benefits
- Article 10-14 Committee on Investment and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ANNEX 10-12 Professional Services

CHAPTER 11 AIR TRANSPORTATION SERVICES

- Article 11-01 Definitions
- Article 11-02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1-03 Consolidation
- Article 11-04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1-05 Committee on Air Transportation
- Article 11-06 Convention
- Article 11-07 Entry into Force
- ANNEX 11-05 Members of the Committee on Air Transportation

CHAPTER 12 TELECOMMUNICATIONS

- Article 12-01 Definitions
- Article 12-02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2-03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 Article 12-04 Conditions for the Provision of Enhanced or ValueAdded Services
- Article 12-05 Standards-Related Measures
- Article 12-06 Monopolies
- Article 12-07 Transparency
- Article 12-08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12-09 Relat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s
- Article 12-10 Technical Cooperation and Other Consultations
- ANNEX 12-01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ANNEX 12-03 Interconnection of Private Circuits

CHAPTER 13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Article 13-01 Definitions
- Article 13-02 General Principles
- Article 13-03 General Obligations
- Article 13-04 Grant of Temporary Entry
- Article 13-05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13-06 Temporary Entry Working Group
- Article 13-07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3-08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NNEX 13-04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Section A - Business Visitors
 - Section B - Traders and Investors
 - Section C - Intra-Company Transferees
 - Section D - Professionals
- ANNEX 13-04(1) Country-Specific Rules for the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CHAPTER 14 COMPETITION POLICY,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 Article 14-01 Definitions
- Article 14-02 Competition Law
- Article 14-03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 Article 14-04 State Enterprises
- Article 14-05 Committee on Trade and Competition
- ANNEX 14-01 Specific Definitions of State Enterprises

PART FIVE –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15

Section A – Definitions and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5-01 Definitions
- Article 15-02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cle 15-03 Relation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 Article 15-04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5-05 Most Favou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5-06 Control of Abusive or Anticompetitive Practices or Conditions
- Article 15-07 Cooperation to Eliminate Trade in Infringing Goods
- Article 15-08 Scope of the Cooperation

Section B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Article 15-09 Copyright
- Article 15-10 Performers
- Article 15-11 Producers of Sound Recordings
- Article 15-12 Protection of Programme-Carrying Satellite Signals
- Article 15-13 Provision for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Article 15-14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ection C – Trademarks

- Article 15-15 Protection
- Article 15-16 Rights Conferred
- Article 15-17 Well-Known Trademarks
- Article 15-18 Exceptions
- Article 15-19 Term of Protection
- Article 15-20 Requirement of Use
- Article 15-21 Renewal of a Trademark
- Article 15-22 Other Requirements

Article 15-23 Licensing and Assignment

Section D - Designations of Origin

Article 15-24 Designations of Origin

Section E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5-25 Definitions

Article 15-26 General Obligations

Article 15-27 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Article 15-28 Evidence

Article 15-29 Injunctions

Article 15-30 Damages

Article 15-31 Other Remedies

Article 15-32 Right of Information

Article 15-33 Indemnification of the Defendant

Article 15-34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15-35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15-36 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

Article 15-37 Application

Article 15-38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Article 15-39 Notice of Suspension

Article 15-40 Duration of Suspension

Article 15-41 Indemnification of the Importer and of the Owner
of the Goods

Article 15-42 Right of Inspection and Information

Article 15-43 Ex Officio Action

Article 15-44 Remedies

Article 15-45 De Minimis Imports

Article 15-46 Criminal Procedures

Section F - Final Provisions

Article 15-47 Application of this Chapter

ANNEX 15-21 Renewal of a Trademark

ANNEX 15-24 Designations of Origin

APPENDIX 15-24

PART SIX –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16 TRANSPARENCY

- Article 16-01 Definitions
- Article 16-02 Contact Points
- Article 16-03 Publication
- Article 16-04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16-05 Administrative Proceedings
- Article 16-06 Review and Appeal

CHAPTER 17 ADMINISTRATION OF THE AGREEMENT

- Article 17-01 Free Trade Commission
- Article 17-02 The Secretariat
 - ANNEX 17-01(1) Members of the Free Trade Commission
 - ANNEX 17-01(2)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 ANNEX 17-01(3) Implementation of Modifications Approved by the Commission
- ANNEX 17-02 Remuneration and Payment of Expenses

CHAPTER 18 DISPUTE SETTLEMENT

Section A –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8-01 Cooperation
- Article 18-02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8-03 WTO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8-04 Consultations
- Article 18-05 Commission –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 Article 18-06 Request for an Arbitral Panel
- Article 18-07 Roster
- Article 18-08 Qualifications of Panellists
- Article 18-09 Panel Selection
- Article 18-10 Model Rules of Procedure
- Article 18-11 Role of Experts
- Article 18-12 Scientific Review Boards
- Article 18-13 Initial Report

- Article 18-14 Final Report
- Article 18-15 Implementation of Final Reports
- Article 18-16 Non-Implementation - Suspension of Benefits

Section B - Domestic Proceedings and Privat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8-17 Referrals of Matters from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 Article 18-18 Private Rights
- Article 18-19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NEX 18-02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CHAPTER 19 EXCEPTIONS

- Article 19-01 Definitions
- Article 19-02 General Exceptions
- Article 19-03 National Security
- Article 19-05 Taxation
- Article 19-06 Balance of Payments
- ANNEX 19-05 Competent Authorities
- Article 20-01 ANNEXES
- Article 20-02 Amendments
- Article 20-03 Convergence
- Article 20-04 Duration and Entry into Force
- Article 20-05 Reservations
- Article 20-06 Accession
- Article 20-07 Termination
- Article 20-08 Future Negotiations
- Article 20-09 Cooperation on Rules of Origin
- Article 20-10 Revocations and Transitory Provisions

VI. 일본-싱가포르 FTA

PREAMBL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Objectives
- Article 2 Transparency
- Article 3 Confidential Information
- Article 4 Security and General Exceptions
- Article 5 Taxation
- Article 6 Relation to Other Agreements
- Article 7 Implementing Agreement
- Article 8 Supervisory Committee
- Article 9 Communications
- Article 10 General Review

CHAPTER 2 Trade in Goods

- Article 11 Definitions under Chapter 2
- Article 12 Classification of Goods
- Article 13 National Treatment under Chapter 2
- Article 14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 Article 15 Customs Valuation
- Article 16 Export Duties
- Article 17 Non-tariff Measures
- Article 18 Emergency Measures
- Article 19 General Exceptions under Chapter 2
- Article 20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under Chapter 2
- Article 21 Miscellaneous Provisions under Chapter 2

CHAPTER 3 Rules of Origin

- Article 22 Definitions under Chapter 3

- Article 23 Originating Goods
- Article 24 Accumulation
- Article 25 De Minimis
- Article 26 Insufficient Operations
- Article 27 Consignment Criteria
- Article 28 Unassembled or Disassembled Goods
- Article 29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Article 30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Article 31 Certificate of Origin
- Article 32 Advance Rulings
- Article 33 Assistance for Checking of Certificate of Origin
- Article 34 Joint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CHAPTER 4 Customs Procedures

- Article 35 Scope of Chapter 4
- Article 36 Customs Clearance
- Article 37 Temporary Admission and Goods in Transit
- Article 38 Exchange of Information under Chapter 4
- Article 39 Joint 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CHAPTER 5 Paperless Trading

- Article 40 Co-operation on Paperless Trading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41 Exchange of Views and Information
- Article 42 Co-operation on Paperless Trading between Private Entities
- Article 43 Review of Realisation of Paperless Trading
- Article 44 Joint Committee on Paperless Trading

CHAPTER 6 Mutual Recognition

- Article 45 Definitions under Chapter 6
- Article 46 General Obligations
- Article 47 Scope of Chapter 6
- Article 48 Designating Authorities
- Article 49 Verification and Monitoring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 Article 50 Suspension of Designation
- Article 51 Contestation
- Article 52 Joint Committee on Mutual Recognition
- Article 53 Registr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 Article 54 General Exceptions under Chapter 6
- Article 55 Miscellaneous Provisions under Chapter 6
- Article 56 Territorial Application
- Article 57 Sectoral Annexes

CHAPTER 7 Trade in Services

- Article 58 Scope of and Definitions under Chapter 7
- Article 59 Market Access
- Article 60 National Treatment under Chapter 7
- Article 61 Additional Commitments
- Article 62 Service Suppliers of Any Non-Party
- Article 63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Chapter 7
- Article 64 Domestic Regulation
- Article 65 Monopolies and Exclusive Service Suppliers
- Article 66 Business Practices
- Article 67 Payments and Transfers
- Article 68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under Chapter 7
- Article 69 General Exceptions under Chapter 7
- Article 70 Denial of Benefits

CHAPTER 8 Investment

- Article 71 Scope of Chapter 8
- Article 72 Definitions under Chapter 8
- Article 73 National Treatment under Chapter 8
- Article 74 Access to the Courts of Justice
- Article 75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 Article 76 Specific Exceptions
- Article 77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 Article 78 Repurchase of Leases
- Article 79 Protection from Strife
- Article 80 Transfers

- Article 81 Subrogation
- Article 82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 Article 83 General Exceptions under Chapter 8
- Article 84 Temporary Safeguard
- Article 85 Prudential Measures
- Article 8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cle 87 Taxation Measures as Expropriation
- Article 88 Joint Committee on Investment
- Article 89 Application of Chapter 8

CHAPTER 9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Article 90 Scope of Chapter 9
- Article 91 Definitions under Chapter
- Article 92 Specific Commitments under Chapter 9
- Article 93 Mutual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 Article 94 Joint Committee on Mutual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 Article 95 General Provisions for Chapter 9

CHAPTER 10 Intellectual Property

- Article 96 Areas and Forms of Co-operation under Chapter 10
- Article 97 Joi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 Article 98 Facilitation of Patenting Process
- Article 99 Facilitation of the Use of IP Databases
- Article 100 Costs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Chapter 10

CHAPTER 11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101 Scope of Chapter 11
- Article 102 Exchange of Information on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12 Competition

- Article 103 Anti-competitive Activities
- Article 104 Co-operation on Controlling Anti-competitive Activities
- Article 105 Dispute Settlement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 Co-operation

- Article 106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7 Regulatory Co-operation
- Article 108 Capital Market Development
- Article 109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Article 110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Markets including Capital Markets
- Article 111 Joint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Co-operation

CHAPTER 1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Article 112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T
- Article 113 Areas and Forms of Co-operation under Chapter 14
- Article 114 Joint Committee on ICT

CHAPTER 15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115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116 Areas and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Chapter 15
- Article 117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118 Protection and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Rights of a Proprietary Nature
- Article 119 Costs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Chapter 15
- Article 120 Implementing Arrangements

CHAPTER 16 Human Resource Development

- Article 121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Article 122 Exchanges of Persons
- Article 123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 Article 124 Exchanges of Government Officials
- Article 125 Ageing Population

CHAPTER 17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 Article 126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 Article 127 Review and Recommendation under Chapter 17
- Article 128 Joint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CHAPTER 18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Article 129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Article 130 Review and Recommendation under Chapter 18
- Article 131 Facilitation of SMEs Investment
- Article 132 Joint Committee on SMEs

CHAPTER 19 Broadcasting

- Article 133 Co-oper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 Article 134 Exchange of Views between Regulatory Authorities
- Article 135 Joint Committee on Broadcasting

CHAPTER 20 Tourism

- Article 136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 Article 137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 Article 138 Joint Committee on Tourism

CHAPTER 21 Dispute Avoidance and Settlement

- Article 139 Scope of Chapter 21
- Article 140 General Consultations for the Avoidance and Settlement of Disputes
- Article 141 Good Offices, Conciliation or Mediation
- Article 142 Special Consultations for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43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 Article 144 Functions of Arbitral Tribunals
- Article 145 Proceedings of Arbitral Tribunals
- Article 146 Termination of Proceedings
- Article 147 Implementation of Chapter 21
- Article 148 Expenses

CHAPTER 22 Final Provisions

- Article 149 Headings

Article 150	Status of Annexes
Article 151	Amendment
Article 152	Entry into Force
Article 153	Termination

VII. 미국-싱가포르 FTA

PREAMBLE

CHAPTER 1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AND DEFINITIONS

- ARTICLE 1.1 : GENERAL
- ARTICLE 1.2 : GENERAL DEFINITIONS
- ANNEX 1A CERTAIN DEFINITIONS

CHAPTER 2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 ARTICLE 2.1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2.2 : ELIMINATION OF DUTIES
- ARTICLE 2.3 : CUSTOMS VALUE
- ARTICLE 2.4 : EXPORT TAX
- ARTICLE 2.5 : TEMPORARY ADMISSION
- ARTICLE 2.6 :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 ARTICLE 2.7 :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 ARTICLE 2.8 : MERCHANDISE PROCESSING FEE
- ARTICLE 2.9 : DISTILLED SPIRITS
- ARTICLE 2.10 : BROADCASTING APPARATUS
- ARTICLE 2.11 : CHEWING GUM
- ARTICLE 2.12 : TARIFF TREATMENT OF NON-ORIGINATING
COTTON AND MAN-MADE FIBER APPAREL
GOODS (TARIFF PREFERENCE LEVELS)
- ARTICLE 2.13 : DEFINITIONS
- ANNEX 2A APPLICATION OF CHAPTER 2
- ANNEX 2B The U.S. Schedule to Annex 2B attached as a
separate volume.
- ANNEX 2C The Singapore Schedule to Annex 2C attached as
a separate volume.

CHAPTER 3 RULES OF ORIGIN

SECTION A : ORIGIN DETERMINATION

- ARTICLE 3.1 : ORIGINATING GOODS
- ARTICLE 3.2 : TREATMENT OF CERTAIN PRODUCTS
- ARTICLE 3.3 : DE MINIMIS
- ARTICLE 3.4 : ACCUMULATION
- ARTICLE 3.5 : REGIONAL VALUE CONTENT
- ARTICLE 3.6 : VALUE OF MATERIALS
- ARTICLE 3.7 :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 ARTICLE 3.8 :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ARTICLE 3.9 :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 ARTICLE 3.10 :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 ARTICLE 3.11 : INDIRECT MATERIALS
- ARTICLE 3.12 : THIRD COUNTRY TRANSPORTATION

SECTION B : SUPPORTING INFORMATION AND VERIFICATION

- ARTICLE 3.13 : CLAIMS FOR PREFERENTIAL TREATMENT
- ARTICLE 3.14 : OBLIGATIONS RELATING TO IMPORTATIONS
- ARTICLE 3.15 : RECORD KEEPING REQUIREMENT
- ARTICLE 3.16 : VERIFICATION
- ARTICLE 3.17 : CERTAIN APPAREL GOODS

SECTION C : CONSULTATION AND MODIFICATIONS

- ARTICLE 3.18 : CONSULTATION AND MODIFICATIONS

SECTION D : DEFINITIONS

- ARTICLE 3.19 : DEFINITIONS
- ARTICLE 3.20 :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 ANNEX 3A PRODUCT-SPECIFIC RULES
- ANNEX 3B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 ANNEX 3C REMANUFACTURED GOODS

CHAPTER 4 CUSTOMS ADMINISTRATION

- ARTICLE 4.1 : PUBLICATION AND NOTIFICATION

ARTICLE 4.2 : ADMINISTRATION
ARTICLE 4.3 : ADVANCE RULINGS
ARTICLE 4.4 : REVIEW AND APPEAL
ARTICLE 4.5 : COOPERATION
ARTICLE 4.6 : CONFIDENTIALITY
ARTICLE 4.7 : PENALTIES
ARTICLE 4.8 : RELEASE AND SECURITY
ARTICLE 4.9 : RISK ASSESSMENT
ARTICLE 4.10 : EXPRESS SHIPMENTS
ARTICLE 4.11 : DEFINITIONS

CHAPTER 5 TEXTILES AND APPAREL

ARTICLE 5.1 : SCOPE
ARTICLE 5.2 : ANTI-CIRCUMVENTION
ARTICLE 5.3 : MONITORING
ARTICLE 5.4 : COOPERATION
ARTICLE 5.5 : ENFORCEMENT
ARTICLE 5.6 : INFORMATION SHARING
ARTICLE 5.7 : CONFIDENTIALITY
ARTICLE 5.8 : CONSULTATIONS AND RELATED MATTERS
ARTICLE 5.9 : BILATERAL TEXTILE AND APPAREL SAFEGUARD
ACTIONS
ARTICLE 5.10 : EFFECTIVE DATE
ARTICLE 5.11 : DEFINITIONS

CHAPTER 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6.1 : SCOPE
ARTICLE 6.2 : ENHANCED COOPERATION AND CHAPTER
6 COORDINATOR
ARTICLE 6.3 : CONFORMITY ASSESSMENT AND OTHER
AREAS OF MUTUAL INTEREST
ARTICLE 6.4 : DEFINITIONS

CHAPTER 7 SAFEGUARDS

ARTICLE 7.1 : APPLICATION OF A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RTICLE 7.2 : CONDITIONS AND LIMITATIONS
ARTICLE 7.3 : PROVISIONAL MEASURES
ARTICLE 7.4 : COMPENSATION
ARTICLE 7.5 : GLOBAL SAFEGUARD MEASURES
ARTICLE 7.6 : DEFINITIONS

CHAPTER 8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RTICLE 8.1 : DEFINITIONS
ARTICLE 8.2 : SCOPE AND COVERAGE
ARTICLE 8.3 : NATIONAL TREATMENT
ARTICLE 8.4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RTICLE 8.5 : MARKET ACCESS
ARTICLE 8.6 : LOCAL PRESENCE
ARTICLE 8.7 : NON-CONFORMING MEASURES
ARTICLE 8.8 : DOMESTIC REGULATION
ARTICLE 8.9 : RECOGNITION
ARTICLE 8.10 : TRANSFERS AND PAYMENTS
ARTICLE 8.11 : DENIAL OF BENEFITS
ARTICLE 8.12 : TRANSPARENCY I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GULATIONS
ARTICLE 8.13 : IMPLEMENTATION
ANNEX 8A
ANNEX 8B
ANNEX 8C PROFESSIONAL SERVICES

CHAPTER 9 TELECOMMUNICATIONS

ARTICLE 9.1 : SCOPE AND COVERAGE
ARTICLE 9.2 :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⁹⁻²
ARTICLE 9.3 : INTERCONNECTION WITH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TICLE 9.4 : CONDUCT OF MAJOR SUPPLIERS
ARTICLE 9.5 : SUBMARINE CABLE LANDING STATIONS
ARTICLE 9.6 : INDEPENDENT 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RTICLE 9.7 : UNIVERSAL SERVICE
ARTICLE 9.8 : LICENSING PROCESS

- ARTICLE 9.9 :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9-11
- ARTICLE 9.10 : ENFORCEMENT
- ARTICLE 9.11 : RESOLUTION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DISPUTES
- ARTICLE 9.12 : TRANSPARENCY
- ARTICLE 9.13 :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IES
- ARTICLE 9.14 : FORBEARANCE AND MINIMAL REGULATORY
ENVIRONMENT
- ARTICLE 9.15 : RELATIONSHIP TO OTHER CHAPTERS
- ARTICLE 9.16 : DEFINITIONS

CHAPTER 10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1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0.2 : NATIONAL TREATMENT
- ARTICLE 10.3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ARTICLE 10.4 : MARKET ACCESS FOR FINANCIAL INSTITUTIONS
- ARTICLE 10.5 : 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6 : NEW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7 :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 ARTICLE 10.8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 ARTICLE 10.9 : NON-CONFORMING MEASURES
- ARTICLE 10.10 : EXCEPTIONS
- ARTICLE 10.11 : TRANSPARENCY
- ARTICLE 10.12 :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 ARTICLE 10.13 : PAYMENT AND CLEARING SYSTEMS
- ARTICLE 10.14 : DOMESTIC REGULATION
- ARTICLE 10.15 : EXPEDITED AVAILABILITY OF INSURANCE
SERVICES
- ARTICLE 10.16 :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 ARTICLE 10.17 : CONSULTATIONS
- ARTICLE 10.18 :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0.19 : INVESTMENT DISPUTES IN FINANCIAL
SERVICES

- ARTICLE 10.20 : DEFINITIONS
- ANNEX 10A APPLICATION OF ARTICLE 10.5
- ANNEX 10B INTRODUCTORY NOTE FOR THE SCHEDULE
OF SINGAPORE TO ANNEX 10B
- ANNEX 10C SPECIFIC COMMITMENTS
- ANNEX 10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CHAPTER 11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 ARTICLE 11.1 : DEFINITIONS
- ARTICLE 11.2 : GENERAL PRINCIPLES
- ARTICLE 11.3 : GENERAL OBLIGATIONS
- ARTICLE 11.4 : GRANT OF TEMPORARY ENTRY
- ARTICLE 11.5 : REGULATORY TRANSPARENCY
- ARTICLE 11.6 : PROVISION OF INFORMATION
- ARTICLE 11.7 : TEMPORARY ENTRY COORDINATORS
- ARTICLE 11.8 : DISPUTE SETTLEMENT
- ARTICLE 11.9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NNEX 11A
 - SECTION I : BUSINESS VISITORS
 - SECTION II : TRADERS AND INVESTORS
 - SECTION III : INTRA-COMPANY TRANSFEREES
 - SECTION IV : PROFESSIONALS
- APPENDIX 11A.1 BUSINESS VISITORS Definitions
- APPENDIX 11A.2 PROFESSION MINIMUM EDUCATION
REQUIREMENTS AND ALTERNATIVE
CREDENTIALS
- APPENDIX 11A.3 United States

CHAPTER 12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DESIGNATED MONOPOLIES, AND
GOVERNMENT ENTERPRISES

- ARTICLE 12.1 : OBJECTIVES
- ARTICLE 12.2 :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 ARTICLE 12.3 : DESIGNATED MONOPOLIES AND GOVERNMENT
ENTERPRISES
- ARTICLE 12.4 : COOPERATION

- ARTICLE 12.5 :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REQUESTS
- ARTICLE 12.6 : CONSULTATIONS
- ARTICLE 12.7 : DISPUTES
- ARTICLE 12.8 : DEFINITIONS

CHAPTER 13 GOVERNMENT PROCUREMENT

- ARTICLE 13.1 : GENERAL
- ARTICLE 13.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3.3 : INCORPORATION OF GPA PROVISIONS
- ARTICLE 13.4 : EXCEPTIONS
- ARTICLE 13.5 : MODIFICATIONS AND RECTIFICATIONS
TO COVERAGE
- ARTICLE 13.6 : DEFINITIONS
- ANNEX 13A
- ANNEX 13B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 ARTICLE 14.1 : GENERAL
- ARTICLE 14.2 : ELECTRONIC SUPPLY OF SERVICES
- ARTICLE 14.3 : DIGITAL PRODUCTS
- ARTICLE 14.4 : DEFINITIONS

CHAPTER 15 INVESTMENT

SECTION A - DEFINITIONS

- ARTICLE 15.1 : DEFINITIONS

SECTION B - INVESTMENT

- ARTICLE 15.2 : SCOPE AND COVERAGE
- ARTICLE 15.3 : RELATION TO OTHER CHAPTERS
- ARTICLE 15.4 :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 ARTICLE 15.5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ARTICLE 15.6 : EXPROPRIATION
- ARTICLE 15.7 : TRANSFERS

ARTICLE 15.8 :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5.9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ARTICLE 15.10 : INVESTMENT AND ENVIRONMENT
ARTICLE 15.11 : DENIAL OF BENEFITS
ARTICLE 15.12 : NON-CONFORMING MEASURES
ARTICLE 15.13 :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SECTION C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TICLE 15.14 :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ARTICLE 15.15 :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ARTICLE 15.16 : 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ARTICLE 15.17 :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CONSENT OF EACH PARTY
ARTICLE 15.18 : SELECTION OF ARBITRATORS
ARTICLE 15.19 : CONDUCT OF THE ARBITRATION
ARTICLE 15.20 :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ARTICLE 15.21 : GOVERNING LAW
ARTICLE 15.22 : INTERPRETATION OF ANNEXES
ARTICLE 15.23 : EXPERT REPORTS
ARTICLE 15.24 : CONSOLIDATION
ARTICLE 15.25 : AWARDS
ARTICLE 15.26 : STATUS OF LETTER EXCHANGES
ARTICLE 15.27 : SERVICE OF DOCUMENTS
ANNEX 15A TRANSFERS
ANNEX 15B PERFORMANCE REQUIREMENTS
ANNEX 15C PERFORMANCE REQUIREMENTS
ANNEX 15D SERVICE OF DOCUMENTS ON A PARTY UNDER SECTION C

CHAPTER 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6.1 : GENERAL PROVISIONS
ARTICLE 16.2 : TRADEMARK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ARTICLE 16.3 : DOMAIN NAMES ON THE INTERNET

- ARTICLE 16.4 : OBLIGATIONS COMMON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ARTICLE 16.5 : OBLIGATIONS PERTAINING TO RELATED RIGHTS
- ARTICLE 16.6 : 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
- ARTICLE 16.7 : PATENTS
- ARTICLE 16.8 : CERTAIN REGULATED PRODUCTS
- ARTICLE 16.9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CLE 16.10 : TRANSITIONAL PROVISIONS

CHAPTER 17 LABOR

- ARTICLE 17.1 : 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
- ARTICLE 17.2 :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LAWS
- ARTICLE 17.3 : PROCEDURAL GUARANTEES AND PUBLIC AWARENESS
- ARTICLE 17.4 : INSTITUTIONAL ARRANGEMENTS
- ARTICLE 17.5 : LABOR COOPERATION
- ARTICLE 17.6 : LABOR CONSULTATIONS
- ARTICLE 17.7 : DEFINITIONS
- ANNEX 17A UNITED STATES - SINGAPORE LABOR COOPERATION MECHANISM

CHAPTER 18 ENVIRONMENT

- ARTICLE 18.1 : LEVELS OF PROTECTION
- ARTICLE 18.2 :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 ARTICLE 18.3 : PROCEDURAL MATTERS
- ARTICLE 18.4 : INSTITUTIONAL ARRANGEMENTS
- ARTICLE 18.5 :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 ARTICLE 18.6 : ENVIRONMENTAL COOPERATION
- ARTICLE 18.7 : ENVIRONMENTAL CONSULTATIONS

ARTICLE 18.8 :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AGREEMENTS
ARTICLE 18.9 : PRINCIPLES OF CORPORATE STEWARDSHIP
ARTICLE 18.10 : DEFINITIONS

CHAPTER 19 TRANSPARENCY

ARTICLE 19.1 : DEFINITIONS
ARTICLE 19.2 : CONTACT POINTS
ARTICLE 19.3 : PUBLICATION
ARTICLE 19.4 : NOTIFIC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RTICLE 19.5 :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19.6 : REVIEW AND APPEAL

CHAPTER 20 ADMINISTRATION AND DISPUTE SETTLEMENT

ARTICLE 20.1 : JOINT COMMITTEE
ARTICLE 20.2 : ADMINISTR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RTICLE 20.3 : CONSULTATIONS.
ARTICLE 20.4 : ADDI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RTICLE 20.5 :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EPORT
ARTICLE 20.6 : NON-IMPLEMENTATION
ARTICLE 20.7 : NON-IMPLEMENTATION IN CERTAIN
DISPUTES
ARTICLE 20.8 : COMPLIANCE REVIEW
ARTICLE 20.9 : FIVE-YEAR REVIEW
ANNEX 20A INFLATION ADJUSTMENT FORMULA FOR
MONETARY ASSESSMENTS

CHAPTER 21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1.1 : GENERAL EXCEPTIONS.
ARTICLE 21.2 : ESSENTIAL SECURITY.
ARTICLE 21.3 : TAXATION
ARTICLE 21.4 : DISCLOSURE OF INFORMATION
ARTICLE 21.5 : ANTI-CORRUPTION

284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ARTICLE 21.6 : ACCESSION

ARTICLE 21.7 : ANNEXES

ARTICLE 21.8 : AMENDMENTS

ARTICLE 21.9 :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고 준 성》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법무부 전문위원 역임
- (현)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2003)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대응방향 : 법무·시청각·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공저)
- GATS 해설서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법무부(2000, 공저)
-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산업연구원(1998)
- 다자간투자협정(MAI)안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1997)

정책연구자료 2003-73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

2003年 12月 20日 印刷
2003年 12月 22日 發行

發行處

産 業 研 究 院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洞 206-9
☎ 130-742
電話 : 3299-3114
登錄 1983年 7月 7日 第6-0001號

發行人

한 덕 수

印刷處

태 광 인 쇄

購讀問議 : 편집 · 보급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 譯載 禁함.

普及價 11,000원

ISBN 89-90789-33-8 93320
